

GLS LIBRARY

# 병무행정 용어 해설집





# 발간사 Introduce



병무청에서는 선진 일류 병무행정 구현을 위하여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사고와 변화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시스템을 선진화 하는데 조직 역량을 다져왔습니다.

또한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되도록 정책과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면서 한편으로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병무행정 법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아쉽게도 그간 집대성된 병무행정 용어 관련 해설집 등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병무행정과 관련된 법령 용어 등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립하여 일반 국민이나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400여건의 전문용어에 대한 해설과 사례를 함께 수록한 『병무행정 용어 해설집』을 처음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병무행정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지침서로의 역할을 다하여 고객중심의 서비스 기관으로 더욱 공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용어 해설집』이 발간되기까지 노력과 열정을 다해 준 여러 직원과 감사해 주신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 박창원 교수와 이금진 연구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병무행정 용어 및 사례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원합니다.

2010년 6월  
병무청장





# 목 차 Contents

I. 징병검사	7
II. 현역병 입영	37
III. 현역병 모집	59
IV. 공익근무요원	69
V.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115
VI. 병력동원(훈련) 소집	133
VII. 병무민원(국외여행·생계곤란)	183
VIII. 병역사항 공개(병적증명)	199
IX. 병무행정 정보화	215
X. 공통·지원(기획·감사·홍보·운영)	229

## ■ 부 록

구 병역법 병역사항 등에 대한 용어 표기 기준	261
영문 병적증명 발급 시 병역용어 표기 기준	275

■ 색 인(가나다 순)	293
--------------	-----



• 병무행정 용어 해설집 •

# I. 징병검사





## ■ 간 기능 검사

간 기능 검사는 피 속에 간 효소 양을 알아보는 검사 방법으로 혈액검사 중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간 기능 수치 또는 간 수치라고 불리기도 한다. 혈청콜레스테롤, 총 단백질, 알부민, 빌리루빈, AST/ALT 효소, 알칼리인산분해효소 등을 검사하는 것으로 간 기능의 전반적인 상태에 대해서 알아 볼 수 있다. 대개의 간 질환은 큰 증상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표를 확인하는 것이며, 보통 혈액의 혈장이나 플라즈마의 표본을 채취하여 이를 분석한다.

### 사 례

#### 질병검사 규정

제37조(임상병리검사 실시)

- ① 임상병리사는 나라사랑카드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출력된 바코드 용지를 채혈튜브 및 소변컵의 검체용기에 접촉 후 검체를 수집하여 간염, 간 기능, 혈구검사 및 소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동 입력한다. 다만, 외관상 명백한 신체등위 5·6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상병리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 간염

간염은 간세포 및 간 조직의 염증을 의미한다. 간염의 주요 원인으로는 바이러스, 알코올, 여러 가지 약물 및 자가 면역 등이 있다. 간염은 지속 기간에 따라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하며, 간염이 6개월 이상 낫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를 만성 간염이라고 한다. 간경변증은 만성 간염에 의하여 장기간에 걸쳐 간세포가 파괴되고 재생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간에 섬유조직과 재생 결절이 증가하여 유발되며, 일단 발생한 간경변증은 점차 간부전으로 진행된다.

### 사 례

#### 질병검사 규정

제37조(임상병리검사 실시)

- ① 임상병리사는 나라사랑카드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출력된 바코드 용지를 채혈튜브 및 소변컵의 검체용기에 접촉 후 검체를 수집하여 간염, 간 기능, 혈구검사 및 소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동 입력한다. 다만, 외관상 명백한 신체등위 5·6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상병리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 고아

고아는 법령상 용어는 아니나 통상적으로 행정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가족관계 기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이들에 대하여는 출원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처분한다.

### 사 례

####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① 2.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

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라.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민법」 제779조 및 제974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없는 사람

마.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 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이 경우 보호기간 중 아동직업훈련시설로 옮겨 보호된 기간은 그 보호기간에 산입한다.

#### 사용례

- 중학 중퇴 이하, 고아, 수형자 등 자질에 의한 제2국민역 편입 대상자

## ■ 국방(National Defense)

국가방위의 줄임말로 좁게는 국토방위를 뜻하며, 넓게는 국토뿐만 아니라 국민, 주권, 국가체제를 수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의의 국방은 영토, 영해, 영공에 대한 외부의 침입을 방지하고 격퇴하는 것이며, 광의의 국방은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 국가의 모든 총력을 동원하여 외부의 무력적 침략으로부터 국가의 제 구성요소 모두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

(프랑스 defen national, 스웨덴 total farsvar 등)

### 사 례

#### 해설

국방의 영역은 구체적으로 군사적 방위와 비군사적 방위로 나누어지는데, 비군사적 범위는 각 국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민간방위(민방위), 경제방위, 사회심리전 방위 등

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국방은 안보보다는 포함하는 범위가 좁고, 정책개념의 수준도 하위이다. 그 대신 국방은 군사보다는 넓고 상위의 개념이다.

### 사용례

- 국방의 의무, 국회 국방위원회
- 국민의 4대 의무 : 국방, 납세, 근로, 교육

#### ※ 유래

- 정부조직법 제정(법률 제1호, 1948.7.17.)시 제28조(국방부) 「국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를 둔다」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 ■ 군사분계선

두 교전국(交戰國) 사이에 휴전이 제의되었을 경우 그어지는 군사행동의 경계선. 대한민국의 경우 1953년 7월에 성립한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휴전의 경계선으로서 휴전선이라고 불리며 그 길이는 약 250km이다.

### 사 례

#### 병역법

제64조(제1국민역의 병역면제 등)

-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1국민역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고,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체등위가 5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 사용례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군사분계선 이남지역
- 해상 군사분계선, 한반도 군사분계선

#### ※ 유래

- 1983.12월 병역법 개정 : “미수복지구에서 이주하여 온 자” 병역면제 처분
- 1993.12월 병역법 개정 : “미수복지구”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용어 순화

## ■ 군 필요인원(종전 ‘군소요’에 해당)

병역자원 수급판단 시 적용하는 군 필요인원은 광의의 개념으로는 각 군 병력규모 유지를 위한 장교, 부사관, 병 등 현역으로 입영할 인원과 전환복무 등으로 배정된 인원을 포함하고, 협의의 개념으로는 각 군 장교, 부사관, 병 등 현역으로 입영할 인원을 의미한다.

## ■ 귀화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어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이다. 귀화를 인정하는 조건은 각국의 국적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적법에서는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귀화할 수 있으며,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는 국적법 제5조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② 만20세 이상으로서 그의 본국법에 의하여 능력이 있어야 하며 ③ 품행이 단정하여야 하고 ④ 독립의 생계를 유지할 만한 자산 또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⑤ 국적이 없거나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6개월 이내에 본래의 국적을 상실하게 될 것 등이 있다. 그러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가지면 제5조에 규정한 5가지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귀화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고시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사 례

#### 병역법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 또는 의무 종사를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형이 부정기형으로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된 경우에는 장기를 적용한다.
2.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바.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사용례

-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귀화자

## ■ 나라사랑카드

징병검사 시 공적신분증에 의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얼굴 촬영 이미지를 저장하여 발급하는 카드로서 징병검사 과정에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신분증과 금융업무 및 병역증 역할을 하게 되며, 군복무 시에는 봉급을 입금할 수 있는 급여통장과 전역증까지 겸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이다.

## 징병검사규정

제28조(징병검사대상자 인접 및 나라사랑카드 교부)

- ① 심리검사 사무원은 징병검사장에 도착한 징병검사대상자를 인접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공적신분증 등을 제시받아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나라사랑카드 발행 전산화면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등록이 완료되면 나라사랑카드를 교부한다.

## 사용례

- 나라사랑카드로 본인여부 확인, 방사선사는 나라사랑카드로 본인 여부를 확인, 임상병리사는 나라사랑카드로 본인여부를 확인,
- 나라사랑카드로 인식된 전산화면에서 본인여부를 확인

※ 나라사랑카드 부가서비스

- 선불형 교통카드(T-money)
- 현역병 상해보험 무료 가입
  - 나라사랑카드 군 급여계좌 이용자
  - 최대 1천만 원 범위(군복무중 휴가/외박/외출의 사유로 영외출타 간 발생한 상해)
- CGV 영화관 현장 할인 1,500원(동반 1인까지 추가 할인)
  - 월1회 제공(직전 3개월 이용금액이 월평균 10만 원 이상인 경우 한함)
- 서울랜드/롯데월드 자유이용권 50% 할인
- 아웃백스테이크 20% 현장 할인 등

## ■ 단백질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것을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정상 소변에도 어느 정도 단백질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성인인 경우 하루 500mg 이상, 소아는 1시간 동안 체표면적 1제곱미터 당 4mg 이상의 단백질 배설될 때 명백한 단백질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보다 적은 양(하루30~300mg)의 단백질 배설되는 경우에도 미세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미세 단백질은 당뇨병이나 고혈압, 사구체 신염에 의한 신장 질환의 초기 증세가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신장에 심각한 병이 없어도 간혹 소량의 단백질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기능성 단백질이라고 부른다. 기능성 단백질의 경우 일시적으로 발생했다가 없어지는 것으로 신장 기능에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 사 례

## 징병검사 규정

제37조(임상병리검사 실시)

- ② 임상병리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소변검사 이상자 중 혈뇨 및 단백뇨 이상자는 현미경 검사를, 간 기능(AST, ALT) 수치의 이상자로서 B형 간염음성자는 C형간염(Anti-HCV) 검사를, 뇨당 이상자에 대하여는 혈당 검사를 각각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력한 후 내과 징병검사의사에게 전송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의 간염, 간 기능, 혈구검사 및 소변검사자 연명부를 전산관리한다.

## ■ 마약류중독검사

마약이란 모르핀, 코카인, 아편 등과 그 유도체로서 미량으로 강력한 진통작용과 마취 작용을 지니며 계속 사용하면 습관성과 탐닉성이 생기게 하는 물질이다. 사용을 중단하면 격렬한 금단증세를 일으켜 마약을 사용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며, 후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폐인이 되게 한다. 이러한 마약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에도 해를 끼친다.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마약류인 필로폰, 대마, 코카인, 엑스터시 등을 소변을 이용하여 검출하고, 검사 결과 양성자의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시험을 의뢰한다.

## 사 례

## 징병검사 규정

제37조(임상병리검사 실시)

- ④ 임상병리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마약류중독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신경 정신과 징병검사의사에게 전송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의 마약류중독검사 연명부를 전산관리 한다.
1. 신경정신과 징병검사의사가 의무자의 신체에 주사자국, 문신, 자해흔적이 있거나 그 밖의 마약류중독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별지 제14호 서식의 마약류 중독검사 의뢰/결과 등록 화면에 입력하여 검사를 의뢰한 사람
  2. 임상심리사가 심리검사 결과 마약류중독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질병상태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 ■ 방사선사

엑스선, 감마선 따위의 방사선을 이용하여 신체 특정부위에 대한 X-ray촬영, 컴퓨터단층 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초음파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사 례

## 징병검사 규정

제36조(방사선 촬영 및 필름보관)

- ① 방사선사는 나라사랑카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흉부방사선촬영결과 등록화면에 흉부 방사선촬영번호를 부여하여 촬영된 필름에 동일번호가 기록되도록 하고 그 번호순으로 흉부 흉부방사선촬영을 실시하여 영상학과 또는 내과 징병검사의사에게 인계하되 외관상 명백한 신체등위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방사선 흉부 흉부방사선촬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영상학과 징병검사의사는 흉부 방사선촬영 필름을 판독한 후 이상자에 대하여는 방사선 촬영 판독결과 등록화면에 입력하여 방사선사에게 촬영을 의뢰하고, 방사선사는 나라사랑 카드로 본인여부를 확인하여 촬영 후 그 필름 또는 영상전환장치(Digitizer)를 이용한 그 영상을 영상학과 징병검사의사에게 인계한다. 영상학과 징병검사의사는 촬영판독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의 방사선 촬영 판독결과 등록 화면에 입력하여 해당과 징병검사의사가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각과별 징병검사의사는 방사선 촬영이 필요한 경우 제2항의 절차에 의하되, 촬영필름의 색인은 “부록 8”의 방사선 직접촬영 필름의 색인방법에 의한다.

## ■ 방사선촬영

피사체를 통과한 X선을 피사체와 같은 크기의 필름으로 직접필름에 촬영하는 방사선 촬영의 한 기법으로 현재는 피사체에 직접촬영하고 영상을 모니터로 보여주는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

## 사 례

## 징병검사 규정

제36조(방사선 촬영 및 보관)

- ④ 영상학과 징병검사의사는 외부 방사선 필름(CT, MRI 등)을 지참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방사선 필름을 판독한 후 그 판독 결과를 방사선 촬영 판독결과 등록화면에 입력하여 해당과 징병검사의사에게 전송한다. 다만, 영상학과 징병검사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과 징병검사의사가 직접 판독하여 방사선 촬영 판독결과 등록화면에 등록한다.

## ■ 병사용진단서

정확한 신체등위 판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병무청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병·의원에서 질병상태와 향후 치료기간 등을 기록한 진단서를 말한다. 병사용진단서는 병무청 지정 병원에서 발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해당 질병의 수술, 1월 이상 입원,

6월 이상 통원 치료의 경우에는 비지정병원에서도 발급할 수 있다.

## 사 례

### 징병검사 규정

제46조(병무청 지정병원의 병사용진단서 참조 등) 중앙신검소장 및 지방병무청장은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병사용진단서를 참조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7조(비지정병(의)원 병사용진단서 참조 등) 중앙신검소장 및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지정병(의)원의 장이 발행한 병사용진단서를 참조할 수 있다.

## ■ 병역

협회의 병역은 국가의 복무명령이 있는 경우에 군의 구성원으로서 군에 복무할 의무이며, 광의의 병역은 군사적 구성을 위한 국민의 인적 부담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최광의의 개념으로서는 국가 안보차원에서 「비군사적 분야에서 국가 및 사회·경제 활동을 위한 봉사활동」까지 병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병역은 광의로 보아 인적부담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충성심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징용이나 노무동원과는 다른 특징을 가진다. 징용이나 노무, 역무는 단순히 노동력만을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보수를 받는 데에 비하여 병역의무는 국가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고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윤리적 충성심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숭고성과 존엄성이 다른 의무보다 더 강조되고 있다.

## 사 례

### 병역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사용례

- 병역제도, 병역이념, 병역자원,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병역의무자
- 거주지 이동 및 국외여행,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병역의무의 종료 등

※ 유래

- 병역법 제정(법률 제41호, 1949.8.06.)시 제3조(병역의무) 사용
- 추가 신설조항(제3조3항, 2007.12.31.) :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피부색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내는 것을 말한다.

### 사 례

#### 병역법

제6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

-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라 한다)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 사용례

-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 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 병역자원 수급판단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현역가용자원과 국방부에서 산출한 군 필요인원을 비교하여 중·장기적으로 병역자원의 과부족 등 병역자원의 추세를 예측하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국방정책 등에 활용된다.

### 사 례

#### 사용례

- 병역법 제11조(징병검사) 제1항 “병역자원의 수급상황”, 제14조(병역처분) 제4항 “병역자원의 수급”, 제19조(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제1항 제1호 “병역자원이 부족”

## ■ 병역처분

병역의무대상자에 대하여 신체등위·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병역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 사 례

#### 병역법

제14조(병역처분)

- ①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병역처분을 한다.
1. 신체등위가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 : 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

총역 또는 제2국민역

2. 신체등위가 5급인 사람 : 제2국민역
3. 신체등위가 6급인 사람 : 병역면제
4.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 : 재신체검사(再身體檢査)

**사용례**

- 병역처분 변경, 병역처분기준, 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연도	학력 신체 등위	대학	고졸	고퇴	중졸	초등졸	초등졸 미만	비 고
'70	갑 종	현	보	총	역			• 합격자 : 1,2, 3,4급 구분 • 불합격자 : 병종, 정종, 무종
	1을종							
	2을종							
	3을종							
'71	갑 종	현	보	총	역			
	1을종							
	2을종							
	3을종							
'72	갑 종	현	보	총	역			
	1을종							
	2을종							
	3을종							
'73	갑 종	현	보	총	역		방위 소집 면제	
	1을종							
	2을종							
	3을종							
'74 ~ '76	갑 종	현	보	총	역		방위 소집 면제	
	1을종							
	2을종							
'77 ~ '79	갑 종	현	보	총	역		방위 소집 면제	
	1을종							
	2을종							
'80 ~ '83	갑 종	현	보	총	역		방위 소집 면제	
	1을종							
	2을종							
	3을종							

연도	학력 신체 등위	대학	고졸	고퇴	중졸	초등졸	초등졸 미만	비 고
'84	1급	현	역	보	총	역	방위 소집 면제	• 신체등위변경 (1,2,3,4급)
	2급							
	3급							
	4급							
'85	1급	현	역	보	총	역	방위 소집 면제	
	2급							
	3급							
	4급							
'86	1급	현	역	보	총	역	방위 소집 면제	
	2급							
	3급							
	4급							
'87	1급	현	역	보	총	역	방위 소집 면제	
	2급							
	3급							
	4급							
'88	1급	현	역	보	총	역	초등졸미만자 징병검사 생략 (서류출원에 의한 방위소집 면제 처분)	
	2급							
	3급							
	4급							
'89	1급	현	역	보	총	역	초등졸미만자 징병검사 생략 (서류출원에 의한 방위소집 면제 처분)	
	2급							
	3급							
	4급							
'90	1급	현	역	보	총	역	초등졸미만자 징병검사 생략 (서류출원에 의한 방위소집 면제 처분)	• 보충역 전환(1991.6.1) - 대학·고졸 : 신장 162cm 이하 - 고졸 : 안과근시 2급
	2급							
	3급							
	4급							
'91	1급	현	역	보	총	역	초등졸미만자 징병검사 생략 (서류출원에 의한 방위소집 면제 처분)	• 보충역 전환(1991.11.15) - 고졸 2급 • 보충역(방위소집면제) - 중학 중퇴 이하자(1992.1.1)
	2급							
	3급							
	4급							
'92	1급	현	역	보	총	역	초등졸미만자 징병검사 생략 (서류출원에 의한 방위소집 면제 처분)	• 보충역 전환(1992.10.30) - 대학·고졸 3,4급 - 고퇴 이하 전원 ○ 사생아 사유 소집 면제 제도 폐지
	2급							
	3급							
	4급							

연도	학력 신체 등위	대학	고졸	고퇴	중졸	초등졸	초등졸 미만	비 고
'93	1급	현	역	보	충	역	소집 면제	•보충역전환 - 대학·고졸 4급 - 고퇴 이하 전원
	2급							
	3급							
	4급							
'94	1급	현	역	보	충	역	제2 국민역	•보충역전환 - 고퇴 2급 이하 전원 ○독자사유 보충역 제도 폐지 (1975.1.1일생 이후)
	2급							
	3급							
	4급							
'95	1급	현	역	보	충	역	제2 국민역	•학력별 제한 없이 신체등위 4급지만 보충역 처분
	2급							
	3급							
	4급							
'96	1급	현	역	보	충	역	제2 국민역	•보충역전환 : 중졸 1,2,3급
	2급							
	3급							
	4급							
'97	1급	현	역	보	충	역	제2 국민역	•보충역전환 - 1997.6.2 : 고퇴 3급 - 1998.1.1 : 고퇴 2급
	2급							
	3급							
	4급							
'98	1급	현	역	보	충	역	제2 국민역	
	2급							
	3급							
	4급							
'99 ~ '03	1급	현	역	보	충	역	제2 국민역	•중학 중퇴 이하자 징병검사 생략 (서류출원에 의한 제2국민역 처분)
	2급							
	3급							
	4급							
'04 ~ '10	1급	현	역	보	충	역	제2 국민역	
	2급							
	3급							
	4급							

## ■ 병역처분변경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 포함) 또는 보충역(복무중인사람 포함)인 사람이 질병·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인 사람이 질병·심신장애가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 다시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 사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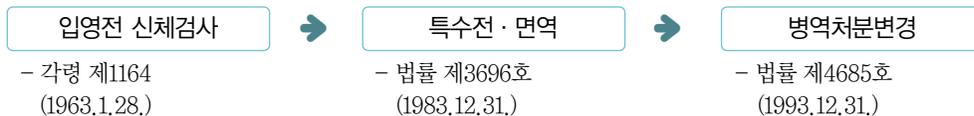
####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변경 등)은 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서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편입·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처분

#### 사용례

- 현역병입영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 예비역장교 등의 병역처분변경

※ 병역처분변경 명칭 변천사



## ■ 병적

병역의무자의 병역사항은 물론, 학력·경력·등록기준지 등을 상세히 기재한 것으로 병역자원 관리의 기본이 된다.

### 사 례

#### 병역법 시행령

제2조(병적관리)

#### 사용례

- 병적편입, 병적에서 제적, 병적관리, 병적이관, 병적조회

## ■ 신체검사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내과·외과 등 징병검사전담의사 또는 징병검사전문의사가 신체의 모든 부위를 검사하여 1급 내지 7급까지의 신체등위를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사 례

## 병역법

## 제11조(징병검사)

- ③ 징병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한다.
- ④ 신체검사는 내과·외과 등 신체의 모든 부위를 검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 검사와 방사선촬영 등을 할 수 있다.

## ■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

신체등위 판정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병무청위원회를, 중앙 신체검사소에 중앙위원회를, 각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별로 지방위원회를 둔다.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는 신체등위 판정이 곤란한 사람, 판정에 이의를 신청한 사람 등에 대하여 심의를 하게 되며, 신체검사 관계자 및 시민단체관계자와 민간병원 전문의 등 학식과 덕망 있는 인사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사 례

## 병역법

## 제12조(신체등위의 판정)

- ② 제1항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의 정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지방병무청과 신체등위 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 기관에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심리검사

징병검사 과정에서 정신병 경향자 등을 사전 선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인성검사와 인지능력검사로 구분되고 임상심리사가 이를 수행한다.

## 사 례

## 병역법

## 제11조(징병검사)

- ③ 징병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한다.

## 병역법 시행령

## 제14조(심리검사 및 적성 분류 등)

- ① 심리검사는 개인의 정신적·심리적 상태 등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 ■ 영상의학과

뢴트겐(Wilhelm Conrad Roentgen)이 1895년 11월 8일 X선을 발견하고 이를 'X선 방사(X-radiaion)' 라고 명명하였는데 현재도 영상의학 분야에서 이 용어가 쓰이고 있다. 이후 X선을 인체에 투과하면 인체의 내부 구조물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 단순 방사선 촬영은 영상의학 분야에서는 약 50년 간 인체 내부의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법으로 진단 및 치료 분야에 이바지해왔다. 영상의학과는 예전에 일반인들에게 엑스레이(X-ray)과로 불리었던 과로, X선 촬영뿐만 아니라 전자 기장, 초음파 등을 이용하여 신체 부위의 영상을 획득하여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한다.

### 사 례

#### 징병검사 규정

제34조(진단서 등 징병검사 참고자료 제출안내) 심리검사 사무원은 신체검사에 참고가 되는 병사용진단서 등은 해당과 징병검사의사에게, 병사용 학력증명서 등은 적성분류관에게, 외부 방사선 필름은 영상의학과 징병검사의사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이 경우 외부 방사선 필름은 외부방사선 사진 등록 화면에 등록한다.

제36조(방사선 촬영 및 필름보관)

- ② 영상의학과 징병검사의사는 흉부 흉부방사선촬영 필름을 판독한 후 이상자에 대하여는 방사선 직접촬영 판독결과 등록화면에 입력하여 방사선사에게 촬영을 의뢰한다.

## ■ 영상전환장치(Digitizer)

입력 원본의 아날로그 데이터인 좌표를 판독하여, 컴퓨터에 디지털 형식으로 설계도면이나 도형을 입력하는 데에 사용되는 입력장치이다. X,Y위치를 입력할 수 있으며, 직사각형의 넓은 평면 모양의 장치나 그 위에서 사용되는 펜이나 버튼이 달린 커서장치로 구성한다. 이러한 영상전환장치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 시킬 수 있다.

### 사 례

#### 징병검사 규정

제36조(방사선 촬영 및 필름보관)

- ② 영상의학과 징병검사의사는 흉부방사선 촬영 필름을 판독한 후 이상자에 대하여는 방사선 직접촬영 판독결과 등록화면에 입력하여 방사선사에게 촬영을 의뢰하고, 방사선사는 나라 사랑카드로 본인여부를 확인하여 직접촬영 후 그 필름 또는 영상전환장치(Digitizer)를 이용한 그 영상을 영상의학과 징병검사의사에게 인계한다. 영상의학과 징병검사의사는 직접촬영 판독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의 방사선 직접촬영 판독결과 등록화면에 입력하여 해당과 징병검사의사가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 ■ 위탁검사

징병신체검사 시 병무청 의료장비 부족 또는 위험이 수반되어 자체 검사가 곤란한 특정 질환의 진단을 위한 검사를 병무청이 협약한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는 것이다. 위탁검사 의료기관은 지방병무청장이 의무자의 교통편, 거리 등을 고려하여 관내의 병무청 지정병원 중에서 선정·협약 한다.

### 사 례

#### 병역법

제79조(여비 등의 국고부담)

- ② 위탁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 ③ 위탁검사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용례

- 민간의료기관 위탁검사 실시, 위탁검사 의뢰 및 결과서

## ■ 의무자 예비

국가가 병역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병역의무이행 시 소요되는 비용(교통비, 식비, 숙박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지급 대상		지급 방법	비고
징병검사 대상자		나라사랑카드 계좌입금	2007년 이후 나라 사랑카드 소지자는 카드계좌로 여비지급
징·소집 대상자	모집병 입영대상자, 입영(소집)일자 본인선택자 입영원 출원자	개인 금융계좌 입금	
	우편통지자	여비지급청구서 교부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		입영부대 위탁지급	

### 사 례

#### 병역법

제79조(여비 등의 국고부담)

- ① 징병검사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와 징·소집 또는 현역병을 지원하여 입영하거나 귀가하는 사람의 여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 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 ① 병역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로 하되, 지급범위·지급액·지급시기·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병무청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 사용례

- 병역의무자여비 지급, 여비지급 대상자, 의무자여비 지급기준,
- 의무자여비 지급계좌, 의무자여비 환수금액

### ※ 유래

- 병역의무자 여비는 2001년 이전에는 지방병무행정정보조금으로 편성하였고, 2002년 이후에 병무청 예산으로 편성함

## ■ 임상병리사

임상병리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 병리검사업무에 종사하며 검체 또는 생체를 대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 결과를 제공하는 전문 의과학 기술인이다. 주요 업무는 병리학·미생물학·생화학·기생충학·혈액학·혈청학·법의학 등을 비롯해 요화학·세포병리학·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가검물 등의 분야에서 임상병리검사 업무에 필요한 기계·기구·시약 등의 보관·관리·사용, 가검물 등의 채취·검사, 검사용 시약의 조제, 혈액 채혈, 기타 임상병리검사와 관련된 업무 등의 수행이다.

### 사 례

#### 징병검사 규정

##### 제37조(임상병리검사 실시)

- ① 임상병리사는 나라사랑카드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출력된 바코드 용지를 채혈튜브 및 소변컵의 검체용기에 접촉 후 검체를 수집하여 간염, 간 기능, 혈구검사 및 소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동 입력한다. 다만, 외관상 명백한 신체등위 5·6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상병리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임상병리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소변검사 이상자 중 혈뇨 및 뇨단백 이상자는 현미경 검사를, 간 기능(AST, ALT) 수치의 이상자로서 B형 간염 음성자는 C형간염(Anti-HCV) 검사를, 뇨당 이상자에 대하여는 혈당검사를 각각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력한 후 내과 징병검사의사에게 전송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의 간염, 간 기능, 혈구검사 및 소변검사자 연명부를 전산관리한다.

## ■ 임상심리사

징병검사 과정에서 정신병 경향자 등을 선별하기 위해 실시하는 심리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정신보건임상심리사(석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 자격증 취득자이다. 심리검사대상자에 대하여 면담 및 심리상태에 적합한 간이정신진단검사, 성인용 지능검사 등 8개 심리검사 도구를 선택하여 개별검사를 실시한다.

\*심리검사 도구 : 성인용 지능검사, 벤더도형검사, 주제통각검사, 로르샤하검사, 간이정신진단검사, 문장완성검사, 벡 우울척도, 벡 불안척도

### 사 례

#### 징병검사 규정

제31조(심리검사의 실시)

- ④ 임상심리사는 2차 심리검사 대상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사하고 가급적 당일에 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검사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정신·심리·인성에 이상이 있어 정밀한 심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경정신과 징병검사의사에게 정밀 심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이하 생략)

## ■ 장애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며,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1급 ~ 6급 까지 등록된 사람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여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처분하고 있다.

### 사 례

#### 병역법

제64조(제1국민역의 병역면제 등)

-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1국민역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고,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체등위가 5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1.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 장애인 관련 법률

- 장애인 복지법(법률 제9932호, 2010.1.18.)

-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 장애등급 판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27호)

### 사용례

- 심신장애,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등록증, 장애진단서 등

## ■ 적성

어떤 일에 알맞은 성질이나 적응 능력 또는 소질을 적성이라 하며, 병무청에서는 개인의 자격면허, 전공학과, 직업경력 등을 고려하여 군복무에 필요한 적성을 분류·결정한다.  
\*적성의 종류(12개) : 건축토목, 전기, 전자통신전산, 중장비운전, 수송장비정비, 차량운전, 화학, 기계, 항공, 의무, 요리, 공통

### 사 례

### 병역법

제13조(적성의 분류·결정 등)

- ① 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의 결과 신체등위가 1급부터 4급까지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자격·면허·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군복무에 필요한 적성을 분류·결정한다.

### 사용례

- 병역의무자 적성분류, 적성별 충원율, 적성조정제도, 적성변경

※ 유래

- 1990년 이전 4개 병종, 35개 직군으로 분류
- 1991년 12개 적성분류 : 전투, 건축토목, 전자통신전기, 중장비운전·정비, 화학, 기계, 항공, 의료, 차량운전·정비, 요리, 군악, 공통
- 1996년 14개 적성분류 : 건축토목, 전자통신전기, 의료 ⇒ 건축토목전기, 전자, 의무, 통신, 전산
- 1999년 14개 적성 중 변경 : 전투 적성을 공통으로 통합, 건축토목전기 ⇒ 건축토목, 전기로 세분화
- 2003년 12개 적성분류 : 전자, 통신, 전산 ⇒ 전자통신전산으로 통합

## ■ 제1국민역

병역의무자로서 현역·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 즉 징병검사대상자·현역병 입영대상자 및 제1국민역 무관후보생을 말하며,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로 제1국민역에 편입되고 병역의무가 발생한다.

사 례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제1항 제4호 “제1국민역”이란 병역의무자로서 현역·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사용례**

- 제1국민역 편입자 조사,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 제1국민역의 병역면제

■ 제2국민역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한다.

사 례

**병역법**

제12조(신체등위의 판정)

- ①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를 한 징병검사전담의사, 징병검사 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른 군의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체등위를 판정한다.
- 2.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5급

**사용례**

-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제2국민역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이 필요한 경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 등

■ 중점관리대상 질환

신체손상, 사위행위, 치료방치 등의 방법으로 현역입영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18개 특정질환을 병무청장이 지정·관리하는 것이다.

○ 중점관리대상 질환 : 18개

유 형	질 환 명
사위행위(9개)	사구체신염, 신우신염, 신증후군, 그 밖의 기분장애, 신경증적장애,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 척추측만증, 시력장애, 부동시,
신체손상(6개)	신장·간이식 등 수술,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수지결손, 족지결손, 견갑관절의 불안정성, 불안정성 대관절(무릎)
치료방치(3개)	본태성고혈압, 간염, 아토피성 피부염

※ 유래

- 2004년 13개 질환 최초 선정
- 2005년 3개 질환 추가선정(사구체신염, 신우신염, 신증후군)
- 2009년 1개 질환 추가선정(견갑관절의 불안정성)
- 2010년 1개 질환 추가선정(불안정성 대관절-무릎)

## ■ 징병검사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한다. 신체검사는 외과·내과 등 신체의 모든 부위를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와 방사선촬영 등을 할 수 있다.

### 사 례

#### 병역법

##### 제11조(징병검사)

- ①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 ②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징병검사가 연기(延期)된 후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③ 징병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한다.

#### 사용례

- 징병검사대상자, 징병검사 종사자, 징병검사 연기자, 징병검사전담의사

※ 유래

- 1949년도 : 최초징병검사 실시
- 1967년도 : 군병원을 활용한 시범 징병검사장 개설(서울, 광주, 대구)
- 1970년도 : 병무청 창설(1970.8.20)이후 시·군·구 단위 이동검사 실시
- 1971년도 : 징병검사를 병무청장이 관장
- 1974년도 : 최초 상설 징병검사장 개설(상설3, 이동10)
- 1994년도 : 상설징병검사 전면 실시
- 2002년도 : 중앙신체검사소 설치 운영

## ■ 징병검사본인선택

징병검사 시 지방병무청별로 대상자에게 일자·장소를 직권으로 지정하여 통지하던 것을

병역의무자 본인이 원하는 일자·장소를 자율 선택하는 제도로써 국민의 편의 도모 및 병역의무 자율이행 풍토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

※ 유래

연 도	내 용	비 고
2005년	○ 징병검사 본인선택 시범실시 - 대학생에 한하여 방학기간(2,7,8월)	시범실시
2006년	○ 징병검사 본인선택 전면실시 - 일자선택 : 병역의무자 전원 - 장소선택 : 대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 등	전면실시
2007년	○ 징병검사 본인선택 확대 - 권역별 인근 청 간, 장소선택 고교생까지	확대실시

### ■ 징병검사전문의사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 례

#### 병역법

제12조(신체등위의 판정)

- ①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를 한 징병검사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체등위를 판정한다.

#### 사용례

- 징병검사전담의사와 징병검사전문의사만으로 신체검사업무 등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

### ■ 징병검사 종결처리

당해년도에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 징병검사 연기자·기피자, 출원에 의하여 병역처분된 사람, 18세에 징병검사를 받고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되어 19세에 도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학력·신체등위·적성분류·병역감면사항 등 각종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현역병 입영대상자·보충역 편입자·불합격자의 명부를 정리하고 징병검사연기자·기피자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사 례

**징병검사규정**

제76조(종결처리 대상자) 징병검사 종결처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년도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 다만, 재학생입영신청서 제출자 등 별도입영대상자는 제외  
(개정 2010.2.2.)
2. 당해년도 징병검사대상자로서 징병검사 연기자, 행방불명자 및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 등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3. 당해년도 징병검사대상자로서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원에 의한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된 사람
4. 법 제11조 제5항, 제64조 및 영 제17조 단서에 따라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된 18세인 사람으로서 19세에 도달한 사람

**사용례**

- 징병검사 종결처리, 종결처리 담당자

**■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징병신체검사, 입영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 병역처분변경신체검사대상자 등에 대하여 질병·심신장애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정한 것으로 국방부장관이 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내과 등 13개 과목 41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초음파 검사**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를 생성하는 탐촉자를 검사 부위에 밀착시켜 초음파를 보낸 다음 되돌아오는 초음파를 실시간 영상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초음파검사는 초음파영상을 실시간으로 얻기 때문에 장기의 구조뿐만 아니라 운동까지도 관찰할 수 있으며, 혈관 내부의 혈류도 측정할 수 있다. 초음파는 인체에 무해하며 통증 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할 수 있어 환자가 가진 질환을 진단하거나 그 치료경과를 판단하기에 매우 쉽고 편리한 영상검사 방법이다.

## 사 례

**징병검사 규정**

제36조(방사선 촬영 및 필름보관)

- ⑥ 각 과별 징병검사의사는 초음파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사선 직접촬영 판독결과 등록 화면에 검사항목 및 검사부위를 입력하여 영상의학과 징병검사의사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방사선 촬영 판독결과 등록화면의 판독 내용란에 입력

하여 해당과 징병검사의사가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영상학과 징병검사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과 징병검사의사는 직접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거나 방사선사에게 의뢰하여 초음파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판독

영상의학과에서 검사한 X-ray검사, 컴퓨터단층촬영(CT)검사, 자기공명영상촬영(MRI)검사, 초음파검사 등의 영상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진단 및 진료자문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사 례

#### 징병검사 규정

제36조(방사선 촬영 및 보관)

- ④ 영상학과 징병검사의사는 외부 방사선 필름(CT, MRI 등)을 지참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방사선 필름을 판독한 후 그 판독 결과를 방사선 직접촬영 판독결과 등록화면에 입력하여 해당과 징병검사의사에게 전송한다. 다만, 영상학과 징병검사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과 징병검사의사가 직접 판독하여 방사선 직접촬영 판독결과 등록화면에 등록한다.

## ■ 현역가용자원

병역자원 수급판단 시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예측한 인원으로, 제2국민역 등 면제 처분율과 보충역 처분율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 ■ 혈구검사

질환의 진단, 치료 및 추적관찰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혈액검사 중의 하나로서 혈액 내 존재하는 세 가지 종류의 세포, 즉 적혈구·백혈구·혈소판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지표(parameter)를 이용하여 파악하는 검사이다. 혈구의 수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혈액을 적절하게 희석하여 일정용적 내 각각의 혈구 세포수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자동혈구분석기가 널리 쓰이며, 악성빈혈, 대구성빈혈, 백혈병, 다혈구혈증 등의 진단에 사용된다.

### 사 례

#### 징병검사 규정

제37조(임상병리검사 실시)

- ① 임상병리사는 나라사랑카드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출력된 바코드 용지를 채혈튜브 및 소변컵의 검체용기에 접착 후 검체를 수집하여 간염, 간 기능, 혈구검사 및 소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동 입력한다. 다만, 외관상 명백한 신체등위 5·6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상병리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 혈뇨

소변에 비정상적인 양의 적혈구가 섞여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적은 양의 혈뇨가 한 번 있었다고 해서 이상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일시적인 혈뇨는 흔한 증상으로 감염, 알레르기, 운동 및 화상에 의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지속적인 혈뇨가 있거나 혈뇨의 양이 많을 때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혈뇨는 신장에서 외요도에 이르는 요로 중 어느 한 부분에서 출혈이 있음을 의미하며, 출혈부위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찾기 위해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소변검사와 혈액검사, 신장 초음파와 컴퓨터 단층촬영 등의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 신장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 요로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로 나누어 추가 검사 및 치료를 한다.

## 사 례

### 질병검사 규정

제37조(임상병리검사 실시)

- ② 임상병리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소변검사 이상자 중 혈뇨 및 노단백 이상자는 현미경 검사를, 간 기능(AST, ALT) 수치의 이상자로서 B형 간염음성자는 C형간염(Anti-HCV) 검사를, 노당 이상자에 대하여는 혈당 검사를 각각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력한 후 내과 질병 검사 의사에게 전송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의 간염, 간 기능, 혈구검사 및 소변검사자 연명부를 전산관리 한다.

## ■ 흉부방사선촬영

집단검진으로 X선 진단을 할 때 직접 필름에 촬영하면 큰 필름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경제적·기술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형광판에 비친 흉부의 투영상을 밝은 렌즈의 보통 카메라로 작은 필름에 축소 촬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때에는 초감도의 소형 필름으로 연속 촬영한다. 필름의 크기는 35mm판·60mm판·70mm판·100mm판의 4종류가 있으며, 감광과장은 400~650mm이다. 이 방법은 결핵을 위한 흉부검진에 응용되어 왔다.

## 사례

## 병역법

## 제11조(징병검사)

- ④ 신체검사는 외과·내과 등 신체의 모든 부위를 검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 검사와 방사선촬영 등을 할 수 있다.

## 징병검사 규정

## 제36조(방사선 촬영 및 필름보관)

- ① 방사선사는 나라사랑카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홍부방사선촬영결과 등록화면에 홍부 방사선촬영번호를 부여하여 촬영된 필름에 동일번호가 기록되도록 하고 그 번호순으로 홍부방사선촬영을 실시하여 영상의학과 또는 내과 징병검사의사에게 인계하되 외관상 명백한 신체등위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방사선 홍부방사선촬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B형간염

hepatitis B virus(HBV)의 감염에 의해 생기는 간염을 말하며 전 세계적으로 사망 순위 9위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감염 질환이다. 감염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되는 경우, 즉 감염자와의 성 접촉 및 주사바늘 등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와 B형간염 양성인 혈액 및 혈액제제의 수혈을 통해 전파된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B형 간염 바이러스 유행 지역에서는 모자 간 수직감염이 중요한 감염 경로로 알려져 있다. 술잔 등을 통한 타액에 의한 전파나 일상생활을 통한 감염 위험은 거의 없다. 성인이 감염되면 대부분 자연 회복이 되고 만성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5% 미만이나, 신생아나 유아기에 수직감염이 되는 경우에는 90% 이상이 만성간염 바이러스 보균자가 된다. 감염환자에게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세는 전신쇠약감과 피로감이다. 만성간염을 오래 앓게 되면 간경변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 음주, 과로 또는 간에 해로운 약물을 복용하면 간경변으로 진행할 확률이 높아진다.

## 사례

## 징병검사 규정

## 제37조(임상병리검사 실시)

- ② 임상병리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소변검사 이상자 중 혈뇨 및 뇨단백 이상자는 현미경 검사를, 간 기능(AST, ALT) 수치의 이상자로서 B형간염 음성자는 C형간염(Anti-HCV) 검사를, 뇨당 이상자에 대하여는 혈당 검사를 각각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력한 후 내과 징병검사의사에게 전송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의 간염, 간 기능, 혈구검사 및 소변검사자 연명부를 전산관리 한다.

## ■ C형간염

hepatitis C virus(HCV)의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간염으로 주로 혈액을 통해 전염되며 그 외에 다른 경로로 전염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급성과 만성으로 나뉘는데, 급성의 경우 증상은 A형이나 B형 간염과 거의 비슷하다. 대부분 아무런 증상 없이 지나가지만 때로는 독감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달리 치료를 하지 않아도 호전되며, 일부환자의 경우에는 피부와 눈이 노랗게 되거나 소변이 진해지고 피로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질환에 감염되면 반드시 A형·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을 해야 하고, 증세가 장기간 지속되면 간경화증이나 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1년에 한두 번 정기검진을 받아야 한다. 치료법으로는 인터페론이 C형간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사 례

#### 질병검사 규정

제37조(임상병리검사 실시)

- ② 임상병리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소변검사 이상자 중 혈뇨 및 뇨단백 이상자는 현미경 검사를, 간 기능(AST, ALT) 수치의 이상자로서 B형간염 음성자는 C형간염(Anti-HCV) 검사를, 뇨당 이상자에 대하여는 혈당검사를 각각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력한 후 내과 징병검사의사에게 전송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의 간염, 간 기능, 혈구검사 및 소변검사자 연명부를 전산관리 한다.



• 병무행정 용어 해설집 •

## Ⅱ. 현역병 입영





## ■ 교정시설경비교도

국방부장관이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보호감호소·구치소 및 교도소에 대한 경비 임무와 무장공비 등의 침투거부 등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 중에서 배정(직권)에 의하여 임명된다. 현역복무와 형태를 달리하는 군인으로서,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여 복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 사 례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1조(설치 및 임무) 보호감호소·구치소 및 교도소에 대한 경비임무와 무장공비 등의 침투 거부 등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 하에 교정시설경비교도대를 둔다.

#### 사용례

-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설치법

※ 유례

-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법률 제3431호, 1981.4.13.) 제정 사용

## ■ 군장학생

고등학교 이상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군에서 시행하는 전형에 합격하여 선발되며, 재학 중 군에서 장학금을 지급받고 졸업 후 일정기간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 하게 된다.

### 사 례

#### 군장학생규정

##### 제2조(정의)

1. “군장학생”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 급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군에서 시행하는 전형에 합격하여 선발된 자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가. 대학장학생 :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후 장교로 복무하기 위하여 군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 나. 고등학교장학생 : 고등학교, 전문대학, 기술대학 또는 기능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후 현역의 부사관으로 복무하기 위하여 군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2. “장학금”이라 함은 군인사법 제7조 제3항 및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장학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군장학생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 병역법 시행규칙

제26조(군장학생 선발자의 통보 및 입영 등)

- ①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군장학생규정에 따라 군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선발자 명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 사용례

- 군장학생 선발, 군장학생 선발취소

### ※ 종류

#### ○ 대학장학생

- 선발 : 4년제 대학교 중 학군단 설치 대학교에서 1~3학년에 재학 중인 남자
- 복무 : 학군사관 6년 4월(의무복무기간 2년 4월+장학금수혜기간 4년),  
학사사관 7년(의무복무기간 3년+장학금수혜기간 4년)

#### ○ 전문대장학생

- 선발 : 학·군 제휴 협약 전문대학 및 폴리텍대학에서 1~2학년에 재학 중인 남자
- 복무 : 5년(의무복무기간 4년+장학금수혜기간(1/2) 1년)

#### ○ 고교장학생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재학생

## ■ 군전공의요원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수련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사 례

###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 ① 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징병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무 분야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이하 “군전공의요원”이라 한다)으로서 33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 ■ 군중사관후보생

군중장교의 병적편입에 필요한 목사, 신부 또는 승려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신학대학·불교대학이나 그 밖에 성직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중 지원한 사람을 군중사관후보생으로 편입시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 사 례

#### 병역법

제58조(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은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그 편입 대상 및 제한연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용례

- 군중사관후보생 지원서, 군중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 유래

- 병역법(법률 제3696호, 1984.3.1.) 제50조 제2항부터 제3항에서 사용

## ■ 귀가(歸家)

징집 또는 소집 입영대상자에 대한 입영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할 경우 입영 전 신분으로 복귀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 사 례

#### 병역법

제17조(현역병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 ② 입영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명시하여 귀가시켜야 한다.

#### 사용례

- 귀가대상자, 귀가증, 귀가자 명부 등

※ 유래

- 병역법(법률 제41호, 1949.8.6.) 제47조 : “귀향”으로 사용  
 - 병역법(법률 제5758호, 1999.2.5.) 제17조 : “귀향”을 “귀가”로 용어변경  
 - 병역법(법률 제6972호, 2003.9.3.) : 현행 귀가제도 시행

## ■ 기본병과 장교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행정·외무·기술·국회·법원 분야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지원에 의하여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에 편입하는 제도를 말한다.

### 사 례

#### 병역법

제59조(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등의 기본병과 장교 병적 편입) 제5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5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법무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법무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원할 경우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 사용례

-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대상자

※ 유래

- 병역법(법률 제3696호, 1984.3.1.) 제50조 제4항에서 사용

## ■ 레지던트(Resident)

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가정의학과외의 경우에는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일정기간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전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 사 례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공의(專攻醫)”란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서 전문의(專門醫)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

#### 치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과의사전공의”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

#### 사용례

- “레지던트”란 인턴과정

- ※ 수련병원 :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
- ※ 수련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의과대학과 그 밖의 보건관계기관

## ■ 법무사관후보생(法務士官候補生)

법무장교의 병적편입에 필요한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하여 해당 연수 기관이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중 지원한 사람을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시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 사 례

#### 병역법

제58조(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은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그 편입 대상 및 제한연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용례

-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 ※ 유래
  - 사법연수원생 : 병역법(법률 제3696호, 1984.3.1.) 제50조 제2항부터 제3항에서 사용
  - 법학전문대학원생 : 병역법(법률9754호, 2009.6.9.) 제50조 제2항에서 사용

## ■ 병무사범(兵務事犯)

신상이동 통보 불이행·징병검사 및 입영 기피·통지서수령거부 및 전달의무태만·도망 또는 신체손상·공익근무요원의 대리복무 및 복무이탈·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 등 병역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 및 법인 등을 통칭하여 표현한다.

### 사 례

#### 병역법

제81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 ① 병무청장은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병역의무자의 병역 이행사항 확인·점검 및 병역법령 위반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 ④ 병무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를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병무사범”이라 함은 법 제84조 내지 제96 및 기타 병역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람(고용주를 포함한다) 및 법인 등을 말한다.

### 사용례

- 병무사범 조사반, 병무사범 실태조사 등

### ※ 유래

- 병무사범에 대한 벌칙 신설 : 법률 제41호(1949.8.6.)
- 현행 병무사범 : 법률 제9754호(2009.6.9.)

## ■ 본인선택제도

이전에 병무청에서 의무부과순서에 따라 병역이행시기를 결정하던 것을 병역의무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병역이행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2001년 이후부터 도입되었다.

### 사 례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훈령제886호, 2009.8.12.)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본인선택”이란 입영일자를 본인이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 징병검사 규정(훈령제885호, 2009.8.12.)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본인선택”이란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의 바람에 의해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 사용례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징병검사 일자/장소 본인선택,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등

### ※ 연혁

- 지방병무청 방문자 현역병 입영희망월 선택제도 시행(인터넷, 2001년)
- 인터넷에 의한 현역병 입영일자/훈련부대 본인선택제로 전환(2002년)
- 현역병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 확대 시행(2005년)
-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제 시행(2005년)
- 징병검사 본인선택 실시(2006년)
- 현역병 입영일자 선택 후 입영부대 전산분류 본인선택 시행(2010년)

## ■ 상근예비역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 관련분야에서 일정기간 복무할 경우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한다.

### 사 례

####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1조(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 및 선발)

① 상근예비역 소집은 징집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입영하여 1년의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 복무기간을 마치고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사용례

- 상근예비역 총원계획서, 상근예비역 입영계획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 상근예비역 소집

※ 유 래

- 방위소집제도 폐지에 따른 부족한 향토방위인력과 상비군 감축대비 대체전력 확보 및 예비 전력 강화를 위하여 1993.12.31. 신설된 제도
- 상근예비역 제도 신설(1994.1.1.)시 병역법 전부개정(법률 제4685호, 1993.12.31.) 제2조, 제21조부터 제23조에서 사용

#### ○제도 변천과정

시행시기	주 요 내 용
최초시행 (199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발방법 : 지원제 원칙, 부족 시 징집에 의해 선발</li> <li>○ 복무형태 : 현역 1년 복무 후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1년 4개월 간 집에서 출·퇴근 근무</li> <li>○ 복무부서 : 향토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li> </ul>
1996.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원이상 학력자 및 유학귀국자 선발 제외</li> </ul>

1996.12.19	○ 복무기간 : 28개월 ⇒ 26개월 ※ 적용시기 : 1997년 1월 이후(1996년 이전 입영자 소급 적용)
1997.1.1	○ 유학귀국자 선발대상 포함
1997.5.11	○ 자원제를 폐지하고 전원 징집에 의해 선발
1999.3.3	○ 현역복무기간 : 1년 ⇒ 기본군사훈련(6주) 종료 시기까지 ※ 상근예비역 현역복무 변경근거 -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관과 소집해제 등에 관한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병역법 제23조 제8항) -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한 사람이 현역병으로 복무할 기간은 입영일 부터 기본군사훈련 종료일까지로 명시(병역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2001.1.1	○ 대학원이상 학력자 선발대상 포함
2003.9.3	○ 복무기간 : 26개월 ⇒ 24개월 ※ 적용시기 : 2003년 10월 이후 입영자
2008.1.1	○ 자녀가 있는 기혼자 지원 선발 - 의·치의·한의·수의과대학 졸업(졸업예정 포함)한 사람과 박사 학위과정 입학이상 학력자 제외 - 군소요 제기지역 거주자는 선발인원,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우선 선발

### ■ 수의사관후보생(獸醫士官候補生)

수의장교 병적편입에 필요한 수의사 자격을 얻기 위하여 수의과대학에 다니고 있는 사람 중 후보생에 지원한 사람을 수의사관후보생으로 편입시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 사 례

##### 병역법

제58조(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은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그 편입 대상 및 제한연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용례

- 수의사관후보생 지원서, 수의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 유래

- 병역법(법률 제7897호, 2006.9.25.) 제50조 제2항부터 제3항에서 사용

### ■ 의무사관후보생(醫務士官候補生)

의무장교 병적편입에 필요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시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 사 례

##### 병역법

제58조(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은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그 편입 대상 및 제한연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용례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의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 유래

- 병역법(법률 제3696호, 1984.3.1.) 제50조 제2항부터 제3항에서 사용

### ■ 의무소방원(義務消防員)

국방부장관이 소방방재청장의 요청에 따라 화재의 경계·진압과 재난·재해발생시 구조·구급활동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 중에서 추천(지원)에 의하여 선발되며, 선발자는 현역복무와 형태를 달리하는 군인으로서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여 복무하게 된다.

#### 사 례

##### 의무소방대설치법

제1조(설치 및 임무) 화재의 경계·진압과 재난·재해발생시 구조·구급활동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의 장 소속하에 의무소방대를 둔다.

##### 사용례

-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

※ 유래

- 의무소방대 설치법(법률 제6505호, 2001.8.14) 제정 사용

## ■ 인도·인접(引導·引接)

징집이나 소집에 의하여 입영할 사람을 지방병무청장이 파견한 인도관과 입영부대의 장이 파견한 인수관이 상호 인계인수하는 과정을 말한다.

사 례

### 병역법 시행령

제22조(현역병입영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① 병무청장이나 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인도·인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입영부대에 입영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사용례

- 인도·인접서, 인도·인접지, 인도·인접시간 및 절차

※ 유래

- 병역법 시행령(법률 제1164호, 1963. 1. 28.) 제147조(인도, 인접의 절차)에서 사용

## ■ 인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 가정의학과는 인턴과정이 없음)

사 례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공의(專攻醫)"란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서 전문의(專門醫)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

### 치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과의사전공의"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

### 사용례

- 레지던트란 인턴과정

## ■ 입영

입영의 사전적 의미는 군대에 들어가는 것이며, 병무행정 용어로는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 사 례

#### 병역법

제2조(정의 등)

-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 사용례

- 현역병입영, 현역병 입영대상자, 현역병 입영일자,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계획서, 전시 현역병입영 등

## ■ 입영기일연기

질병·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입영일자에 입영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기간 입영을 연기하고, 입영기일연기 사유가 해소된 이후 입영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 사 례

#### 병역법

제61조(입영기일 등의 연기)

- ① 징병검사·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심신장애·재난 등의 사유로 의무이행기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의무이행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입영기일 등의 연기)

- ① 병역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이행이 어려운 사람

제129조의2(전문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자의 병역의무이행기일 연기)

- ① 병역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에 취업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병역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 유래

- 병역법(법률 제41호, 1949.8.6.) 제38조 : 31일 이내에서 연기
-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5548호, 1971.3.10.) 제55조 : 연기기간을 60일 이내로 연장 (추가하여 30일 연장 가능)
-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511호, 1984.9.22.) 제97조 : 입영기일 연기기간을 통산 1년의 범위 내로 연장
-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397호, 1994.10.16.) 제129조 : 입영기일 연기기간을 통산 2년의 범위 내로 연장

## ■ 입영사무소

지방병무청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이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인도·인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입영부대 또는 그 외의 장소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사 례

### 병역법

제22조(현역병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 ① 병무청장이나 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인도·인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입영부대에 입영사무소를 설치한다. 다만,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집결지가 입영부대가 아닌 지역인 경우에는 해당지방병무청장이 입영사무소를 설치한다.

### 사용례

- 입영부대에 입영사무소를 설치, 해당지방병무청장이 입영사무소를 설치

## ■ 입영신체검사

입영부대의 의료시설에서 징집 또는 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말한다.

사 례

### 병역법

제17조(현역병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 ① 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입영하면 입영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 병역법 시행령

제25조(현역병입영신체검사 등)

- ① 법 제17조에 따른 입영신체검사는 입영부대의 의료시설에서 실시한다.

### 사용례

- 입영신체검사기간, 입영신체검사 결과통보, 입영신체검사일 등

## ■ 재학생입영연기

징병검사를 받고 합격한 사람 중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재학생들에게 각 급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하여 군복무로 인한 학업중단 방지, 고급인력 양성 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 사 례

#### 병역법

제60조(징병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②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과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학교별 제한연령 등)

① 법 제60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연령까지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1. 고등학교는 28세
2. 전문대학 및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의 2년제 과정은 22세, 3년제 과정은 23세, 학위심화과정은 25세
3. 대학의 4년제 과정은 24세, 5년제 과정은 25세, 6년제 과정은 26세(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수의과대학은 27세)

#### 사용례

- 재학생입영연기자 명부

#### ※ 유래

- 병역법(법률 제41호, 1949.8.6.) 제40조 : 재학생 징병검사연기제도 신설
- 병역법(법률 제3696호, 1983.12.31.) 제52조 : 재학생 징병검사 및 입영연기제도 시행
- 병역법(법률 제4317호, 1991.2.1.) 제52조 : 재학생 징병검사 연기제도 폐지, 입영연기제도로 단일화

## ■ 재학생 입영연기 보류신청제도

징병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이 다음 해 대학(원)에 진학하였을 경우

학적보유자 명부(학교의 장이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 지방병무청에 송부함)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재학생 입영연기 처리하고 있으나, 재학생 입영연기 처리 전에 이미 결정된 입영일자에 입영을 원할 때에는 그 해의 3월 31일까지 “재학생입영연기보류신청”을 하여 입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사 례**

**입영연기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제911호)**

제8조(재학생입영신청서 제출)

- ① 입영연기된 사람이 재학 중(휴학한 사람 포함) 입영을 원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규칙 별지 제103호 서식의 재학생입영(취소·희망시기변경)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를 직접 선택한 사람 또는 재학생입영연기보류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병무청 훈령 제886호)**

제48조(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선발취소의 요건)

- ① 법 제21조 제5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선발취소(제외)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방병무청장의 직권에 의한 취소
    - 가. 재학생입영연기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입영하는 해에 각 급 학교에 입학(편입학)한 사람 중 이미 결정된 입영일자에 입영하기를 위하여 그 해의 3월 31일까지 재학입영연기보류신청 또는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및 취소에 대한 사전안내 시 상근예비역으로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취소하지 아니하고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로 입영)

**사용례**

- 재학생입영연기보류신청 또는 재학생입영신청서

**■ 재학생입영원서**

재학생입영연기 중인 사람이 재학 중 입영을 원할 경우 미리 입영신청서를 제출하여 장기간의 입영대기로 인한 학업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 례**

**병역법 시행령**

제126조(재학생 입영등 원서의 처리)

- ①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입영 등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입영 등의 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유래

-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511호, 1984.9.22.) 제93조 : 재학생 입영연기제도 시행 후 재학생 입영원서 명시

### ■ 전문의(專門醫)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사 례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자격 인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시험실시 결과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문의 자격 인정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사용례

- 전문의 자격 인정

### ■ 전투경찰순경

국방부장관이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간첩의 침투거부·포착·섬멸 기타의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 중에서 배정(직권) 또는 추천(지원)에 의하여 선발하며, 선발된 사람은 현역복무와 형태를 달리하는 군인으로서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여 복무하게 된다. 그 종류로는 작전전투경찰순경(작전전경), 의무전투경찰순경(의무경찰)과 해양전투경찰순경(해경전경)이 있다.

사 례

####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4. “작전전투경찰순경”이라 함은 법제 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전투경찰순경을 말한다.
5. “의무전투경찰순경”이라 함은 법제 2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전투경찰순경을 말한다.

**사용례**

- 임용된 전투경찰순경

※ 유래

- 전투경찰대 설치법(법률 제2248호, 1970.12.31.)

**■ 전환복무**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 중에서 배정(직권) 또는 추천(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와 형태를 달리하는 교정시설경비 교도, 전투경찰대원,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종사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여 복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 례****병역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전환복무”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교정시설경비교도, 전투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종사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24조(배정에 의한 전환복무)

① 법무부장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환복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원 배정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 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 시킬 수 있다.

**사용례**

-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 연혁

○ 전투경찰순경

- 1970.12.31. 전투경찰대설치법 제정 공포 : 대간첩작전 수행 ⇒ 전투경찰

- 1971.3.30.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정 공포

- 1971.9.19. 전투경찰순경으로 전환복무

○ 의무경찰순경

- 1982.12.31. 전투경찰대설치법 개정 : 치안업무보조 ⇒ 의무경찰

- ※ 전투경찰(국방부 배정)과 의무경찰(경찰청 모집, 추천) 이원화
  - 1983. 1. ~ 3. 전·의경제도 신설에 따른 최초 입영 및 전환복무
    - 작전전경 : 1983.1.20. 입영 ⇒ 1983.3.5. 전환복무
    - 의무경찰 : 1983.2.4. 입영 ⇒ 1983.3.17. 전환복무
- 해양경찰
  - 1970.12.31. 전투경찰대설치법 제정 공포
  - 1971.6.21. 해양경찰로 전환복무
- 경비교도
  - 1981.4.13.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설치법 제정 공포
  - 1981.4.17. 교정시설 경비교도로 전환복무
- 의무소방원
  - 2001.3.12. 의무소방원 도입 결정
  - ※ 2001.3. 서울 홍제동 주택가 화재 및 부산 연산동 빌딩 화재 진압 시 소방관 7명 순직에 따른 인력충원
  - 2001.8.14. 의무소방대 설치법 제정 공포
  - 2001.8.14. 병역법 개정(2001.8.19 의무소방원 소요 확정)
  - 2002.3.29.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 ■ 지연입영

천재지변, 교통 두절, 통지서 송달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기일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이 입영기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는 제도이다.

### 사 례

#### 병역법 시행령

제24조(지연입영 신고 등)

- ①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천재지변, 교통 두절, 통지서 송달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기일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은 입영기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할 수 있다.

#### 사용례

- 지연입영 신고

#### ※ 연혁

-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511호, 1984.9.22.) 제24조
  - 개별입영대상자에 5일 이내 지연입영자 포함
-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891호, 2005.6.30.) 제24조
  - 지연입영기일 단축 : 5일 ⇒ 3일

## ■ 질병 또는 심신장애 치유(학력변동) 입영희망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병역처분 변경원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사 례

###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변경 등)

- ⑦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 ■ 징병검사를 받은 해 입영희망

징병검사 결과 현역입영대상자 중 징병검사를 받은 해에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이 병무청 홈페이지 등에서 입영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 례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병무청 훈령 제886호)

제12조(징병검사를 받은 해 입영희망자 처리)

- ① 법 제16조 및 영 제20조에 따라 징병검사를 받은 해에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징병검사 받은 해 입영희망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징집

국가가 현역입영대상자에게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사 례

### 병역법

제2조(정의 등)

-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징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 사용례

- 징집병, 징집자원판단, 징집기피, 징집면제, 등

※ 유래

- 사전적 의미로 국가가 법령으로 병역의무자를 강제적으로 징집하여 일정기간 병역에 복무시키는 ‘징병’에서 사용

## ■ 징집순서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처분된 사람에 대하여 신체등위·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시·군·구별로 현역병 입영순서를 정한 것을 말한다.

사 례

### 병역법

제15조(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

- ①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처분된 사람에 대하여 시·군·구별로 징집순서를 정한다.

### 병역법 시행규칙

제17조(현역병입영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현역병 징집순서를 정하면 별지 제17호 서식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사용례

-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

## ■ 학군무관후보생(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대학교 재학생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하여 2년 동안의 군사훈련을 거쳐 졸업과 동시에 장교로 임관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 례

### 병역법

제57조(학생군사교육 등)

- ②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무관후보생”이라 한다)과정을 둘 수 있으며 그 과정을 마친 사람은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 사용례(사용예시 등 수록)

- 학군무관후보생 선발, 학군무관후보생 제적 등

※ 유래

- 학군무관후보생 시초 : 미국에서 맨 먼저 시작되었으며, 미 육군이 1916년에 제정된 국방법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
- 우리나라 도입 시기 : 1961년 학도군사훈련단이 창설되고 1971년 학생군사교육단으로 명칭 변경
- 관련법률 : 학생군사교육실시령(대통령령 제20740호, 2008.2.29.)

## ■ 현역병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사를 말한다.

사 례

### 병역법

제16조(현역병입영)

-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징병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입영하게 하되, 입영시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군(軍)별·적성(適性)별로 입영할 사람 간에 자질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용례

- 현역병입영, 현역병 입영대상자, 현역병 입영일자,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계획서, 전시 현역병 입영 등

## ■ RNTC(교대출신 예비역 하사관 병역특례)

교육대학에서 학군하사관 후보생 과정 이수 후 교육법에 의한 의무종사기간(4년)과 추가기간(3년) 복무 시 현역복무와 동등하게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사 례

### 구병역법

제51조(의무예비역장교 등의 복무)

- ① 제49조 제2항, 제5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의 병적에 편입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분야에 종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때에는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3. 교육대학을 졸업한 예비역하사관은 교육법에 의한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후 초등학교교원으로 3년간

### 사용례

- 하사관의 병적에 편입된 자

※ 유래

- 병역법(법률 제3696호, 1983.12.31.) 제51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용  
 ☞ 병역법(법률 제4156호, 1989.12.31.) 개정으로 폐지

• 병무행정 용어 해설집 •

## Ⅲ. 현역병 모집





## ■ 개별모집특기병(개별모집병)

특수한 자격·면허, 전공 또는 경력을 필요로 하거나 선발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별도의 지원 자격 및 선발기준을 정하여 모집하는 육·해·공군 현역병에 지원한 사람을 말한다.

### ☞ 군별 개별모집특기병 모집분야

- 육 군 : 카투사, 어학병 등
- 해 군 : 군악, 연예, 특전(UDT/SEAL), 심해잠수(SSU) 계열
- 해병대 : 군악 계열
- 공 군 : 어학, 의장, 군악 직종

### 사 례

#### 육군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개별모집특기병”이란 특수한 자격·면허, 전공 또는 경력을 필요로 하거나 선발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군사특기별로 별도의 지원 자격이나 선발기준을 정하여 모집하는 군사특기 중 어느 하나에 군 복무하기 위하여 현역병으로 지원한 사람을 말한다.

#### 사용례

- 육·해·공군 개별모집특기병 지원서 접수 및 선발

#### ※ 연혁

- 육군 현역병 모집업무 예규 전부개정(병무청 예규 3-14호, 2008.1.17.) 시 제2조(정의) 제1항 제6호 사용 : “개별모집특기병”이란
- 육군 현역병 모집업무 예규 폐지(2009.8.11.)
- 육군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정(병무청 훈령 제887호, 2009.8.12.) 시 제2조(정의) 제1항 제6호 사용 : “개별모집특기병”이란
- 해군 현역병 모집업무 예규 제정(병무청 예규 3-18호, 2008.6.30.) 시 제3조(정의) 제1항 제4호 사용 : “개별모집병”이란
- 해군 현역병 모집업무 예규 폐지(2009.8.11.)
- 해군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정(병무청 훈령 제888호, 2009.8.12.) 시 제3조(정의) 제1항 제4호 사용 : “개별모집병”이란
- 공군 현역병 모집업무 예규 제정(병무청 예규 3-19호, 2008.6.30.) 시 제3조(정의) 제1항 제5호 사용 : “개별모집병”이란
- 공군 현역병 모집업무 예규 폐지(2009. 8. 11.)
- 공군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정(병무청 훈령 제889호, 2009.8.12.) 시 제3조(정의) 제1항 제5호 사용 : “개별모집병”이란

## ■ 계열

해군과 해병대의 직무분야를 세분화하여 분류하는 단위로 육군의 '직군'이나 공군의 '직종'과 유사한 개념이다.

- 해군의 계열 : 일반, 전산, 이발, 조리, 항공, 전자, 특전, 심해잠수, 통신, 군악, 연예, 기관, 화학, 전기, 건축/토목, 수송, 의무
- 해병대의 계열 : 일반, 수색, 화학, 중장비, 건축/토목, 기관/기계, 통신/전자, 조리, 수송, 군악

### 사 례

#### 해군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병무청 훈령 제908호)

제8조(지원서 접수·취소)

- ② 현역병지원서는 계열별로 접수하되 지원하는 사람은 희망순위에 따라 2개 이상의 계열을 선택할 수 있다.

#### 사용례

- 군악 계열, 심해잠수 계열, 모집계열별 지원자격

#### ※ 연혁

- 해군 현역병 모집업무 예규 제정(병무청 예규 3-18호, 2008.6.30.)
- 해군 현역병 모집업무 예규 폐지(2009.8.11.)
- 해군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정(병무청훈령 제888호, 2009.8.12.)

## ■ 군사특기

현역병의 직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군사업무와 관련된 직무분야를 독립된 부호로 분류한 것으로 각 군 참모총장이 부여한 특기를 말한다.

### 사 례

#### 병역법 시행령

제15조(병종부여)

- ② 제1항에 따른 병종은 직군(職群) 및 군사특기로 세분할 수 있으며, 직군 및 군사특기는 각 군 참모총장이 부여한다.

#### 사용례

- 군사특기별 세부 지원 자격



사 례

**육군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4. “동반입대병”이란 친구 또는 친척 등과 함께 입영하여 동일 내무반 생활권 단위부대 내에서 군 복무하기 위하여 현역병(육군)으로 지원한 사람을 말한다.

**사용례**

- 육군 동반입대병 지원서 접수 및 선발 등

※ 유래

- 육군 현역병 모집업무 예규 전부개정(병무청 예규 3-14호, 2008.1.17.)시 제2조(정의) 제1항 제4호에서 사용 : “동반입대병”이란
- 육군 현역병 모집업무 예규 폐지(2009.8.11.)
- 육군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정(병무청훈령 제887호, 2009.8.12.)시 제2조(정의) 제1항 제4호에서 사용 : “동반입대병”이란

**■ 유급지원병(전문병)**

제1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이 현역병으로 육·해·공군에 지원하여 의무 복무기간 외에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복무를 약정하고 연장복무기간 중에는 소정의 급여를 받으며 첨단장비 등 전문분야에 군 복무하는 것이다.

【유급지원병 선발유형별 비교】

구분	유형 I (숙련병)	유형 II (전문병)
선발	각 군 참모총장	병무청장
접수	각 군 / 수 시	병무청 / 매월
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 만료 후 6~18개월	입영 시부터 36개월
복무분야	전투 / 기술 숙련직위 (분대장, 레이다, 정비병 등)	첨단장비 전문직위 (차기전차, 유도탄 등)

사 례

**병역법**

제20조의2(유급지원병제의 운영)

- ①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우수한 숙련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유래

- 해군 현역병 모집업무 예규 제정(병무청 예규 3-18호, 2008.6.30.)시 제3조(정의) 제1항 제5호에서 사용 : “일반병·기술병”이란
- 해군 현역병 모집업무 예규 폐지(2009.8.11.)
- 해군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정(병무청 훈령 제888호, 2009.8.12.)시 제3조(정의) 제1항 제5호에서 사용 : “일반병·기술병”이란
- 공군현역병모집업무예규 제정(병무청 예규 3-19호, 2008.6.30.)시 제3조(정의) 제1항 제6호에서 사용 : “일반병·기술병”이란
- 공군 현역병 모집업무 예규 폐지(2009.8.11.)
- 공군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정(병무청훈령 제889호, 2009.8.12.)시 제3조(정의) 제1항 제6호에서 사용 : “일반병·기술병”이란

## ■ 전문화관리병

공군 현역병 모집 중 특기분야별로 필요로 하는 자격증, 실무경험 또는 학력을 갖추어 해당직위의 현역병으로 지원한 사람을 말한다.

사 례

### 공군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병무청 훈령 제909호)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전문화관리병”이란 특기분야별로 필요로 하는 자격증, 실무경험 또는 학력을 갖추어 해당 직위의 현역병으로 지원한 사람을 말한다.

사용례

- 전문화관리병 선발배점기준

※ 유래

- 공군 현역병 모집업무 예규 제정(병무청 예규 3-19호, 2008.6.30.)시 제3조(정의) 제1항 제4호에서 사용 : “전문화관리병”이란
- 공군 현역병 모집업무 예규 폐지(2009.8.11.)
- 공군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정(병무청훈령 제889호, 2009.8.12.)시 제3조(정의) 제1항 제4호에서 사용 : “전문화관리병”이란

## ■ 직계가족복무부대지원병(직계가족병)

조부모·부모, 형제자매 또는 외조부모가 군 복무를 마친 부대(군 복무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군 복무하기 위하여 현역병(육군)으로 지원한 사람을 말한다.

☞ 1·3군 예하 부대에서 근무

사 례

**육군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2조(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5. “직계가족병”이란 조부모·부모, 형제자매 또는 외조부모가 군 복무를 마친 부대(군 복무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군 복무하기 위하여 현역병으로 지원한 사람을 말한다.

**사용례**

- 육군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의 지원 및 선발 등

※ 유래

- 육군 현역병 모집업무 예규 전부개정(병무청 예규 3-14호, 2008.1.17.)시 제2조(정의) 제1항 제5호에서 사용 : “직계가족병”이란
- 육군 현역병 모집업무 예규 폐지(2009.8.11.)
- 육군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정(병무청훈령 제887호, 2009.8.12.)시 제2조(정의) 제1항 제5호에서 사용 : “직계가족병”이란

■ 직종

공군의 직무분야를 세분화하여 분류하는 단위로 육군의 ‘직군’, 해군의 ‘계열’ 과 유사한 개념이다.

- ☞ 일반, 전산, 화학, 의무, 기계, 차량운전, 차량정비, 통신전자전기, 시설, 의장, 군악

사 례

**공군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병무청 훈령 제909호)**

제8조(지원서 접수·취소)

- ② 현역병지원서는 직종별로 접수하되 지원하는 사람은 희망순위에 따라 2개 이상의 직종을 선택할 수 있다.

**사용례**

- 화학 직종, 의장 직종, 모집직종별 지원자격

※ 유래

- 공군 현역병 모집업무 예규 제정(병무청 예규 3-19호, 2008.6.30.)시
- 공군 현역병 모집업무 예규 폐지(2009.8.11.)
- 공군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정(병무청훈령 제889호, 2009.8.12.)시



• 병무행정 용어 해설집 •

## IV. 공익근무요원





## ■ 겸직 허가

공익근무요원은 복무 중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복무기관장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 사 례

#### 병역법

제33조(공익근무요원의 연장복무 및 소집취소 등)

- ①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이하 생략)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8조(겸직 허가)

- ① 공익근무요원이 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공익근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생 략)

※ 유래

- 병역법 개정(법률 제7541호, 2005.5.31.)시 제33조 제1항 제4호 신설
- 복무관리규정 개정(병무청훈령 제673호, 2006.11.22.)시 제23조의2(공익근무요원의 겸직 허가) 신설
- 복무관리규정 개정(병무청훈령 제820호, 2008.12.26.)시 제23조의2 제2항 각 호 신설
- 복무관리규정 개정(병무청훈령 제913호, 2009.12.30.)시 제28조로 이동

## ■ 경고처분

공익근무요원이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하였을 경우 등 복무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 복무기관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해당 공익근무요원에게 가하는 행정 처분을 말한다.

**사 례**

**병역법**

제33조(공익근무요원의 연장복무 및 소집취소 등)

①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3. 다른 공익근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89조의3(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 공익근무요원이 제3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유래

- 병역법 개정(법률 제4685호, 1993.12.31.)시 제33조(공익근무요원의 소집취소 및 의무부과) 신설

제33조(공익근무요원의 소집취소 및 의무부과)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7일 이내의 기간 복무를 이탈한 때에는 그 이탈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을 취소하고 제7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한다.

4.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 병역법 개정(법률 제5757호, 1999.2.5.)시 제33조 개정

☞ 근무명령위반 시 경고처분(1회당 5일 연장복무), 4회 이상 경고처분 시 고발

- 병역법 개정(법률 제7541호, 2005.5.31.)시 제89조의3 신설

☞ 병역법 제33조 제1항 1호부터 4호까지 사유로 4회 이상 경고처분 시에만 고발

## ■ 공공단체

공익목적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범위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의료원, 어업정보통신국, 사립학교,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기관 중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다.

### 사 례

#### 병역법

제26조(공익근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대상)

① 공익근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 병역법시행령

제47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공공단체 범위 명시

#### 사용례

- 공공단체의 범위(병역법시행령 제47조), 공공단체의 장
- 공공단체의 의료기관의 장(병역법시행령 제153조)

## ■ 공익근무요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예술·체육의 육성 또는 국제협력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익근무요원에는 행정관서요원, 예술·체육요원, 국제협력봉사 요원이 있다.

### 사 례

####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10. “공익근무요원”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예술·체육의

육성 또는 국제협력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사용례

- 공익근무요원의 편입, 공익근무요원의 업무,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 결정, 공익근무요원 소집,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

### ※ 유래

- 병역법(제4685호, 1993.12.31. 전부개정)에 따라 1994.12.31.부로 기존의 보충역 방위소집 제도가 폐지되고 1995.1.1.부터 보충역 자원이 국가기관 등 공익목적에 수행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분야에서 복무하게 됨에 따라 이 분야에서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을 “공익근무요원”이라고 정의하였다.

## ■ 공익근무요원교육센터

공익근무요원에게 소양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운영기관의 장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교육시설을 말한다.

### 사 례

#### 행정관서요원의 소양교육 등 운영 규정

제7조(공익근무요원교육센터 설치, 관할지역 및 운영)

- ① 제3조 제1호에 따른 행정관서요원의 교육운영을 위하여 공익근무요원교육센터를 두며, 그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지방병무청장이 관할하는 공익근무요원교육센터는 “서울공익근무요원교육센터”라 한다.
  2. 부산지방병무청장이 관할하는 공익근무요원교육센터는 “부산공익근무요원교육센터”라 한다.
  3.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이 관할하는 공익근무요원교육센터는 “대구공익근무요원교육센터”라 한다.
  4.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이 관할하는 공익근무요원교육센터는 “경인공익근무요원교육센터”라 한다.
  5.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이 관할하는 공익근무요원교육센터는 “광주공익근무요원교육센터”라 한다.
  6.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이 관할하는 공익근무요원교육센터는 “대전공익근무요원교육센터”라 한다.

## 사용례

- 서울공익근무요원교육센터, 부산공익근무요원교육센터

※ 유래

- 『행정관서요원의소양·직무교육 등 운영규정』제정(훈령 제743호, 2008.1.10.)시 제7조(사회복무교육센터 설치 및 관할지역 운영) 최초 신설.
- 『행정관서요원의 소양교육 등 운영규정』개정(훈령 제910호, 2009.12.17.)시 제7조(공익근무요원교육센터 설치, 관할 지역 및 운영) 명칭 변경.

## ■ 공익근무요원 복무지도관

복무기관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이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지방병무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 사 례

#### 병역법

제31조의2(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감독 등)

②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제43조(공익근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지방병무청이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복지시설 및 지정업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병역법시행령

제63조(행정관서요원의 복무관리·감독 범위) 병무청장은 법 제31조의2 제2항에 따라 행정관서요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조(정의)

15. “공익근무요원 복무지도관”이란 영 제63조에 따라 행정관서요원의 복무실태를 관리·감독하거나 복무기관의 복무관리실태를 조사하는 사람(이하 “복무지도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유래

- 병역법 개정(법률 제4685호, 1993.12.31.)시 제43조(공익근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근거명시
- 병역법 개정(법률 제7897호, 2006.3.24.)시 제31조의2(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감독 등) 근거명시
- 복무관리규정 개정(병무청훈령 제739호, 2007.12.7.)시 용어 최초 정의(사회복무감독관)
- 복무관리규정 개정(병무청훈령 제913호, 2009.12.30.)시 용어 변경(공익근무요원 복무지도관)

## ■ 공익대표자

복무기관 소속 공익근무요원의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복무기관장에게 전달, 근무태만자 선도, 복무기관의 지시사항 전달 등의 임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복무기관장이 임명한 공익근무요원을 말한다.

### 사 례

####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 제11조(대표자 임명)

- ① 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의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익근무요원 대표자(이하 “공익대표자”라 한다)를 임명할 수 있다.
- ② 공익대표자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다만, 필요 시에는 연임할 수 있다.
- ③ 공익대표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근무요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에게 전달
  2. 근무태만자의 선도
  3. 그 밖의 복무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전달 등

##### 제13조(교육)

- ③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익근무요원 담당직원 및 공익대표자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유래

- 복무관리규정 개정(병무청훈령 제628호, 2005.12.29.)시 제3조의2(공익대표자 임명) 신설
- 복무관리규정 개정(병무청훈령 제913호, 2009.12.30.)시 제11조(대표자 임명)로 이동

## ■ 공익법무관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전문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법률구조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 등에게 법률구조를 제공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송관련 사무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 사 례

#### 병역법

##### 제2조(정의 등)

-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략)

13. “공익법무관”이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 업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용례**

- 공익법무관의 편입 및 복무, 공익법무관의 명단통보, 공익법무관의 배치기관, 공익법무관의 배치시설, 공익법무관의 신분상실 및 박탈

※ 유래

- 병역법(법률 제4840호, 1994.12.31.) 제34조의2(공익법무관의 편입)에서 용어 사용

**■ 공익수의사**

공익수의사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의하여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 례**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4. (생략)

15. “공익수의사”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용례**

- 공익수의사의 편입 및 복무, 공익수의사의 명단통보, 공익수의사의 배치기관, 공익수의사의 배치시설, 공익수의사의 신분상실 및 박탈

※유래

- 병역법(법률 제7897호, 2006.3.24.) 제34조의7(공익수의사의 편입)에서 용어 사용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9955호, 2010.1.25.)의 개정에 따라 “공익수의사”를 “공중방역수의사”로 명칭 변경(2010. 7.26. 시행)

**■ 공중보건수의사**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공중보건수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는 사람을 말한다.

## 사 례

###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략)

11. “공중보건기사”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기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사용례

- 공중보건기사의 편입 및 복무, 공중보건기사의 명단통보, 공중보건기사의 배치기관, 공중 보건기사의 배치시설, 공중보건기사의 신분상실 및 박탈

※ 유래

- 병역법(법률 제3111호, 1978.12.5.) 제30조(군법무관·의무관 등의 자격을 가진 자의 현역 또는 예비역 장교 편입) :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자는 예비역장교로 편입되어 공중보건기사로 편입되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 신설(1979년부터 시행)
- 병역의무특례규제에관한법률(법률 제4157호, 1989.12.30.) 제8조 : 공중보건기사를 특례보충역에 편입
- 병역법(법률 제4658호, 1993.12.31.전면개정) 제34조(공중보건기사 등의 편입) : 공중보건기사 자격 요건에 한의사 추가

## ■ 교육소집

보충역, 승선근무예비역, 예비역, 제2국민역에 대하여 부대에 입영하여 군사교육을 받도록 소집하는 것을 말한다.

## 사 례

### 병역법

제29조(공익근무요원의 소집)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교육소집을 하며, 그 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제55조(교육소집 대상 등)

- ① 교육소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보충역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60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기·소집기간·소집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국민역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이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사용례**

- 교육소집 기간, 교육소집 대상, 교육소집 통지서, 교육소집 입영부대, 교육소집 결과

※ 유래

- 병역법(법률 제41호, 1949.8.6. 제정) 제53조 제2호에 “보충병으로서 교육소집 중인 자 또는 그 소집을 필한 자”라는 규정에서 최초로 교육소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제62조에 “제1보충병은 교육의 목적으로 120일 이내로 소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교육을 위한 소집을 말하였으며,
- 병역법(법률 제1163호, 1962.10.1. 전부개정)에는 소집의 종류로 교육소집을 구분하여 교육을 위한 소집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병역법(법률 제2259호, 1970.12.31. 전부개정) 제56조에는 교육소집은 “교육을 위하여 보충역의 병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50일 내로 소집한다”라고 정의하였으며,
- 병역법(법률 제3696호, 1983.12.31. 전부개정) 제37조에는 교육소집은 특례보충역 및 방위소집이 면제된 보충역에 대하여 지방병무청장이 군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회에 30일 내로 실시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사용되어 왔음.

**■ 교육소집 제외 보충역**

보충역 대부분은 교육소집을 실시하지만 신체등위, 학력, 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않는 보충역을 말한다. 대상은 1991년 이후 출생자로서 정신과 질환사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및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과 3급이 포함된 사람이 해당되며, 공익근무요원 복무만료 후에는 전시근로소집대상이 된다.

**사 례**

**병역법**

제55조(교육소집 대상 등) 제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충역에 대하여 신체등위·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53조(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제1항 제3호

3. 제55조 제3항에 따라 교육소집에서 제외된 사람

**사용례**

- 교육소집 제외 보충역 소집, 교육소집 제외 보충역 소집 결과 통보

※ 유래

- 병역법(법률 제9754호, 2009.6.9. 일부개정)에 제55조(교육소집 대상 등) 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보충역의 신체등위·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보충역을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제55조 제3항에 따라 교육소집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 병무청 훈령(제912호) 제21조에 교육소집 제외 대상 등을 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 교육운영기관의 장**

교육을 주관하고 공익근무요원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사 례**

**행정관서요원의 소양교육 등 운영 규정**

제8조(교육기관의 업무범위)

① 교육운영기관의 장은 교육위탁기관의 장으로부터 교육과정별·교육일자별, 교육대상자 명단 등을 받은 때에는 교육등록일부터 수료일까지 교육운영 전반을 총괄 운영한다.

제11조(교육운영세부계획 작성 및 보고)

③ 교육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운영세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위탁기관의 장과 교육과정, 교육일정, 교육대상 및 교육인원 등을 사전 협의하여 교육운영세부계획서에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유래

- 『행정관서요원의 소양·직무교육 등 운영규정』제정(훈령 제743호, 2008.1.10.)시 최초 신설  
- 최초 신설 이후 추가 또는 신설된 조항 없음.

**■ 교육위탁기관의 장**

소양교육 등을 교육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을 말한다.

### 행정관서요원의 소양교육 등 운영 규정

제8조(교육기관의 업무범위)

- ② 교육위탁기관의 장은 교육운영세부계획에 따라 교육과정별·교육횟수별 교육대상자 선발·통지·교육여비지급 등 교육운영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제11조(교육운영세부계획 작성 및 보고)

- ③ 교육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운영세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위탁기관의 장과 교육과정, 교육일정, 교육대상 및 교육인원 등을 사전 협의하여 교육운영세부계획서에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유래

- 『행정관서요원의 소양·직무교육 등 운영규정』제정(훈령 제743호, 2008.1.10.)시 최초 신설
- 최초 신설 이후 추가 또는 신설된 조항 없음.

## ■ 국제협력봉사요원

개발도상국가에 공익근무요원으로 파견되어, 이들 지역의 경제·사회·문화발전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을 도모하며, 외교통상부장관의 복무관리·감독 하에 병역의무를 대체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병역법

제26조(공익근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공익근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 4.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문화 발전 등의 지원업무

### 병역법시행령

제48조(공익근무요원의 배정 요청)

-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이하 “국제협력봉사요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그 다음 해의 필요인원의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사용례

- 국제협력봉사요원의 선발, 국제협력봉사요원 편입, 국제협력봉사요원 소집취소

※ 제도 변천 과정

- 1968 : 민간외교차원에서 해외에 민간 의사 파견
- 1990 : 민간인으로 구성된 해외봉사단 파견
- 1994 : 해외파견 우수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봉사요원 소집제도 신설(1994.12.31 병역법 개정)
- 1995 : 국제협력봉사요원 최초 파견
- 1999.2.5 : 병역법 개정으로 폐지
- 2001 : 의원입법으로 제도 부활

## ■ 국제협력의사

국제협력의사로 편입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교통상 부장관으로부터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국제협력요원으로 개발도상국에 파견되어 국제협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 례

###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략)

12. “국제협력의사”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협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사용례

- 국제협력의사의 편입 및 복무, 국제협력의사의 명단통보, 국제협력의사의 배치기관, 국제협력의사의 배치시설, 국제협력의사의 신분상실 및 박탈

※ 유래

- 병역법(법률 제4658호, 1993.12.31.전면개정) 제34조(공중보건기사 등의 편입)에서 국제협력의사 용어 사용

## ■ 근무지

복무기관의 장이 배정받은 공익근무요원을 실제 배치하여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최소 단위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사 례

### 병역법

제32조(공익근무요원의 신상이동 통보)

-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5항 제4호에 해당되는 공익근무요원의 통보를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분야 및 근무지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고,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용례**

- 근무지 지정, 근무지 이탈

**■ 배정**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의 다음 해 공익근무요원 신청인원에 대하여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복무기관 단위로 할당하는 것을 말한다. 즉, 배정은 복무기관의 수요에 대응하여 복무기관별로 할당된 가용자원이고 행정기관 내부의 관리행위이며 예측적 활동이다.

**사 례**

**병역법**

제27조(공익근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복무할 공익근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으로부터 다음 해에 필요한 인원의 배정을 요청받으면 복무기관·복무분야·복무형태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한다.

**사용례**

- 공익근무요원의 배정인원, 공익근무요원의 배정 요청

**■ 배정제한**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의 다음 해 배정인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배정제한은 명백한 복무관리 부실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언론에 보도된 경우 등의 복무관리 부실기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간접적 제재 수단의 하나다.

**사 례**

**병역법시행령**

제49조(행정관서요원 등의 배정)

② 지방병무청장이 배정인원을 결정함에 있어 해당 연도까지의 복무기관의 행정관서요원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배정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결정된 배정인원이 복무하기 전까지는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용례**

- 배정제한 및 취소 기준, 배정제한 사유(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 배정취소**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의 해당 연도 배정인원 중 소집되지 아니한 배정인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배정취소는 공익근무 복무와 관련 범죄행위 및 금품 수수로 고발되어 처벌받은 경우 등의 복무관리 부실기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간접적 제재 수단의 하나다.

**사 례**

**병역법시행령**

제49조(행정관서요원 등의 배정)

② 지방병무청장이 배정인원을 결정함에 있어 해당 연도까지의 복무기관의 행정관서요원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배정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결정된 배정인원이 복무하기 전까지는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용례**

- 배정제한 및 취소 기준, 배정취소 사유(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 별도소집대상자**

공익근무요원은 일반적으로 지역별로 소집대상자의 신체등위, 학력, 연령 등 자질을 고려, 소집순서를 정하여 소집하게 되는데, 일반 소집대상자 보다 빨리 소집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사 례**

**병역법시행령**

제52조(공익근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소집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따로 공익근무요원소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군무관후보생 또는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해당 병적에서 제적되어 소집할 사람

2. 법 제35조 제3항, 제35조의2 제3항, 제35조의2 제4항 및 제35조의3 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 의사·징병전담 의사·국제협력 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익수익사의 편입이 취소되어 소집할 사람
  3. 공익근무요원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4. 국외에서 귀국한 사람으로서 소집할 사람
  5. 공익근무요원소집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된 사람 및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람
  6.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등의 편입이 취소되어 소집할 사람
  7. 제1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8.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3조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 ④ 제52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의 송부기간 및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사용례

- 공익근무요원 별도소집대상자, 별도소집대상자의 소집순서, 별도소집대상자에 대한 소집 통지서 송달기간 단축

#### ※ 유래

- 병역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397호, 1994.10.6. 전부개정) 제52조(공익근무요원 별도소집대상자)에 공익근무요원 소집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따로 공익근무요원소집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별도소집대상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 병역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511호, 1984.9.22. 전부개정) 제35조(별도방위소집대상자)에 방위소집순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방위소집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서 별도방위소집대상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 ■ 보상심의위원회

복무기관의 장이 복무 중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공익근무요원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신체장애등급 심의를 위하여 각 지방병무청장 소속으로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 사 례

#### 병역법시행령

제153조의5(보상심의위원회)

- ① 장애보상금의 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등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 병무청장 소속으로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구성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병무청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병무청장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장은 신체장애등급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복무기관의 장,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의 장 또는 청구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복무기관의 장,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의 장 또는 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 유래

- 병역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5221호, 1996.12.31.)시 제153조의5(보상심의회위원회) 신설
- 병역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0469호, 2007.12.28.)시 제6항 개정
- ☞ 심의요청기관 추가 : 법 제33조의2의 다른 소양/직무/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

## ■ 보수교육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임무수행 태만 등으로 연장하여 복무하게 된 경우 병무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사 례

### 병역법

제33조의2(소양 및 직무교육 등)

- ③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병무청장이 보수(補修)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병역법 시행규칙

제67조(행정관서요원의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 등)

- ② 법 제33조의2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의 교육기간은 3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교육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 유래

- 『병역법』개정(법률 제9754호, 2009.6.9.)시 제33조의2(소양 및 직무교육) 제3항에 최초 신설
- 최초 신설 이후 추가 또는 신설된 조항 없음.

### ■ 보충역

병역의 한 종류이다.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익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등을 말한다.

### 사 례

####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3. **보충역** :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익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사용례

- 보충역으로의 병역처분, 보충역 처분의 기준, 보충역으로의 복무, 보충역 편입,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 보충역의 교육소집

※ 유래

- 최초 병역법(법률 제41호, 1949.8.6. 제정)에 병역의 한 종류로 보충병역이 규정되었으며, 제1보충병역은 “실역에 적합한 자로서 2년 소요의 현역 및 호국병역의 병원수를 초과한 자 중 소요의 인원이 이에 복한다.”라고 하였다.

- 병역법(법률 제1163호, 1962.10.1. 전부개정)에는 역종을 구분하는 용어로 보충역이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당시에는 제1보충역·제2보충역이 있었으며, 제1보충역은 현역에 적합한 자 중에서 그 해에 소요되는 현역병원을 충당한 나머지 자가 복무하였고 제2보충역은 제1보충역을 마친 사람이 복무하였다.
- 병역법(법률 제2259호, 1970.12.31. 전부개정)에 병역의 종류로 사용된 보충역은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에 적합하여 갑종 또는 을종으로 판정된 자 중에서 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되지 아니한 자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자를 말하였다.
- 병역법(법률 제3696호, 1983.12.31. 전부개정)에서의 보충역은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자 중에서 병력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와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자로 정의되어 있으며, 보충역에 대한 용어 정의는 그 이후 기타 이 법에 의한 보충역의 종류가 추가될 때마다 조금씩 그 범위가 확대되어왔다.

## ■ 보충역 복무기록표

복무기관의 장이 소속 공익근무요원 개인별로 복무 중에 발생하는 복무이탈, 경고처분, 복무중단 등 병역법 제32조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사항과 복무분야·복무형태·근무지·근무시간의 변경사항, 휴가사항 등 복무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발생순서대로 기재하여 정리하는 기록표를 말한다.

### 사 례

#### 병역법시행령

제64조의2(공익근무요원의 자원관리 등)

- ①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한 공익근무요원소집 순서 명부 및 병적기록표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협력 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을 말한다)은 공익근무요원 명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일일 복무상황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보충역 복무기록표에 법 제32조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사항, 복무분야·복무형태·근무지·근무시간의 변경사항, 휴가, 교육소집, 직무교육 실시 여부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력관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총괄하되, 복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휘·감독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복무기관의 장 등은 공익근무요원에게 30일 이상의 병가나 범죄로 인한 구속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근무요원의 자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 유래

- 병역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4397호, 1994.10.6.)시 제67조(공익근무요원의 자원관리 등) 신설
- 병역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6149호, 1999.3.3.) 제2항 단서신설
- 병역법시행령 개정(법률 제21867호, 2009.12.7.)
  - ☞ 종전 제67조에서 제64조의2로 조항 이동

## ■ 복무관리

병역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소집 이후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일련의 관리 감독 및 이와 관련된 행정행위 등을 말한다.

### 사 례

#### 병역법

제31조의2(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감독 등)

- ①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 사용례

-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복무관리 담당직원, 복무관리포털

※ 유래

- 병역법 개정(법률 제4685호, 1993.12.31.)시 제43조(공익근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최초 명시

제43조(공익근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지방병무청이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지정업체 등에 대하여 그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병역법 개정(법률 제7897호, 2006.3.24.)시 제31조의2(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감독 등) 신설
- 병역법 개정(법률 제8447호, 2007.5.17.)시 제31조의2 제1항 단서 신설
- 병역법 개정(법률 제9754호, 2009.6.9.)시 제31조의2 제2항 신설

## ■ 복무관리포털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병무청과 복무기관과의 온라인 신상이동통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상황 신청 및 결과 조회, 복무지도관의 관리감독 및 실태조사, 복무부실 사전예보, 교육 통지 및 결과정리 등 복무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사 례

###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 제2조(정의)

23. “복무관리포털”이란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병무청과 복무기관과의 온라인 신상이동통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상황 신청 및 결과 조회, 복무지도관의 관리·감독 및 실태조사, 복무부실 사전예보, 교육 통지 및 결과정리 등 복무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4조(복무관리포털의 활용)

- ① 지방병무청장 및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사항 기록관리와 신상이동 및 처리결과 통보 등 복무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복무관리포털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복무관리포털에서 지원하지 아니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담당직원과 「행정관서요원의 소양교육 등 운영규정」제9조에 따른 직무교육 대상자 정보를 관리하는 직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병무행정 복무관리포털 사용권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병무행정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사용자 신분을 확인한 후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병무행정시스템에 이를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지 담당자(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권한 신청서를 제출받아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복무관리포털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제11조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공익근무요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 유래

- 복무관리규정 개정(병무청훈령 제913호, 2009.12.30.)시 용어 등 최초 명시
- 개정 이후 추가 또는 신설된 조항 없음.

## ■ 복무기관

공익근무요원이 소집되어 복무하게 되는 인사관리 단위 기관을 말한다. 복무기관에서는 공익근무요원 명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일일복무상황부 비치·관리, 신상이동 통보, 복무분야·복무형태·근무지·근무시간의 변경사항, 휴가, 교육소집, 직무교육 실시 여부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정리하는 등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

### 사 례

#### 병역법

제27조(공익근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복무할 공익근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으로부터 다음 해에 필요한 인원의 배정을 요청받으면 복무기관·복무분야·복무형태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한다.

#### 사용례

- 복무기관 결정, 복무기관의 장
- 공공단체의 의료기관의 장(병역법시행령 제153조)

## ■ 복무기관 재지정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간 중에 전(全) 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에 다른 복무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사 례

#### 병역법시행령

제65조의2(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 ① 행정관서요원이 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송부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하고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해당 행정관서요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를 교부받은 행정관서요원은 지정된 날에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에 도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착에 필요한 기간은 2일로 하고, 그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算入)한다.

#### 사용례

- 복무기관 재지정원서, 복무기관 재지정통지서

#### ※ 유래

- 병역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4397호, 1994.10.6.)시 제66조(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신설
  - ☞ 사유 :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 병역법시행령 개정(법률 제19688호, 2006.9.22.)시 제1항 개정
  - ☞ 사유 추가 : 복무기관 폐쇄/이동, 징역/금고 등 형선고, 질병/심신장애
- 병역법시행령 개정(법률 제21867호, 2009.12.7.)
  - ☞ 종전 제66조에서 제65조의2로 조항 이동

### ■ 복무기관 평가

복무기관의 자율적 복무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병무청장이 관할 지역의 모든 복무기관에 대하여 정기 실태조사 결과와 복무관리 우수사례 언론보도 등 가·감점 요소 반영 복무관리 실태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사 례

#### 병역법시행령

제93조(공익근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복무기관이나 지정업체의 복무관리실태 등을 평가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복무기관 및 지정업체의 평가방법·평가기준, 우수복무기관이나 우수지정업체에 대한 우대 등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 제56조(복무기관 평가 대상) (이하 생략)
- 제57조(복무기관 평가 종류) (이하 생략)
- 제58조(복무기관 평가 실시) (이하 생략)
- 제59조(복무기관 평가결과 적용) (이하 생략)

※ 유래

- 병역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8891호, 2005.6.30.)시 제93조 제2항 신설
- 복무관리규정 개정(병무청훈령 제628호, 2005.12.29.)시 제62조, 제63조, 제64조 신설
- 복무관리규정 개정(병무청훈령 제820호, 2008.12.26.)시 평가대상(사회복지시설) 추가
- 복무관리규정 개정(병무청훈령 제913호, 2009.12.30.)시 제56조~제59조로 이동

### ■ 복무부실 사전 예보

기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 사례를 기반으로 복무이탈 모형을 구축하고, 공익근무요원 개인별 위험도(점수)를 산정하여 복무부실 가능여부를 복무지도관에게 실시간으로 사전 예보하는 등 복무관리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사 례

###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조(정의)

23. “복무관리포털”이란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병무청과 복무기관과의 온라인 신상이동통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상황 신청 및 결과 조회, 복무지도관의 관리·감독 및 실태조사, 복무부실 사전예보, 교육 통지 및 결과정리 등 복무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52조(실태조사 종류 및 대상)

② 정기 실태조사는 모든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야 하며, 수시 실태조사는 복무관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민원을 일으킨 복무기관 또는 복무부실사전예보시스템에서 심각 및 경계로 예보된 사람이 근무하는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유래

- 복무관리규정 개정(병무청훈령 제913호, 2009.12.30.)시 용어 등 최초 명시
- 개정 이후 추가 또는 신설된 조항 없음.

## ■ 복무분야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관에서 복무하여야 할 분야를 말한다. 복무분야는 공익근무요원 복무대상 업무에 따라 각각 구분된다. 사회복지 업무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업무 지원, 보건·의료 업무에는 국민건강 보호·증진 업무 지원, 환자구호 업무 지원, 교육·문화 업무에는 학습지원, 장애학생 활동 지원, 문화재관리 지원, 환경·안전 업무에는 환경보호·감시 지원, 재난·안전 관리 지원, 행정지원 업무에는 일반행정 지원 및 행정기관 경비 지원 등이 있다.

### 사 례

#### 병역법

제27조(공익근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복무할 공익근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으로부터 다음 해에 필요한 인원의 배정을 요청받으면 복무기관·복무분야·복무형태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한다.

제29조(공익근무요원의 소집)

- ①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 또는 복무분야를 정하여 공익근무요원을 소집

#### 사용례

- 복무분야 지정

## ■ 복무이탈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통산 8일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한다.

### 사 례

#### 병역법

제33조(공익근무요원의 연장복무 및 소집취소 등)

- ①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제89조의2(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 사용례

- 복무이탈일수,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 유래

- 병역법 개정(법률 제4685호, 1993.12.31.)시 제33조(공익근무요원의 소집취소 및 의무부과) 신설

제33조(공익근무요원의 소집취소 및 의무부과)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7일 이내의 기간 복무를 이탈한 때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을 취소하고 제7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 병역법 개정(1994.12.31. 법률 제4840호)시 제89조의2(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신설

☞ 통산 8일 이상 복무이탈 시 “현역병입영”에서 “수사기관고발”로 변경

## ■ 복무중단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일반범죄 구속, 질병 또는 가사사정에 의한 분할복무 등으로 인하여 공익근무요원 복무가 중단되는 것을 말한다.

## 사 례

### 병역법시행령

제66조(복무이탈로 인한 공익근무요원의 잔여복무 등)

①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89조의2 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을 제16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1. 공익근무요원이 구속된 경우
2. 공익근무요원이 형의 선고(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
3. 공익근무요원이 고발된 후 불기소처분이나 형의 선고를 받기 전에 통틀어 3일 이상의 기간을 복무이탈한 경우

※ 유래

- 병역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4819호, 1995.12.6.)시 제56조의2 신설

- 병역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0286호, 2007.9.27.)시 제56조의2 제1항 각호 신설

- 병역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1867호, 2009.12.7.)시 제66조로 이동

## ■ 복무형태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하는 시간대에 따라 구분되는 주간 또는 주·야간 근무를 말한다.

사 례

### 병역법

제27조(공익근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복무할 공익근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으로부터 다음 해에 필요한 인원의 배정을 요청받으면 복무기관·복무분야·복무형태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한다.

### 사용례

- 복무형태별 배정인원(병역법시행령 제49조)
- 공익근무요원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등(훈령912호, 별표1)

## ■ 분할복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계속하여 복무가 어려울 경우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재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사 례

### 병역법

제31조의3(공익근무요원의 분할복무)

-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복무중단 기간은 통틀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가족의 간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재난이나 그 밖의 가사사정으로 본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분할복무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용례

- 분할복무 신청서, 분할복무 통지서

※ 유래

- 병역법 개정(2007.5.17. 법률 제8447호)시 제31조의3(공익근무요원의 분할복무) 신설
- 최초개정 이후 추가 또는 신설된 조항 없음.

## ■ 선소집

공익근무요원은 소집과 동시에 교육소집을 실시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먼저 소집을 하고 소집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소집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사 례

#### 병무청 훈령(제912호)

제27조(선소집 대상자 선발 및 처리 등)

- ①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소집되는 해에 30세가 된 사람(법 제7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해 소집대상이 아닌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선소집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소집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후 가까운 교육소집일에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지방병무청장은 선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매년 2월 중에 선소집하여야 하며, 30세가 된 해에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병역처분된 사람은 자원인수 즉시 선소집하여야 한다.

#### 사용례

- 선소집대상자 소집통지, 선소집자 교육소집통지

※ 유래

- 병무청 훈령(제816호, 2008.12.23. 일부개정)에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 중 당해년도에 30세가 된 사람은 소집과 동시에 교육소집 없이 복무기관에서 바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하고, 교육소집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후 가까운 소집일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선소집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
- 병역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397호, 1994.10.6. 전부개정) 제107조(교육소집 실시) 제1호에는 공익근무요원의 교육소집은 공익근무요원소집과 동시에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일로부터 1년 이내 교육소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소집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 ■ 소양교육

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 확립, 책임의식 및 봉사정신 함양을 위하여 병무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사 례

## 병역법

제33조의2(소양 및 직무교육 등)

-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소양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 병역법 시행규칙

제67조(행정관서요원의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 등)

- ①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관서요원에 대하여 법 제3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관서요원에 대한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을 법 제29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소집 또는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교육소집을 종료한 직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또는 교육소집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 유래

- 「병역법」개정(법률 제8447호, 2007.5.17.)시 제33조의2(소양 및 직무교육) 최초 신설

제33조의2(소양 및 직무교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소양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병역법」개정(법률 제9754호, 2009.6.9.)시 제33조의2(소양 및 직무교육) 개정

## ■ 소집

국가가 병역의무자중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하여 현역 복무 외에 군복무 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소집의 종류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전시근로소집, 교육소집 등이 있다.

## 사 례

## 병역법

제29조(공익근무요원의 소집)

- ①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 순서가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복무기관 또는 복무분야를 정하여 공익근무요원을 소집한다.

**사용례**

- 공익근무요원 소집,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교육소집

※ 유래

- 병역법(법률 제41호, 1949.8.6. 제정)에 “소집”이란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 당시에는 귀휴병, 예비병, 후비병, 보충병, 국민병에 대한 소집이 있었으며, 소집목적에 따라 소집대상과 소집기간이 달랐다.
- 병역법(법률 제1163호, 1962.10.1. 전부개정)에는 총원소집, 임시소집, 경비소집, 근무.연습소집, 교육소집, 방위소집, 귀휴병소집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고,
- 병역법(법률 제2259호, 1970.12.31. 전부개정)에는 총원소집, 근무연습소집, 교육소집, 보충소집, 귀휴병소집, 방위소집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며,
- 병역법(법률 제3696호, 1983.12.31. 전부개정)에는 방위소집, 병력동원소집, 전시근로소집, 교육소집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고, 제2조(정의)에서는 “‘소집’이라 함은 국가가 병역의무자 중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하여 현역 복무외의 군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다.
- 병역법(법률 제4685호, 1993.12.31. 전부개정)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병력동원소집, 전시근로소집, 교육소집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제2조(정의 등)에 “‘소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 중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하여 현역 복무 외의 군복무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 소집결과서**

해당 소집일자 **의** 공익근무요원 소집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해 놓은 부책을 말한다.

**사 례**

**병무청 훈령(제912호)**

제44조(소집결과서 작성) 공익근무요원 소집결과서는 소집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작성하되, 인도인접서, 소집결과현황, 소집대상자연명부, 귀가자현황, 소집불가능자 근거서류 및 소집부대 인사명령 순으로 편철하고, 소집기일연기 및 통지취소 등의 관련문서는 소집대상자연명부 순위에 따라 합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사용례

- 공익근무요원 소집결과서, 소집결과서 작성 시기

※ 유래

- 병무청 예규(예규 제3-33호, 1994.12.26. 제정)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등 자원관리 및 의무 부과 규정” 제34조(소집결과서 작성) 제1항에 “공익근무요원소집결과서는 소집일자별, 복무기관 별로 작성하고 당해 소집업무와 관련있는 모든 문서는 단일권으로 합철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공익근무요원 소집결과를 단일권에 합철하여 관리하는 개념으로 소집결과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 ■ 소집단위

공익근무요원을 소집하는 지역별 범위로 일반적으로 복무기관 소재지 시·군·구를 소집단위라고 한다. 소집단위는 출퇴근 가능성, 지역별 자원 과부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시의 경우는 권역별로 소집단위를 설정할 수 있고, 소집단위별로 소집자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출퇴근 가능범위내의 인접 시·군·구(읍·면·동 포함) 자원을 소집할 수 있다.

### 사 례

#### 병무청 훈령(제912호)

##### 제20조(소집단위)

- ① 행정관서요원의 소집통지는 복무기관 소재지 시·군·구 단위로 출퇴근 가능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시의 경우에는 권역별로 소집단위를 설정하여 형평성 있게 의무부과를 할 수 있다.

### 사용례

- 권역별 소집단위 설정, 출퇴근 가능 범위 내 소집단위

※ 유래

- 병무청 예규(예규 제3-33호, 1994.12.26. 제정)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등 자원관리 및 의무부과 규정” 제22조(소집단위)에 행정관서요원의 소집통지를 위한 복무기관 소재지 시·군·구 단위 출퇴근 가능 범위를 정하는 용어로 소집단위를 최초로 사용하였다.

### ■ 소집순서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를 소집 권역별로 소집하는 순서를 말한다. 그 권역별 범위 및

소집순서의 결정기준은 신체등위, 학력, 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사 례**

**병역법**

제28조(공익근무요원소집 순서의 결정)

- ①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지역별로 소집순서를 결정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는 따로 소집순서를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별 범위 및 소집순서의 결정기준은 신체등위·학력·연령 등의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사용례**

- 지역별 소집순서, 공익근무요원 소집순서, 소집순서의 결정 기준

※ 유래

- 병역법(법률 제4685호, 1993.12.31. 전부개정) 제28조(공익근무요원소집순서의 결정)에서 “지방 병무청장이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에 대하여 지역별로 소집순서를 결정한다”라고 하여 소집순서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 구 병역법(법률 제3696호, 1983.12.31. 전부개정) 제22조에는 방위소집순서의 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거주지지방병무청장이 방위소집대상자에 대하여 거주지 읍면동별로 소집순서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 공익근무요원 소집순서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소집해제**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간만료, 질병 등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 소집이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사 례**

**병역법**

제30조(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 ①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 : 2년 2개월
  - ③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의 보류에 관하여는 현역병 전역 보류에 관한 제18조 제4항 제1호를

준용한다.

- ④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의 계산과 소집해제 등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용례

- 소집해제 처분(서), 소집해제(예정)일

### ※ 유래

- 병역법 개정(법률 제4685호, 1993.12.31.)시 제30조(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등)신설
  - ☞ 행정관서요원의 의무 복무기간 : 2년 8월
  - ☞ 당시(1994.10.6) 시행령 제68조(공익근무요원의 소집해제)에 소집해제절차 위임
- 병역법 개정(법률 제6972호, 2003.9.3.)시 제1항 제1호 개정
  - ☞ 복무기간 단축 : 2년 8월 ☞ 2년 2월

## ■ 순환근무

복무기관장이 공익근무요원 간의 수행임무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공익근무요원을 다른 복무분야(근무지)로 변경하여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사 례

####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17조(순환 근무)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환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비리발생소지가 높은 복무분야 또는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순환근무가 필요한 경우
2. 업무가 어려운 분야 또는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수행임무의 형평성을 이유로 복무분야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의 민원 발생 등으로 순환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유래

- 복무관리규정 개정(병무청훈령 제589호, 2004.12.14.)시 제15조의4(순환근무) 신설
- 복무관리규정 개정(병무청훈령 제913호, 2009.12.30.)시 제17조로 이동

## ■ 신상이동 통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중에 발생한 복무이탈 등 신상변동 내역을 복무기관의 장이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사 례**

**병역법**

제32조(공익근무요원의 신상이동 통보)

①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제33조 제1항에 따라 경고처분된 경우
  3. 전(全) 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4. 복무하고 있는 기관이 폐쇄되거나 이동한 경우
  5. 복무기간 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②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용례**

- 신상이동 통보, 신상이동 통보서, 신상이동 처리

※ 유래

- 병역법 개정(법률 제4685호, 1993.12.31.)시 제32조(공익근무요원의 신상이동 통보) 신설
- 병역법 개정(법률 제5757호, 1999.2.5.)시 제32조 제1항 공공단체의 장(통보의무자) 추가
- 병역법 개정(법률 제6287호, 2000.12.26.)시 제32조 제1항 제5호 신설
- 병역법 개정(법률 제7897호, 2006.3.24.)시 제32조 제1항 제6호 신설

**■ 실태조사**

매년 지방병무청장이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에 대하여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실태, 자원 관리실태 등 복무관리 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사 례

**병역법**

제43조(공익근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지방병무청이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복지시설 및 지정업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사용례**

- 실태조사 및 평가, 정기 실태조사, 수시 실태조사, 실태조사 통보서, 실태조사 결과 처리 기준,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유래

- 병역법 개정(1993.12.31. 법률 제4685호)시 제43조(공익근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신설
- 최초개정 이후 일부 자구수정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추가 또는 신설된 조항 없음

**■ 어업정보통신국**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본부 소속으로 어선의 안전조업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인천, 속초, 동해, 주문진, 태안 등 전국 16개 어업정보통신국이 있다.

## 사 례

**병역법시행령**

제47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어업정보통신국

**■ 연고지**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 중 주 부양능력자의 주민등록지를 말한다. 공익근무요원은 의무자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의무부과를 하고 있으나 도서지역 또는 출퇴근 곤란지역에 단독으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고지에서 소집하고 있다.

### 병무청 훈령(제912호)

제32조(출퇴근 곤란지역 거주자 등 연고지 소집)

- ① 영 제61조에 따른 출퇴근 곤란지역에 단독으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고지(영 제131조 제1호에 따른 가족 중 주 부양능력자의 주민등록지를 말한다)의 소집순서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1. 연고지가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인 사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병적을 이관하여 연고지 소집순서에 따라 의무부과
  2. 연고지가 관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관내 연고지 소집순서에 따라 의무부과
- ② 국외이주자로서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원에 따른 연고지에서 소집할 수 있다.

### 사용례

- 공익근무요원 연고지 소집

※ 유래

- 병무청 훈령(훈령 제699호, 2007.7.11. 일부개정)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등 자원관리 및 의무부과 규정」제2조(정의) 제10호에 “연고지라 함은 소집대상자의 가족(가족의 범위는 영 제131조제1호에 의한다.) 중 주 부양능력자의 생활근거지(주민등록지)를, 가족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가 가능한 본인의 생활근거지를 말한다.”라고 하여 연고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 ■ 예술·체육요원

예술 및 체육특기자의 문화창달과 국위선양 및 개인특기 계발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국제대회 입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으로 공익근무요원에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대체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병역법시행령

제47조의2(예술·체육요원의 공익근무요원 추천 등)

- ②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이하 “예술·체육요원”이라 한다)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술·체육요원 추천원서에 입상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용례

- 예술·체육요원 편입, 예술·체육요원 추천원서

※ 유래

-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법률 제2562호, 1973.3.3. 제정) 제3조(보충역편입 등)에서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제도 신설
-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이 병역법으로 흡수(1984.9.22.)
-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법률 제4157호, 1989.12.30.)이 다시 제정되면서 예술·체육요원 규정
- 병역법(1994.1.1~1999.12.30.)에서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 명시, 예술경연대회인정여부는 병무심의 위원회에서 결정
- 병역법(제4685호, 1993.12.31.) 및 시행령(제16668호, 1999.12.31.)에서 병무심의위원회 폐지, 병무 청장이 선발범위 정함
- 병역법시행령(제17636호, 2002.6.25.)에서 월드컵 16위 이상 입상자 추가
- 병역법시행령(제19688호, 2006.9.25.)에서 WBC 4위 이상 입상자 추가
- 병역법시행령(제20469호, 2007.12.28.) : 월드컵, WBC 제외

## ■ 위장전입자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피하기 위하여 낙도 등 출퇴근 불가능 지역으로 주소만 옮겨 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사람을 말한다.

사 례

### 병무청 훈령(제912호)

제31조(위장전입자의 확인)

- ① 지방병무청장은 배정인원 보다 소집자원이 과다한 지역이나 소집일정이 이미 끝난 지역에 전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입사유(직장 이동, 취업 등) 및 실거주 여부 등 현지확인 실태 조사 또는 배달증명에 의하여 의무자로부터 제출받은 실태조사서를 통하여 위장전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대주(가족주) 및 의무자가 작성 날인한 실거주 여부 확인 등 실태조사서 (별지 제2호 서식) 및 관련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장전입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의무부과 하여야 한다.

### 사용례

- 위장전입자 확인, 위장 전입자 실태조사

※ 유래

- 병무청 예규(예규 제3-33호, 1994.12.26. 제정)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등 자원관리 및 의무부과 규정” 제25조(위장전출·입자의 확인)에 “전출입이 빈번한 사람과 당해년도 소집대상자로서 전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명시하여 병적을 송부하고 신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피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에 대하여 위장 전입자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

## ■ 유급

교육생이 교육 중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 교육일수 중 2일 이상을 결석한 때 교육운영기관의 장이 교육을 중단시키고 다음 기회에 다시 이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사 례

### 행정관서요원의 소양교육 등 운영 규정

제20조(퇴교 및 유급)

- ③ 교육운영기관의 장은 교육생이 교육 중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 교육일수 중 2일 이상을 결석한 때에는 유급처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일수 산정은 지각·조퇴·외출 등 누계시간을 합산하며, 누계시간 7시간을 1일로 산정한다.

※ 유래

- 『행정관서요원의 소양·직무교육 등 운영규정』제정(훈령 제743호, 2008.1.10.)시 제20조(퇴교 및 유급) 최초 신설
- 최초 신설 이후 추가 또는 신설된 조항 없음

## ■ 일일 복무상황부

복무기관의 장이 소속 공익근무요원 개인별로 복무 중에 매일 발생하는 출퇴근, 연가·병가 등 근태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는 부책을 말한다.

사 례

### 병역법시행령

제64조의2(공익근무요원의 자원관리 등)

- ①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한 공익근무요원소집 순서 명부 및 병적기록표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을 말한다)은 공익근무요원 명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일일 복무상황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보충역 복무기록표에 법 제32조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사항, 복무분야·복무형태·근무지·근무시간의 변경사항, 휴가, 교육소집, 직무교육 실시 여부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력관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총괄하되, 복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휘·감독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복무기관의 장 등은 공익근무요원에게 30일 이상의 병가나 범죄로 인한 구속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근무요원의 자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 유래

- 병역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4397호, 1994.10.6.)시 제67조(공익근무요원의 자원관리 등) 신설
- 병역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6149호, 1999.3.3.) 제2항 단서신설
- 병역법시행령 개정(법률 제21867호, 2009.12.7.)
- ☞ 종전 제67조에서 제64조의2로 조항 이동

## ■ 지연응소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가 지정된 소집일자보다 늦게 응소하는 것을 말한다.

사 례

### 병역법시행령

제55조(지연응소의 신고 등)

- ①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로서 천재지변, 교통 두절, 통지서 송달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기일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은 소집기일부터 3일 이내에 지연응소(遲延應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연응소를 하려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연응소 신고를 하고, 그 신고 응소일에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연응소할 사람의 명단을 해당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

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복무기관의 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지연응소할 사람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고된 신고기일에 응소 여부를 확인하고 응소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사용례

- 지연응소의 신고, 지연응소할 사람의 명단

※ 유래

- 병역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397호, 1994.10.6. 전부개정) 제55조(지연응소의 신고 등)에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로서 천재지변, 교통 두절, 통지서 송달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기일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은 소집기일부터 3일 이내에 지연응소(遲延應召)할 수 있다.”라고 하여 지연응소에 대하여 최초로 사용하고 있다.
- 지연응소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정해진 소집기일에 복무기관에 갈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처리를 위한 규정으로 정해진 입영일자에 입영부대로 입영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처리를 위한 지연입영과 대비된다.

## ■ 직무교육

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복무 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주관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사 례

#### 병역법

제33조의2(소양 및 직무교육 등)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필요한 직무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병역법 시행규칙

제67조(행정관서요원의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 등)

- ②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관서요원에 대하여 법 제3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관서요원에 대한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을 법 제29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소집 또는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교육소집을 종료한 직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또는 교육소집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 유래

- 『병역법』개정(법률 제8447호, 2007.5.17.)시 제33조의2(소양 및 직무교육) 최초 신설

제33조의2(소양 및 직무교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소양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필요한 직무교육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병역법』개정(2009.6.9, 법률 제9754호)시 제33조의2(소양 및 직무교육) 개정

☞ 직무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교육운영기관을 병무청에서 관계 행정기관으로 변경하였음

## ■ 징병검사전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에 의하여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신체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 례

###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3. (생략)

14. “징병검사전담의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4조에 따라 징병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병역법 시행령

제12조(징병검사 종사자)

②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수석징병전담의사 및 징병검사전담의사(이하 “징병전담의사”라 한다), 수석징병검사전문의를사 및 징병검사전문의를사(이하 “징병전문의를사”라 한다) 또는 군의관만으로 징병검사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을 위촉하여 징병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용례

- 징병검사전담의사의 편입 및 복무, 신분상실 및 박탈

※ 유래

- 병역법(법률 제5757호, 1999. 2. 5. 일부개정) 제34조에서 의사·치과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징병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되어 복무할 수 있는 제도 신설

■ 퇴교

교육생이 교육 중 교육태만, 수업거부 또는 교육운영관이나 강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교육운영기관의 장이 교육을 중단시키고 즉시 복무기관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 례

행정관서요원의 소양교육 등 운영 규정

제20조(퇴교 및 유급)

- ① 교육운영기관의 장은 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퇴교처분을 할 수 있다.
  1. 영 제65조의3 제5호에 해당하는 소양교육 등을 태만하게 하였을 때
  2. 수업을 거부하였을 때
  3. 교육운영관이나 강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 ② 교육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퇴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퇴교처분하고, 그 결과를 교육위탁기관의 장 및 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유래

- 『행정관서요원의 소양·직무교육 등 운영규정』제정(훈령 제743호, 2008.1.10.)시 제20조(퇴교 및 유급) 최초 신설
- 최초 신설 이후 추가 또는 신설된 조항 없음.

■ 퇴영

보충역으로서 교육소집 입영자 중 입영신체검사기간이 지난 후에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소집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입영부대장이 퇴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 례

병역법시행령

제111조(교육소집 중 퇴영자의 처리)

- ① 입영부대의 장은 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기간이 지난 후에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소집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영시킬 수 있으며, 지방병무청장은 퇴영한 사람에 대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에 다시 교육소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질병 사유로 퇴영한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 ② 제107조 제1호에 따라 교육소집된 사람이 퇴영한 경우 입영한 날부터 퇴영한 날까지의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 사용례

- 교육소집 중 퇴영자 처리, 교육소집 중 퇴영된 사람의 복무기간

#### ※ 유래

- 병역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397호, 1994.10.6. 전부개정) 제111조(교육소집 중 퇴영자 처리)에 “지방병무청장은 교육소집을 받다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정의 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퇴영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에 다시 교육소집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퇴영을 최초로 사용하였다.

## ■ 파견근무

중앙관서의 장 및 시·도지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 수행이나 업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소속 공익 근무요원을 다른 복무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사 례

####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 제14조(파견근무)

- ① 중앙관서의 장 및 시·도지사(산하 복무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 수행이나 업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소속 행정관서요원을 다른 복무기관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의 파견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라 파견근무를 하는 행정관서요원은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이 지휘·감독하며, 영 제62조에 따른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급식비 등을 실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③ ~ ⑥ (생략)

※ 유래

- 복무관리규정 개정(병무청훈령 제459호, 2001.3.28.)시 제2조의2(파견근무) 신설
- 복무관리규정 개정(병무청훈령 제913호, 2009.12.30.)시 제14조로 이동

## ■ 한국국제협력단

정부의 대외무상협력사업을 전담 실시하는 기관으로 1991년 4월 설립되었으며, 코이카(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KOICA)라고도 한다. 주요 활동으로 전문가, 의사, 태권도 사범 등의 전문인력 및 해외봉사단 파견, 국제협력 요원을 포함한 연수생 초청사업, 국제비정부기구 지원, 기타 프로젝트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제협력요원에 대한 관리업무를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 사 례

#### 해설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관리업무를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서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임.

## ■ 현역병 복무중 보충역 편입자

현역병 복무 중에 간질·야맹증·정신이상·성격장애 등 군복무가 곤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신체등위가 5급에 이르지 않는지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현역병 복무기간을 감안한 잔여복무기간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며, 별도소집대상자로서 다른 공익근무요원에 비하여 최우선으로 소집하고, 교육소집은 실시하지 않는다.

### 사 례

####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변경 등)

- ① 현역병(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 입영대상자를 포함한다)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제2국민역 편입을 할 수 있다.

1.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 병역법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 ① 법 제6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역병(법 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의 병역처분변경은 각 군 참모총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3. 간질·야맹증·정신이상·성격장애 등 군복무가 곤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신체등위가 5급에는 이르지 아니한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 병무청 훈령(제912호)

제21조(교육소집 제외 대상 등)

- ① 영 제30조 및 제107조에 따라 교육소집을 다시 실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사용례

-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 편입,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 소집,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 복무

### ※ 유래

- 병역법시행령(대통령령 제21867호, 2009.12.7. 일부개정)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1항 제3호에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신체등위가 5급에는 이르지 아니한 사람은 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에 편입될 수 있게 됨에 따라 병무청 훈령(제912호)에서 이들에 대한 용어를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라고 정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 병무행정 용어 해설집 •

## V.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 ■ 개별종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기능특기자가 지정업체 또는 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여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의무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 사 례

#### 병역법 시행령

제86조(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의 예외)

- ① 기능특기자로서 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제85조에도 불구하고 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하거나 편입 당시의 기능 분야에서 개별종사(지정업체가 아닌 업체에 종사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으며, 개별종사하는 경우에는 제91조에 따른 신상 이동 사항에 관하여 기능특기자 신상이동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이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용례

- 기능특기자 산업기능요원의 개별종사

※ 유래

-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397호, 1994.10.6.) 제86조에서 개별종사 용어 사용

## ■ 교육훈련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의무종사 중 연구 또는 생산·제조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국내교육기관에서 학습을 받는 것을 말한다.

### 사 례

#### 병역법시행령

제87조(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등)

- ① 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장 또는 국립수산물연구원장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의무종사 중에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내교육훈련 및 관련업무수행을 위한 국내파견(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근무를 시키려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승인 신청서 또는 파견근무승인 신청서에 복무기록표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내교육훈련 및 국내파견근무기간은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다만, 3개월 미만의 국내교육훈련 및 국내파견근무와

지정업체 간의 파견근무의 경우에는 제91조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로 승인에 같음한다.

### 사용례

- 국내교육훈련, 교육훈련승인

※ 유래

- 병역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397호, 1994.10.6.) 제87조(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등)에서 사용

## ■ 기간산업체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수 있도록 병무청장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정업체로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기간산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준을 충족한 업체가 추천기관에 선정신청을 하면 병무청장이 최종 선정을 하게 된다.

### 사 례

#### 병역법

제36조(지정업체의 선정 등)

① 병무청장은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중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농업회사법인과 사후관리업체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 병역법 시행령

제72조(지정업체의 선정 등)

②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기간산업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업 분야 :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
2. 에너지산업 분야 :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
3. 광업 분야 : 광물(석탄은 제외한다)의 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업체, 선광·제련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연간 1만2천 톤 이상의 석탄채굴업체 (이하 생략)

### 사용례

- 기간산업체에 종사

※ 유래

-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법률 제2562호, 1973.3.3.) 제3조(보충역편입 등) 제1항 제3호에서 기간산업체 용어 사용

## ■ 방위산업체

국가방위와 관련되는 군수품을 생산하며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로 지정받은 업체를 말한다.

### 사 례

#### 병역법

제36조(지정업체의 선정 등)

- ① 병무청장은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중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농업회사법인과 사후관리업체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 사용례

- 방위산업체에 종사, 방위산업체 중에서 지정업체로 선정

※ 유래

-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법률 제2562호, 1973.3.3. 제정) 제3조(보충역편입 등) 제1항 제2호에는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군수업체(군공창 및 군정비창을 포함한다) 및 연구기관으로 규정하였으나,
-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법률 제4157호, 1989.12.30. 개정) 제2조(정의) 제4호에서 “‘특례업체’라 함은 병역특례 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체를 말한다.”라고 방위산업체 용어 사용.

## ■ 배정인원 조정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 이후에 복무관리부실업체 등으로부터 회수 또는 반납 받은 인원 등을 다른 지정업체로 재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 사 례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제22조(배정인원 조정)

- ① 병무청장은 영 제75조 제3항에 따라 지정업체별로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 인원배정을 한 후에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으로부터 회수 또는 반납된 배정인원 등을 다른 지정업체로 배정하는 등 배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 사용례

- 배정인원 조정

※ 유래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예규 제4-40호, 2008.12.29.) 제22조에서 배정인원 조정 용어 사용

- 전문연구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을 예규에서 훈령(훈령 제895호, 2009.8.12.)으로 제정

## ■ 산업기능요원

국가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면허와 학력 등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군복무를 하는 대신에 제조·생산, 광업 등 병무청장이 선정한 기업체나 특정 분야에서 일정기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사 례

#### 병역법

제36조(지정업체의 선정 등)

- ① 병무청장은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중에서 전문연구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농업회사법인과 사후관리업체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 사용례

- 산업기능요원 편입, 산업기능요원의 편입대상, 산업기능요원 복무,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 ※ 유 래

-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법률 제2562호, 1973.3.3.)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공업, 수산 또는 해운계의 주요 기간산업체 중에서 기간산업체선정위원회가 선정하는 산업체에 취업하거나 승선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충역으로 편입시키는 제도가 시작됨
-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병역법(법률 제3696호, 1983.12.31.)으로 흡수되면서 “특례보충역”으로 명칭 변경
-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법률 제4157호, 1989.12.30.)이 다시 제정되면서 제11조 규정에 따라 “기능요원”으로 명칭 변경
-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병역법(법률 제4685호, 1993.12.31.)으로 다시 흡수되면서 “기능요원”을 “산업기능요원”으로 명칭 변경

## ■ 상시근로자

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한 업체 또는 지정업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중 대표이사,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한다.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0조(기간산업분야 지정업체 세부선정 기준)

- ① 영 제7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능요원이 종사할 공업분야의 지정업체 선정은 동일법인 내의 다른 공장 또는 사업장이 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있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한 공장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 이고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며 제조·매출 실적이 있어야 한다.

#### 사용례

- 지정업체 선정기준 중 상시근로자수 산정

※ 유래

- 1993년부터 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병무심의위원회에서 종업원 수 5인 이상 선정기준 도입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병무청 예규 제4-10호, 2004.3.16.) 제10조에서 종업원을 상시근로자로 명칭 변경

### ■ 승선근무예비역

항해사·기관사 면허 소지자로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등을 위하여 해운·수산업체에 일정기간 승선근무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해설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병역제도 개선방안』(2007.2.5.)에 의거 2012년 이후 전환복무, 대체복무 폐지방침에 따라 한국해양대 등 해운업관련 8개 단체가 해양 인적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비상 시 이들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운·수산분야 산업기능요원을 대체하는 승선근무예비역제도 도입을 추진하였으며, 2007.5.29.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2007.7.3. 승선근무예비역 병역제도 도입을 위한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2008.1.1.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었다.

#### 병역법

제2조(정의 등)

-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9. “승선근무예비역”이란 「선박직원법」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또는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용례**

-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 유래(유사제도)

- 해군예비원령 제정(대통령령 제1395호, 1958.10.7.) : 해군예비원령 제도(2년 승선)
- 병역법 개정(법률 제3498호, 1981.12.31.) : 해군예비역장교 제도(3년 승선)
-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정(법률 제4157호, 1989.12.30.) : 해군예비역장교와 특례보충역(5년 승선)제도 혼용
- 병역법 개정(법률 제4685호, 1993.12.31.) : 해운·수산분야 산업기능요원제도
- 병역법 개정(법률 제8549호, 2007.7.27.) : 승선근무예비역제도 도입
- 2009.1.1.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실시

**■ 승인전직**

지정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은 1년 6개월, 산업기능요원은 1년 이상 종사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고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사 례**

**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②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할 수 있다.  
다만, 동일 법인 내 지정업체로 옮기는 경우에는 신상이동 통보로 승인을 갈음한다.

1.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때(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정업체를 옮긴 때를 말한다)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가. 전문연구요원 : 1년 6개월

나. 산업기능요원 : 1년

2.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지정업체인 다른 연구기관에 종사를 원하는 경우(이하 생략)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1. (생략)
12. “의무전직”이라 함은 영 제85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는 것을 말하며 “승인전직”이라 함은 영 제85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 사용례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승인전직

※ 유래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병무청 예규 제3-64호, 2000.5.1.)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승인전직 용어 사용

## ■ 연구기관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수 있도록 병무청장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정업체로 선정한 연구소 등을 말한다.

### 사 례

#### 병역법

제36조(지정업체의 선정 등)

- ① 병무청장은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중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농업회사법인과 사후관리업체는 제외한다)를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 병역법 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

- ①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연구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의 경우에는 2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연계 연구기관
  2. 인문사회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이하 생략)

#### 사용례

- 연구기관 지정업체 선정, 자연계연구기관,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 유래

-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법률 제2562호, 1973.3.3.) 제3조(보충역편입)에서 연구기관 용어 사용

## ■ 연구전담요원

기업의 연구개발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공자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 례

### 병역법 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

①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연구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2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연계 연구기관
2. 인문사회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이하 생략)

### 사용례

- 연구전담요원의 산정 제외, 연구전담요원 교체자 인정범위

※ 유래

- 병역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397호, 1994.10.6.) 제72조(연구기관 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에서 연구전담요원 용어 사용

## ■ 연장종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 복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정업체의 휴업·영업정지 또는 직장폐쇄 등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휴직·정직 등으로 복무일이 다 채워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 부족한 기간만큼 연장하여 종사하는 것을 연장종사라고 한다.

사 례

### 병역법

제41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의무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1. 지정업체의 휴업·영업정지 또는 직장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휴직·정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사용례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연장종사 처분

#### ※ 유래

- 병역의무특례규제에관한법률(법률 제4157호, 1989.12.30. 제정) 제15조(특례보충역편입의 취소 및 의무부과) 제3항 : ‘관할지방병무청장은 특례보충역으로서 의무종사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4조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 통보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연장하여 종사하게 한다.’ 라고 최초 규정
- 병역법(법률 제4685호, 1993.12.31. 제정) 제41조 제2항에서 연장종사 용어 사용

## ■ 의무전직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종사 중인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 사 례

#### 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종사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3조에 따른 해당 분야의 다른 지정업체에 옮겨 종사하여야 한다.

1. 종사 중인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2. 종사 중인 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4.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수학 중인 사람으로서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사람(이하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라 한다)이 해당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2조(정의) 제12호 “의무전직”이라 함은 영 제85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는 것

#### 사용례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전직

※ 유래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병무청 예규 제3-64호, 2000.5.1.)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의무전직 용어 사용

## ■ 전문연구요원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군복무를 하는 대신에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에서 해당 전문연구분야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 사 례

####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5. (생략)

16. “전문연구요원”이란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이하생략)

#### 사용례

-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의 제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 유래

-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법률 제2562호, 1973.3.3.) 제3조 : 한국과학원 학생을 보충역에 편입시키면서 제도 시작

-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병역법(법률 제3696호, 1983.12.31.)에 흡수 : “특례 보충역”으로 명칭 변경

-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법률 제4157호, 1989.12.30.) 제10조 : “연구요원”으로 명칭 변경

-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병역법(법률 제4685호, 1993.12.31.)에 흡수 : “연구요원”을 “전문연구요원”으로 명칭 변경

## ■ 정보처리 직무 분야

병무청장이 선정한 기간산업체에서 프로그램개발, 소프트웨어 제작 등 정보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를 말한다.

### 사 례

#### 병역법

제38조(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의 공업 분야 기간산업체 및 제1항 제2호의 방위산업체에서 정보처리 직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관련학과의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 분야의 종사경력이 있어야 한다.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27조(정보처리 직무분야 기능요원 편입 등)

- ①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처리 직무분야에 기능요원으로 편입 또는 전직할 수 있는 대상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처리업
2. 게임소프트웨어개발업
3. 애니메이션제작업
4. 영상게임기제작업
5. 정보통신기기제조업
6. 방위산업

#### 사용례

-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능요원 편입, 소지자, 관련학과 전공

※ 유래

-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병역법(법률 제4685호, 1993.12.31.)으로 흡수 하면서 병역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397호, 1994.10.6.) 제72조(연구기관 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제2항 제1호에서 '공업분야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정보처리관련업을 영위하는 업체' 라고 하여 최초로 사용하였다.
- 병역법(법률 제9754호, 2009.6.9.) 제38조에 의거하여 정보처리 직무분야 종사자의 편입조건을 강화하였다.

## ■ 지정 교육기관

선박직원법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선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와 그 밖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 사 례

## 병역법

제21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선박직원법」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있는 사람은 지원에 의하여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1. (생략)
2. 「선박직원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7조(국토해양부장관 지정 교육기관 통보)

① 법 제2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은 별표 1과 같다. (이하생략)

## 사용례

- 국토해양부장관 지정 교육기관 통보

## ■ 지정업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군복무를 대신하여 일정기간 복무할 수 있도록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이나 산업체 등을 말한다.

## 사 례

##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7. (생략)
18. “지정업체”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업체로서 다음 각 목의 업체를 말한다.
  - 가. 제36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 나. ~ 다. (생략)

## 사용례

- 지정업체 선정, 지정업체 선정기준, 지정업체 선정추천

※ 유래

-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법률 제4157호, 1989.12.30.) 제2조(정의)에서 “특례업체” 명칭 신설
-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이 폐지하고 병역법(법률 제4685호, 1993.12.31.)에 흡수되면서 “특례업체”를 “지정업체”로 명칭 변경

## ■ 지정업체 선정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일정요건이나 규모를 갖춘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사 례

#### 병역법

제36조(지정업체의 선정 등)

- ① 병무청장은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중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농업회사법인과 사후관리업체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 사용례

- 지정업체 선정 추천, 지정업체 선정 기준, 지정업체 선정 실태조사

※ 유래

- 병역법(법률 제4685호, 1993.12.31.) 제81조(병무심의위원회) : 병무심의위원회에서 지정업체 선정
- 병역법(법률 제6058호, 1999.12.28.) 제36조(지정업체의 선정 등) : 병무심의위원회 폐지

## ■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

지정업체로 선정 받으려는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의 장으로부터 지정업체 선정 원서를 제출받아 병무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말한다.

### 사 례

#### 병역법 시행령

제73조(지정업체의 선정 추천 등)

- ② 지정업체로 선정 받으려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 지정업체 선정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른 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이하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사용례

- 병무청장은 지정업체 선정결과를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정업체의 장은 다음해의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필요인원을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 유래

-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6898호, 1973.10.11. 제정)제5조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음.

제5조(기간산업체 선정위원회)

① 기간산업체 선정위원회는 병무청에 둔다.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병무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농수산부, 상공부, 건설부, 교통부, 병무청 기타 관계기관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과 기간산업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이 폐지되고 병역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397호, 1994.10.6. 전부개정)으로 흡수되면서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 용어 사용

### ■ 지정업체 승계

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가 연구업무 또는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지정업체를 인수 또는 합병하는 경우를 말한다.

#### 사 례

#### 병역법

제36조(지정업체의 선정 등)

② 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정업체를 인수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 병역법 시행령

제75조(지정업체의 승계)

① 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1. 지정업체를 인수하거나 지정업체와 합병한 경우
2. (생략)

#### 사용례

- 지정업체 승계

※ 유래

- 병역법시행령 (법률 제14397호, 1994.10.6.) 제76조(지정업체 승계)에서 사용

### ■ 편입취소 유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인 때에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를 보류하는 것을 말한다.

**병역법**

제41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 ① 다만,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는 편입의 취소를 유보할 수 있음.

**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2(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유보)

- ①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의무종사를 하다가 해고된 사람이 법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편입취소의 유보(留保)를 원하는 경우에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유보원서 (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사용례**

-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유보, 편입취소 유보자 관리

※ 유래

- 병역법(법률 제5271호, 1997.1.13.) 제41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제1항 단서에서 편입취소 유보 용어 사용

**■ 해당분야**

전문연구요원은 대학원의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전문 연구분야,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의 기술자격·면허와 관련이 있는 생산·제조분야 등을 말한다.

**병역법**

제39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 ③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여야 한다.

**사용례**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해당분야,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 유래

-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3464호, 1991.9.11.) 제18조(기능요원 편입)에서

**해당분야 용어 사용**

- 병역의무특례규제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병역법(법률 제4685호, 1993.12.31.)으로 흡수

**■ 해운업체등**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할 수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해운업 및 수산업분야 업체를 말한다.

**사 례****병역법**

제23조의3(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이동 통보)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의 업체(이하 이 절에서 “해운업체 등”이라 한다)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그 해운업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중략) ~ 통보하여야 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2(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① 유조선, 컨테이너선, ~ (중략) ~ 알려야 한다.

1. 해운업분야 :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해상 화물운송사업 및 외항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장
2. 수산업분야 : 총톤수 2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원양어업이나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장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운업 또는 수산업분야 업체(이하 이절에서 “해운업체등”이라 한다)의 장으로부터 필요인원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해운업체등”이란 영 제40조의2 제1항 각 호의 해운업 및 수산업분야 업체를 말한다.

**사용례**

- 해운업체 등과 승선근무예비역, 해운업체 등으로 배정을 조정

• 병무행정 용어 해설집 •

## Ⅵ. 병력동원(훈련) 소집





## ■ 가용자원

예비군자원 중 법규보류자, 후위조정자, 긴급단계 동원지정 보류자, 직권말소자, 이민자, 재감자(형 확정자) 등 불용자원을 제외하고 실제 소집 가능한 자원을 말한다.

### 사 례

####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6조(동원자원의 파악)

① 다음 해의 동원지정을 위한 동원자원은 매년 3월 말일을 기준으로 병무행정의사결정지원 시스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파악한다.

1. 시·군·구별, 군별, 병과(특기별), 계급별, 연차별 가용자원 내역
2. 시·군·구별, 군별, 부대유형(증·창설, 손보)별, 계급별, 연차별 가용자원 내역

#### 사용례

- 연차별 가용자원 내역

## ■ 갑종사태(甲種事態, Class Kab Situation)

대규모의 적의 침투·도발로 인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 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 ■ 개별동원

집단동원이나 부대단위동원 개념에 대응하는 것이다. 육군의 장교, 부사관, 병의 통제특기 자원 및 소규모의 특수부대요원과 해·공군은 자원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어 부대단위동원이나 집단동원의 개념에 따른 특정 지역에서의 집중 동원이 불가능하므로 동원지정의 광역화가 불가피하여 개별동원에 의하여 충원할 수밖에 없다.

### 사 례

####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별지1호 동원소요표 작성 서식

⑦ 동원방법 : "개별동원", "집단동원", "부대단위동원"이냐에 따라 해당사항에 "○" 표시 『예』  
창설부대일 경우 : (개별) 증편, 손보

#### 사용례

- 동원방법 : "개별동원", "집단동원", "부대단위동원"

## ■ 개별지정

부대의 기능유지 및 전문성유지를 목적으로 특전사·기무사·정보사 등 부대관리요원 부대 및 육군(병)의 전국통제특기와 육·해·공군 영관장교, 해·공군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시·도 및 전국까지 확산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사 례

####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14조(개별지정) 개별지정부대 중 부대관리요원부대, 한미연합사(서울지방병무청, 인천·경기 지방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에 한함), 제315도하대대(서울지방병무청, 인천·경기지방 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에 한함), 병력동원지원부대, 민사부대, 심리전부대, 1군연합작전부대(강원지방병무청, 강원영동병무지청에 한함), 2·3군 미증원군 전개보장부대(2·3군 지역 관할 지방병무청에 한함), 국군심리전단(서울지방병무청에 한함), 국군서울지구병원(서울지방병무청에 한함)은 다음과 같이 자원관리 및 동원지정한다.

1. 개별지정부대의 지정대상자원은 별표 1과 같다.

#### 사용례

- 개별지정부대 전역자로서 미지정자원은 일반부대에 지정하지 아니하고 해당부대 대체지정 자원으로 활용한다.

## ■ 계엄령(戒嚴令, Martial Law)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대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국가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근거로 제정된 계엄법에 따라 발동하는 국가 긴급명령의 일종을 말한다.

## ■ 계획동원훈련소집

동원지정된 자원을 대상으로 사전에 계획된 훈련일정에 따라 동원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집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대비되는 것으로 불시동원훈련이 있는데, 동원절차상 소집 시기, 소집통지서 작성교부 등에 있어 구별된다.

### 사 례

####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5조(훈련소집의 형태)

- ① 훈련소집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실시하는 계획동원훈련소집과 사전예고 없이 실시하는 불시동원훈련소집으로 구분한다.

## ■ 공식일람표

병력동원 지정을 위하여 소집부대장이 소집부대의 계급, 병과, 주특기별 동원소요를 기재한 서식을 말하며, 지방병무청장은 전산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소집부대별로 소집중대, 소대, 분대 등을 전산에 입력 관리한다.

사 례

###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8조(지역배정)

- ② 지방병무청장은 수임군부대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역배정서에 의하여 예비군 읍·면·동대 단위 세부지역 배정서를 작성한 후 매년 10월 31일까지 전산입력하고, 공식일람표 및 소집부대 사항의 입력내용(소집부대, 소집중대, 소집일시)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사용례

- 공식일람표 및 소집부대사항의 입력내용

## ■ 국가동원(동원령)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한 나라의 인적, 물적자원, 재화 및 용역 등의 모든 국가 자원을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 운용하는 국가권력 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동원령”이란 국가동원을 시행하기 위한 일종의 국가긴급명령이라 할 수 있다.

사 례

### 사용례

- 국가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별도의 명령 없이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을 실시함.

## ■ 군사용 동원차량

현존 및 증·창설부대, 전시 예비군부대를 위한 동원차량으로 전쟁지속 기간 중 동원되어 군부대에서 사용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동원책임을 진다.

사 례

###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59조(집결지 및 인도·인접지 선정)

- ①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집부대별 집결지를 선정하고, 집결지 시설의 장에게 집결지 선정사실을 통보한다. 다만, 소집부대가 집결지인 경우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집행계획서 송부로 같음한다.

1. 군사용 동원차량으로 병력을 수송할 부대의 집결지는 지방병무청장이 시·도 관계관 및 소집부대장(거래소집부대장)과 협조 선정

제64조(병력수송계획)

- ① 지방병무청장은 시·도지사 및 수임군부대장과 협조, 소집부대별 동원소요표와 지역배정서에 의하여 수송계획(안)을 수립하고, 시·도로부터 배정받은 수송차량과 소집부대장이 제공하는 군사용 동원차량에 의하여 다음해의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수송계획을 작성하여 11월 말일까지 시·도에 통보하여 시·군·구 교통실시계획에 우선 반영되도록 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정되도록 협조한다.

### 사용례

- 군사용 동원차량으로 병력을 수송할 부대의 집결지, 군사용 동원차량으로 동원병력을 수송하는 소집부대의 수송계획

## ■ 군사특기

군복무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개인별 능력 및 경력 등을 감안하여 분류된 기호를 말한다.

### 사 례

###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43조(후순위조정 승인요청)

- ② 제1항에 따라 후순위조정 승인요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지역별 계급, 병과 및 군사특기 등 입영부대의 소집소요를 감안하여 후순위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후순위조정승인(미승인) 처리결과를 국방동원 정보체계시스템으로 전송함으로써 요청기관 또는 업체의 장과 예비군 읍·면·동대의 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같음한다.

### 사용례

- 주요 군사특기의 병과(특기)별 자원부족 시 소요충족을 위하여 대체지정이 가능한 유사특기를 설정 운영함.

## ■ 기동대

구, 시(구가 있는 시 제외) 및 군(시·군과 대등한 출장소) 소재지에 1개 소총 중대 규모로 편성하는 부대를 말한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5조(편성)

⑥ 지역예비군 및 직장예비군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군대원이 예비군조직 대상으로 된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예비군대원 중에서 선발하여 지역예비군인 시·군·자치구 단위의 기동대 또는 읍·면·동 단위의 타격대를 편성할 수 있다.

**사용례**

- 기동대는 구, 시(구가 있는 시 제외) 및 군(시·군과 대등한 출장소) 소재지에 1개 기동대를 편성함. 다만, 전방군단지역은 편성하지 않는다.

**■ 긴급단계 동원**

충무계획상 동원단계는 12단계로 구분하여 1년을 주기로 하며, 그 중 1단계~3단계까지(M일부터 M+6일까지) 7일간이 긴급단계이며, 중·창설 및 손실보충요원은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병력동원 지정 관리한다.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65조(병력수송 및 호송)

② 호송책임은 군부대장에게 있으며, 집결지에서 인도·인접지까지의 부대별 병력호송책임 및 호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타도 인도·인접지 : 타도에서 1·3군 전방지역으로 동원되는 긴급단계 동원병력 중 동원사단은 동원사단장이, 전방부대는 동원자원호송단장이, 2작전사 지역으로 동원되는 긴급단계 동원병력은 부대 책임지역을 기준으로 관할 수임군부대장이 책임을 분담하여 병력호송반을 편성·운영

**사용례**

- 긴급단계 동원병력은 부대 책임지역을 기준으로 관할 수임군부대장이 책임을 분담하여 병력호송반을 편성·운영함.

**■ 긴급단계 동원지정 보류**

병력동원소집대상자중 아래의 사람들은 긴급단계 동원을 보류한다.

- ☞ 긴급단계 동원지정 보류자(광부, 도서지역자원, 군사용 동원업체 종사자, 직장예비군 부대의 장 등), 법규보류자, 기동대/타격대 편성자, 병역법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장교, 부사관 임용 결격 사유로 제적된 자 등) 자

Ⅶ. 병력동원(동원) 규정

## 사 례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5조(긴급단계 동원지정 보류)

① 제4조의 병력동원소집대상자 중 긴급단계 동원지정 보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사용례**

- 긴급단계 동원지정 보류자와 제38조 규정에 의한 후순위조정자에 대하여는 매년 3월 말일 및 9월 말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유해소 여부를 확인

**■ 긴급동원**

긴급상황이나 정상 동원 불가능 등 전시 추가 동원소요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태가 긴박하여 주무부장관에게 동원을 요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소요기관이 직접 시·도지사에게 동원을 요청하고 시·도지사는 요청자원을 우선 동원해 주고 사후에 주무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 사 례

**사용례**- 수임군부대장은 관할지역 지방병무청 가용자원을 고려 긴급동원을 요청**■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 WMD)**

핵, 화학, 생물학무기 등과 같이 대량 살상 및 파괴를 유발하는 무기의 총칭을 말한다.

**■ 대체지정**

당초 동원지정되었던 사람이 전출 등 신상변동으로 동원 편제상 결원이 생겼을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동원배정 지역 내의 미지정 자원 중 동원지정 방침에 따라 동일(유사)한 계급, 병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 바꾸어 동원지정 하는 것을 말한다.

## 사 례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11조(동원지정방법)

② 동원지정 시 연령 및 연차초과자 등 부적격자만 대체지정함으로써 적소지정률을 향상시키고 당해년도 지정자원의 부대고정을 도모한다.

**사용례**

- 배정지역이 변경되거나 부대이동, 해체 등 사유 발생 시 해당지역 타 소집부대에 대체지정 한다.

**■ 동시동원**

군이 필요로 하는 장비와 업체 및 병원, 선박, 어선 등을 동원함에 있어서 자동차, 중기, 항공기 등은 동 조작요원과 병원, 운송, 건설, 하역, 정비, 전기통신공사, 대한항공회사 등 업체 및 선박, 어선을 동원할 때 이에 속해 있는 인원, 장비, 시설 등을 동시에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사 례**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3조(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권자)

③ 군사용 장비의 조작요원 또는 군사용업체의 종사자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5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에 우선하여 동시동원한다.

**사용례**

-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서 군사용 동원장비 및 군사용 동원업체와 동시동원될 경우에는 동시 동원이 우선함.

**■ 동원미지정자**

병력동원소집대상자 중에서 동원지정이 되지 않은 자원을 말하며, 동원지정자가 전출 등 신상이동 시 대체지정 또는 추가 동원지정 자원이 된다.

**사 례**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18조(전국단위 동원지정)

⑤ 전국단위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요청에서 소요의 120%(동원사단은 130%)를 적소 및 유사특기자로 1차 지정
2. 1차 지정결과 미지정 공석발생시 미지정 공석을 소요청에서 병무청으로 전송하면, 병무청 정보관리과장은 지방병무청별 지정우선순위 및 자원 활용 순위에 따라 연차이내 예비역 적소 특기자를 추출 소요청으로 전송하여 2차 지정

**사용례**

- 동원미지정자도 동원지정자와 동일하게 신상변동사항을 정확히 정리하는 등 자원관리를 하여 대체지정 자원으로 활용함.

## ■ 동원미참가자(동미참)훈련

개인 전기전술 및 병과 주특기 능력 향상과 향방 작전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훈련을 말하며, 그 대상은 장교/부사관 1~6년차 및 병 1~4년차로 동원 미지정자 및 동원훈련 연기한 사람 등이다. 통상 “동미참훈련”이라고도 한다.

### 사 례

#### 사용례

- 동원 미지정자와 동원훈련 연기자는 동원미참가자 훈련을 받는다.

## ■ 동원보직

동원지정된 예비군이 동원 후 소집부대에서 수행하여야 할 직책(임무)을 말하며, 소집 부대장이 평시에 보직을 부여 하는 것을 말한다.

### 사 례

#### 육군본부 동원운영지침서

동원지정자 명부 하단을 확인해 기록된 동원지정 일자를 확인하여 전년도부터 계속 해당부대로 지정된 병력은 소속과 직책을 바꾸지 말고 고정

#### 사용례

- 동원보직에 따른 제대별 전시임무를 숙지시키기 위하여 주특기별 훈련을 강화함.

## ■ 동원사단

평시에 기간요원 등 극소수의 병력으로 부대전제를 유지하다가 국가위기상황(전시)시 동원 자원을 보충 받아 부대를 완편하여 군 작전(전방전개)에 투입되는 부대를 말한다.

### 사 례

####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9조(동원지정의 범위)

② 동원지정은 동원소요의 120%(단, 동원사단은 130%)의 범위 내에서 지정한다. 다만, 지역별 동원자원과 동원속도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지정률을 조정할 수 있다.

#### 사용례

- 병력동원소집의 지정우선순위는 긴급단계 증편 및 창설부대의 전투부대에 중점을 두고 부대 형태별로는 동원사단, 정밀보충대대, 포병단, 향토사단, 상비사단, 기타부대 순으로 함.

## ■ 동원소요표

동원지정을 위하여 소집부대에서 지방병무청에 소요를 제기하는 표(서식)를 말하며, 부대 기능, 부대특성, 소집일시, 집결지, 인도인접지 등 소집부대관련 사항과 장교·준사관·부사관·병 등 신분별 동원소요가 기재되어 있다.

사 례

###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7조(동원소요 파악)

- ① 소집부대장(동원업무대행 부대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해의 부대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동원소요표를 매년 9월 3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 ■ 동원업무 대행부대

특정부대가 군소부대 또는 전시 창설부대를 대표하여 동원지정, 병력동원소집업무 등 제반 동원업무를 병무관서와 협조, 조정통제하고 문서거래를 하는 부대를 말한다.

사 례

###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73조(업무협조 체제)

- ② 육군 직할부대, 해군 및 공군은 본부 통제 하에, 국방부 직할부대는 소속사령부 통제 하에 소집부대 또는 동원업무대행부대와 해당 지방병무청간에 협조한다.

### 사용례

- 군사특기의 재분류 통제 및 권한은 관할 수임군부대장이 행하되, 공군은 독립 전대급 이상 동원업무대행부대장이 행함.

## ■ 동원자원호송단

집결지에서 인도인접지까지 병력호송을 담당하는 부대를 말하며 2005년부터 동원자원 관리대대에서 동원자원 호송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사 례

###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65조(병력수송 및 호송)

- ① 동원병력의 수송책임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있다. 다만, 수도권·2작전사 지역에서 1·3군 전방 군단지역으로 동원되는 병력수송에 한하여 병무청장 책임 하에 군(호송단)이 대행한다.

### 사용례

- 전방부대는 동원자원호송단장이, 2작사 지역으로 동원되는 긴급단계 동원병력은 부대책임 지역을 기준으로 관할 수임군부대장이 책임을 분담하여 병력호송반을 편성·운영함.

## ■ 동원지정

전시병력동원에 대비하여 계급, 병과 및 군사특기 등 입영부대의 동원소요에 맞도록 병력동원소집대상자를 부대단위, 집단 또는 개인별로 전시에 소집될 부대 및 직책을 평상시에 지정하여 두는 것이다. 이는 동원지역의 배정, 소집부대의 결정, 동원보직부여, 동원소집명부작성 및 신상이동자의 대체지정 등 전 과정을 총망라하므로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과 동의어로 사용한다.

### 사 례

####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력동원소집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원활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있다.

#### 사용례

- 다음 해의 동원지정을 위한 동원자원은 매년 3월 말일을 기준으로 병무행정의사결정지원 시스템에 의하여 파악함.

## ■ 동원지정업체

평상시에는 해당 업체 고유 업종의 영업활동을 하고 전시 또는 비상시에는 국가동원령에 의하여 동원되어 군수물자 또는 전시 민수물자의 생산이나 용역에 전용되는 업체를 말한다.

### 사 례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1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 ① 주무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자원·물적자원 중에서 중점관리 하여야 할 인력·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 사용례

- 관 및 동원지정업체 보유장비는 임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원을 유보함.

## ■ 동원지정자

전시 동원소요에 대하여 평시에 동원자원을 미리 지정하는 것으로 병력동원의 경우 전시를 대비하여 계급, 병과, 특기를 고려하여 소집부대의 동원소요에 맞도록 지정된 자를 말한다.

### 사 례

####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18조(전국단위 동원지정)

- ① 전국단위 동원지정 대상은 영관장교(육·해·공군), 육군의 전국통제특기 자원과 해·공군 모체부대 특기 자원에 한한다.

### 사용례

- 훈련대상은 긴급단계 및 지속 4단계 증·창설부대 동원지정자 중 장교, 부사관은 1~6년차, 사병은 1~4년차이다

## ■ 만기전역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법정 복무기간의 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으로 전역되어 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

### 사 례

#### 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

- ①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사람은 군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 있다.

### 사용례

- 이달 말 만기전역을 앞둔 병사

## ■ 모체부대

전시 창설부대의 인도·인접 및 부대편성 등의 업무와 평시 동원소집명부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요원을 운영하는 부대를 말한다.

## 사 례

## ■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18조(전국단위 동원지정)

- ① 전국단위 동원지정대상은 영관장교(육·해·공군), 육군의 전국통제특기 자원과 해·공군 모체부대 특기 자원에 한한다.

## ■ 방어준비태세(防禦準備態勢, Defense Readiness Condition ; DEFCON)

당면한 상황에 대처할 목적으로 부대를 일정한 준비태세로 유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4단계로 구분되고 상황이 긴박하게 진전됨에 따라 높은 단계로 전환하며 세부절차는 부대 예규로 규정되어 있다.

## ■ 방침보류

국방부장관이 국가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예비군교육훈련 일부 또는 전부를 보류하는 것을 말한다.

## 사 례

##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동원)

-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대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소집에 응하도록 동원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동원을 보류할 수 있다.

## ■ 사용례

- 방침보류자는 전면보류자와 일부보류자로 구분 편성한다.

## ■ 배정지역

병력동원 지정을 위하여 수임군부대장이 예비군의 거주지 또는 직장소재지를 고려하여 소집부대의 자원을 배분한 시·군·구 지역을 말하며,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 부대별로 세부 지역배정을 하여 전산에 입력하고 동원지정을 하게 된다.

###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12조(집단지정)

② 배정지역 내 읍·면·동대 자원으로 특기 고려 없이 지정

#### 사용례

- 배정지역 내 자원부족 시 군별, 통제특기 등 특성에 따라 인접지역 자원을 지정한다.

## ■ 법규보류

국방부장관이 국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비군에 대하여 동원(훈련) 및 예비군 교육훈련을 보류하는 것을 말하며, 주요 법규보류 대상자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등이 있다.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동원)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대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소집에 응하도록 동원을 명령할 수 있다.

#### 사용례

- 국외에 6개월 이상 여행 또는 체재중인 자는 법규보류자이다.

## ■ 병과관계표

동원지정 지침에서 설정하는 소요특기에 대하여 군별, 신분별로 지정가능한 병과(특기)간 관계를 나타내는 전산프로그램으로 해당병과(특기)의 소요에 대한 자원 부족 시 대체할 수 있는 유사병과(특기)를 설정하여주는 역할을 한다.

#### 사용례

- 검색하고자 하는 군별에 따른 신분을 선택하고 조회버튼을 누르면 해당 군별의 병과관계표가 화면 하단에 나타난다.

## ■ 병과일람표

각 병과(특기)의 특성을 입력, 수정, 삭제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으로 각 병과에 대한 통제구분 표시가 주목적이며 동원지정 또는 대체지정 시 장교, 부서관 및 통제특기의 지역 확산 범위를 지정하여주는 역할을 한다.

사 례

**사용례**

- 병과일람표를 관리하는 화면 : 최대 확산범위에 따른 군별 및 신분구분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해당 군별 및 신분구분에 따른 병과 일람내역이 화면하단에 보이게 됩니다.

■ **병력동원소집**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부대편성이나 작전에 소요되는 병력을 적기에 충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소집으로 지방병무청장이 소집부대별로 소집할 사람을 지정 관리한다.

사 례

**병역법**

제44조(병력동원소집 대상) 병력동원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 예비역
2.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3. 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법 시행령**

제95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별 소집 대상자 중에서 계급·병과 및 군사특기 등 입영부대의 소집에 필요한 소요를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사용례**

- 병력동원소집의 지정우선순위는 긴급단계 증편 및 창설부대의 전투부대에 중점을 두고 부대 형태별로는 동원사단, 정밀보충대대, 포병단, 향토사단, 상비사단, 기타부대 순으로 함.

■ **병력동원소집자 명부**

병력동원 지정된 사람을 소집부대별로 작성하며, 예속제대(본부, 1, 2, 3, 화기중대 등) 별로 구분하여 지방병무청에서 편철 관리하는 명부이다. 소집부대, 예비군부대, 동원자원호송단 등 군부대 및 관련기관은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전송하여 관리한다.

사 례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22조(병력동원소집자명부 작성 및 관리)

- ① 동원지정자 자료는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하여 각 군 참모총장, 수임군부대장, 소집부대장, 지역/직장예비군 부대장 등에게 전송한다. 다만,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접속하지 못하는 직장예비군부대장이 요청할 경우에는 병력동원소집자 명부를 출력하여 우편 송부할 수 있다.

**사용례**

- 지방병무청장은 연말 재지정 작업 후 입영부대별로 병력동원소집자 명부를 작성 관리한다.

■ **병력동원소집 전환**

병력동원훈련소집중인 예비군이나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5조에 의거하여 작전 동원 중인 예비군을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에 있어서 복무 중인 소집이나 동원을 해제함과 동시에 병력동원소집 복무로 바꾸는 절차를 말한다.

**사 례**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3조(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권자)

- ① 병력동원소집과 전시근로소집, 공익근무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의 병력동원소집 전환은 병무청장 책임 하에 실시한다.

**사용례**

- 공익근무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의 병력동원소집 전환은 병무청장 책임 하에 실시함.

■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동원령 선포 시 병력동원대상자를 소집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발행한 통지서를 말하며, 동원지정자에게 사전 교부한다.

**사 례**

**병역법**

제46조(병력동원소집)

- ② 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등의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미리 송달하게 할 수 있다.

**사용례**

-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미리 송달받은 사람은 병무청장이 신문·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로 공고하는 일시에 입영해야 함.

## ■ 병력동원소집 후순위조정자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서 전시 국가동원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방위산업체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소집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하여 긴급단계는 물론 지속단계에서도 소집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 ☞ 후순위 조정대상자

- 전시동원업무에 관련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 군무원
- 주한외국공관에 재직하고 있는 필수요원
- 방위산업체 또는 동원업체의 필수요원
- 기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필수요원

### 사 례

#### 병역법

제67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로서 전시 국가동원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방위산업체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 순위를 후순위로 지정할 수 있다.

#### 사용례

- 병력동원소집 후순위조정자는 긴급단계 동원지정을 하지 않음.

## ■ 병력동원지원부대

예비군집행관요원, 징병전담의사로 구성되는 수임군부대 보충대 전시편제에 반영하여 창설되는 부대(제주지방병무청은 해군 편제에 반영)로 M일부터 M+7일까지 지방병무청으로 파견 복무한다.

### 사 례

####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14조(개별지정) 개별지정부대 중 부대관리요원부대, 한미연합사(서울지방병무청, 인천·경기 지방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에 한함), 제315도하대대(서울지방병무청, 인천·경기지방 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에 한함), 병력동원지원부대, 민사부대, 심리전부대, 군연합작전부대(강원지방병무청, 강원영동병무지청에 한함), 2·3군 미증원군 전개보장부대(2·3군 지역 관할 지방병무청에 한함), 국군심리전단(서울지방병무청에 한함), 국군서울지구병원(서울지방병무청에

한함)은 다음과 같이 자원관리 및 동원지정한다.

1. 개별지정부대의 지정대상자원은 별표 1과 같다.

### 사용례

- 병력동원지원부대는 지방병무청 소재지의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함) 또는 구가 있는 시의 경우 인접 구 자원으로 지정하며,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경우 인천시 지역자원도 지정할 수 있다.

## ■ 병력동원집행관

동원병력을 군부대에 인도·인접하기 위하여 편성된 집행요원으로 지방병무(지)청 직원으로 편성되며,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예비군과 공익근무요원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사 례

####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52조(구성 및 임무)

① 제51조에 따른 병력동원집행관의 구성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사용례

-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12월 말일까지 병력동원집행관을 임명하고, 별지 제40호 서식의 병력동원집행관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함.

## ■ 병력동원훈련소집

병력동원소집 지정자 중에서 동원절차의 점검, 동원능력의 측정, 부대편성, 개인 및 부대의 전술 숙달을 위하여 실시하는 소집을 말하며, 군부대에서 일정기간(2010년 현재 2박 3일) 동안 동원(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사 례

#### 병역법

제49조(병력동원소집 대상 등) 병력동원소집은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훈련이나 점검을 위하여 병력동원 소집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 사용례

- 당해년도 전역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종료부대에 동원지정하되, 병력동원훈련소집은 실시하지 않음.

### ■ 부대고정

병력동원 소집대상자에 대한 동원지정 시 향방예비군, 계급 상이자, 비적소 특기자 등 부적격자만 대체지정 함으로써 적소지정률을 향상시켜 전투력 발휘를 극대화하고 전년도 지정자원에 대하여 가급적 입영부대의 고정을 도모하여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 사 례

####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11조(동원지정방법)

- ② 동원지정 시 연령 및 연차초과자 등 부적격자만 대체지정함으로써 적소지정률을 향상시키고 당해년도 지정자원의 부대고정을 도모한다.

#### 사용례

- 부대고정을 도모함.

### ■ 부대단위지정

즉각적인 전투력 발휘를 목적으로 동원사단, 향토사단, 상비사단, 기간대대를 대상으로 지정하며, 가급적 1개 읍·면·동대 자원으로 1개 중대의 편제에 일치하도록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사 례

####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11조(동원지정방법)

- ③ 동원지정은 육군은 집단지정, 부대단위지정 및 개별지정 방법에 의하고 해·공군은 개별지정 방법에 의한다.

#### 사용례

- 부대단위지정 및 개별지정방법

### ■ 부사관

명칭 변경 전에는 하사관이라 불리었으며, 하사·중사·상사·원사의 계급을 가진 육·해·공군의 사병을 가리킨다.(일반하사는 부사관에 포함되지 않음) 부사관은 통상 육군의 분대와 같은 최소 규모의 전투 집단을 지휘하거나, 정비·수리 등의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분야에 기술자로 배치되고 있으며, 각 급 제대의 최고참 부사관은 선임 부사관으로서 지휘관을 보좌하고, 사병과 지휘관과의 교량적 역할을 수행한다. 통상적으로 소대장을 보좌하는 하사/중사를 선임하사, 중대장을 보좌하는 상사/원사를 인사계, 대대급 이상 부대에서 지휘관을 보좌하는 원사(상사)를 주임상사라고 부른다.

사 례

**군인사법**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적용한다.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

**사용례**

-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 군인사법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군 연령정년이 될 때까지.

■ **불시동원훈련소집**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동원절차 및 집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사전예고 없이 동원 지정자에 대하여 사전에 교부된 병력동원소집통지서에 의하여 실시하는 훈련소집을 말하며 계획동원훈련소집과 구분된다.

사 례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5조(훈련소집의 형태)

- ① 훈련소집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실시하는 계획동원훈련소집과 사전예고 없이 실시하는 불시동원훈련소집으로 구분한다.

**사용례**

- 불시동원훈련소집 대상부대

■ **불용자원**

소집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병역자원을 말하며, 동원불용자원은 후순위조정자, 법규 보류자, 긴급단계 동원지정 보류자, 직권말소자, 이민자, 수형자(형 확정자) 등을 말한다.

사 례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74조(집행계획서 작성 및 보고 등)

- ①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집행계획서에 첨부할 동원자원, 소요 및 지정현황은 별지 제4호 서식부터 제34호 서식까지에 의하며, 현황 첨부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Ⅶ. 병력동원(훈련) 소집

## 2. 불용자원 내역별 현황

### 사용례

-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불용자원은 불용사유, 코드, 기관(업체)명을 해당 화면에서 입력 정리함.

## ■ 비상사태(非常事態, Extraordinary Situation)

1. 사전적 의미 : 평상시와 다른 뜻밖의 긴급사태
2. 현행 법령상의 의미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3. 포괄적 의미 : 적의 침공이나 테러, 자연적 재해 및 인위적 재난으로 국가기능 또는 국민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군사 및 비군사적인 모든 현상

## ■ 사용동원

장비 및 업체를 동원자원 사용기관과 동원업무를 수행하는 업체가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한 동원으로서, 일반적으로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등의 장비와 업체를 동원하게 된다.

### 사 례

### 사용례

- 군이 사용동원하는 장비나 업체의 조작요원 및 종사자로서 동시동원된 자 중 병력동원 소집대상자는 병역법 시행령 제169조 제3항에 의해 병력동원소집으로 전환한다.

## ■ 사전교부

긴급단계 동원속도를 단축하기 위하여 증·창설부대 동원지정자와 M+20일까지 손실 보충부대 지정자에 대하여 평상시에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교부해 두는 것을 말하며 동원령 선포와 동시에 동원대상자는 지정된 일시, 장소에 입영하여야 한다.

### 사 례

### 사용례

- 동원명령서의 사전교부 대상자는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이 지정된 자로 함.

## ■ 삭제자 명부

동원지정자 중 신상변동으로 지정자 명단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의 명부를 말한다.

### 사 례

####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22조(병력동원소집자 명부 작성 및 관리)

② 병력동원소집자 명부의 관리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대체지정자는 반드시 당초(최초)지정자 명부를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

다. 대체지정 후 삭제자 명부는 소집부대별, 예비군부대별로 생성하여 소집부대별 삭제자 명부는 병력동원소집자 명부 정리 후 대체사유 확인을 위하여 지방병무청에서 다음해 12월 31일까지 보관 관리하고, 예비군부대별 삭제자 명부는 예비군부대 송부용으로 활용하도록 하되,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의하여 송·수신할 수 있다.

#### 사용례

- 대체지정 후 삭제자 명부

## ■ 상비사단

평상시에 편제병력의 75% 이상 현역 병력을 유지하고 전시에 나머지 공석 인원을 동원 예비군으로 부대를 완편하여 군 작전에 임하는 부대(사단)를 말한다.

### 사 례

####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10조(동원지정의 우선순위)

① 동원지정은 사단특성별로 동원사단, 야포단, 향토사단, 상비사단, 기타부대의 순으로 지정하고, 동일사단 내에서는 전투근무지원부대, 전투지원부대, 전투부대 순으로 지정한다.

#### 사용례

- 병력동원소집의 지정우선순위는 긴급단계 증편 및 창설부대의 전투부대에 중점을 두고 부대 형태별로는 동원사단, 정밀보충대대, 포병단, 향토사단, 상비사단, 기타부대 순으로 함.

## ■ 선박예비군

지방해양항만청에 등록된 선박(국내 연안을 취항하는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의 선원과 지방해양항만청 직원 중 예비군 편성대상자 및 지원자가 편성된 직장예비군을 말한다.

## 사 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제4조(선박에 대한 예비군편성)

- ① 어선단을 이루어 출어하는 경우에는 그 출어기간 중 승선한 예비군 대원을 통합하여 어선단예비군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사용례**

- 선박예비군이라 함은 지방해양항만청 직원 중 예비군 편성대상자와 지방해양항만청에 등록된 선박의 선원으로서 예비군 편성대상자를 말하며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관리함.

**■ 소집부대**

병력동원 소집된 사람이 동원지정된 보직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부대로, 총무 3600국방부집행계획 및 각 군 병력동원 운영계획, 병무청 집행계획에 열거된 단위부대를 말하며, 개략적으로 전투부대는 대대급, 전투근무지원부대는 중대급이다.

## 사 례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7조(동원소요 파악)

- ① 소집부대장(동원업무대행 부대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해의 부대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동원소요표를 매년 9월 3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사용례**

- 소집부대장은 동원소요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소집부대사항 입력**

주요 동원지정관련 전산화면에 소집부대명, 소집부대 관리번호, 동원일시, 인도·인접지, 부대유형, 특수부대 등을 입력하는 과정을 말한다.

## 사 례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8조(지역배정)

- ② 지방병무청장은 수입군부대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역배정서에 의하여 예비군 읍·면·동대 단위 세부지역 배정서를 작성한 후 매년 10월 31일까지 전산입력하고, 공석일람표 및 소집부대사항의 입력내용(소집부대, 소집중대, 소집일시)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사용례**

- 동원지정 시 소집부대사항의 입력 철저

**■ 소집일시**

병력동원 지정된 사람이 소집부대 또는 집결지에 도착하여야 할 소집통지서에 지정된 일시를 말한다.

**사 례**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8조(지역배정)

② 지방병무청장은 수임군부대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역배정서에 의하여 예비군 읍·면·동대 단위 세부지역 배정서를 작성한 후 매년 10월 31일까지 전산입력하고, 공석일람표 및 소집부대사항의 입력내용(소집부대, 소집중대, 소집일시)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사용례**

- 지방병무청장은 공석일람표 및 소집부대사항의 입력내용(소집부대, 소집중대, 소집일시)과 일치 여부를 확인함.

**■ 소집점검**

전시 즉각적인 동원태세 확립을 위하여 전시근로소집, 긴급단계 동원지정자에 대한 개인의 신상파악, 신상변동자 정리, 소집부대 동원보직 확인 및 부대편성, 동원절차 등을 숙지시킬 목적으로 소집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사 례**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57조(교육훈련)

② 예비군집행관에 대하여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소집점검 시간 등을 활용하여 임무고지 및 집행요령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사용례**

- 예비군집행관에 대하여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소집점검 시간 등을 활용하여 임무고지 및 집행요령 등을 교육하여야 함.

## ■ 소집점검훈련

병력동원소집지정자 중 5~6년차 병을 대상으로 전시동원편성 및 임무확인, 동원소집 절차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훈련하는 것을 말하며, 훈련시간은 4시간이다.

사 례

### 사용례

- 월별 훈련소집 집행현황은 별지 제85호 서식의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현황에 의하여 작성 보고하되, 전시근로소집대상자의 소집점검훈련 현황은 별지로 구분하여 작성함.

## ■ 손실보충부대

전투 등에 의하여 발생한 부족(손실)병력을 충원하는 부대로 지속 4단계 M+30일까지 소요는 평시에 지정하고, 지속 5단계 M+31일 이후 소요는 소집 4일 전에 지정한다.

사 례

###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9조(동원지정의 범위)

- ① 긴급단계 소집부대는 평시에 지정 관리하고 정상단계 소집부대는 소집일 4일전에 지정한다.  
다만, 정상단계 증·창설부대와 M+20일의 손실보충부대는 평상에 지정 관리한다.

### 사용례

- 병은 전역 후 4년차 이내 자원은 증·창설부대, 손실보충부대 순으로 지정하되, 자원부족 시에는 전역 후 5년차 이상 8년차까지 자원 중 최근 전역자 순으로 지정함.

## ■ 수송동원

전시엔 인원 및 물자 등의 수송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동원하는 것을 말하며 동원 대상은 차량, 선박, 항공기 등 장비와 운송업체, 정비업체, 항만하역업체 등이다.

사 례

### 사용례

- 국가동원령 선포 시에는 전시 수송동원 운영계획에 의거 평시 동원지정 되어있는 차량을 즉각 동원하여 운용 함.

## ■ 수임군부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예비군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여단급 이상의 군부대를 말한다.

사 례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14조(권한의 위임·위탁)

- 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하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사용례

- 지방병무청장은 직장의 장이 직장예비군 편성승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관할 수임군부대장과 협의한 후 승인하는 경우에는 직장예비군 편성승인서를 당해 직장의 장에게 교부함.

## ■ 시·군·구 통제특기

인접 시·군·구 통제 특기보다 비중이 낮고 동원소요가 많은 특기로서 배정지역 내 자원 부족 시 해당 시·군·구까지 확산하여 개별 충원하는 특기를 말한다.

사 례

###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17조(일반하사 및 병 동원지정)

- ② 육군은 배정지역 내 자원으로 최대한 지정하고 자원부족 시 통제특기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산 지정한다.
4. 시·군·구 통제특기 : 배정지역 내 해당특기자로 최대한 지정하고, 자원부족 시 해당 시·군·구까지 확산지정

### 사용례

- 시·군·구 통제특기는 배정지역 내 해당특기자로 최대한 지정

## ■ 시·도 통제특기

중요기술특기로서 배정지역 내 자원부족 시 지방병무(지)청 내까지 확산하여 개별적으로 군의 소요를 충원하는 특기를 말한다.

사 례

###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17조(일반하사 및 병 동원지정)

- ② 육군은 배정지역 내 자원으로 최대한 지정하고 자원부족 시 통제특기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산 지정한다.
2. 시·도통제특기 : 배정지역 내 해당특기자로 최대한 지정하고, 자원부족 시 관할 지방병무청의 지역범위까지 확산지정

#### 사용례

- 시·도 통제특기는 자원부족 시 관할 지방병무청의 지역범위까지 확산

## ■ 신상변동자

예비군의 병역처분변경, 거주지이동, 사망, 이민, 해외 출국, 행방불명, 재감, 병력동원 소집, 후순위조정 등 신상이 변동된 사람을 말한다.

#### 사 례

###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24조(신상이동자 관리)

- ① 병무청 정보관리과장은 행정안전부 주민전산자료에 의하여 거주지 이동 등에 따른 신상변동 사항을 추출, 해당 지방병무청으로 전송한다.

#### 사용례

- 병무청장은 행정안전부 및 법무부 등으로부터 예비군 자원의 신상변동 인수자료 및 신상 변동자를 지방청별로 분류하여 자료를 전송함.

## ■ 쌍용훈련

동원사단 초전 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전시 동원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육군참모총장 통제 하에 2박 3일 동안 실시한다.

#### 사 례

###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쌍용훈련”이란 동원사단의 초전 적응능력 배양을 위해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 사용례

- 쌍용훈련, 충무훈련 등 대단위 동원훈련 시에는 반드시 지방병무청장 또는 과장급 이상 직원이 집결지 내외의 경계상태, 차량안전운행, 대체차량 활용계획 등 제반사항을 점검함.

## ■ 어민예비군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5톤 이상 동력어선의 선주 및 승선원과 수산업협동조합 직원 중 예비군 편성대상자 및 지원자가 편성된 직장예비군을 말한다.

### 사 례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 제5조(편성)

- ⑤ 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포구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을 단위로 하여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의 직원과 당해 항포구에 거주하는 어선의 선주 및 승선원(선원 기타 어업을 생업으로 승선하는 자를 말한다)으로써 제2항의 직장예비군인 어민 예비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동일한 항포구 내에 수개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 있는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편성하되 편성 대상인원이 많은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의 장을 직장의 장으로 한다.

##### 사용례

- 어민예비군은 선적지를 기준 항포구 단위로 자원 수에 관계없이 단일 어민대를 편성함. (선적지와 조업근거지가 상이할 때에는 조업근거지 항구에 편성할 수 있다.)

## ■ 여단

여단은 사단보다는 작고 연대보다는 큰 부대로 단일병과부대(공병여단, 기갑여단, 포병여단)나 특수작전부대(공수여단) 등이 해당된다.

### 사 례

#### 향토예비군설치법

##### 제5조(동원)

- ④ 예비군대원은 제1항에 따라 동원되었을 때에는 지휘관(예비군 여단·연대·대대·중대·소대 및 분대의 장을 포함한다)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사용례

- 직장예비군은 직장을 단위로 그 소속 예비군자원으로 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 분대로 편성함.

## ■ 연차이내 자원

예비군 중에서 상대적으로 연령이 연소한 자원으로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전역 6년차, 병은 전역 4년차 이내의 병력동원훈련대상이 되는 자원을 말한다.

## 사 례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18조(전국단위 동원지정)

- ⑤ 전국단위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1차 지정 결과 미지정 공석 발생 시 미지정 공석을 소요청에서 병무청으로 전송하면, 병무청 정보관리과장은 지방병무청별 지정우선순위 및 자원 활용 순위에 따라 연차 이내 예비역 적소특기자를 추출하여 소요청으로 전송하여 2차 지정

**사용례**

- 전시초기 전투력 발휘보장을 위하여 연차이내 자원 위주로 동원지정한다.

**■ 연차초과자**

예비군 중에서 장교/부사관 7년차~당해 계급 연령정년까지, 병은 5년차~8년차를 말한다. 연차 이내 자원에서 군 소요에 충원할 수 없는 경우 연차초과자(병은 6년차까지)도 동원 지정 대상이 된다.

## 사 례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11조(동원지정방법)

- ② 동원 시 연령 및 연차초과자 등 부적격자만 대체지정함으로써 적소지정률을 향상시키고 당해년도 지정자원의 부대고정을 도모한다.

**사용례**

- 동원지정 시 연령 및 연차초과자 등 부적격자만 대체지정함으로써 적소지정률을 향상시키고 당해년도 지정자원의 부대고정을 도모함.

**■ 예비군**

전시, 사변 등의 유사시를 대비한 예비병력을 말하며, 예비군은 예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경우 현역군 계급별 연령 정년까지, 예비역 병 및 보충역의 경우 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달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편성한다.

## 사 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2조(임무) 향토예비군(이하 “예비군”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예비군의 조직)

- ① 예비군은 「병역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람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으로 조직한다. 다만, 향토를 방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도 예비군으로 조직할 수 있다.

#### 사용례

- 예비군은 적 또는 무장공비의 공세와 대남유격에 대처, 향토방위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다.

### ■ 예비 소요(지정)

동원지정 시 예측되는 사고를 감안하여 정예지정에 추가하여 예측 사고율만큼 미리 지정하여 두는 것으로서, 병력동원의 경우 동원소요의 20%(증·창설부대) 또는 30%(동원사단 및 정밀보충부대)를 지정한다.

사 례

#### 사용례

- 해당지역에 배정된 전체 소집부대의 1차 지정이 끝난 후 예비소요 10%(동원사단은 20%)를 일반자원으로 2차 지정하며, 잔여 예비소요에 대하여 학생예비군 자원으로 3차 지정함.

### ■ 예비역

현역을 마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한다. 예비역은 일반적으로 현역을 마치고 편입되는 사람으로, 현역 복무기간을 다 마치지 아니하고 예비역에 편입되는 상근예비역은 예외적인 경우이다. 전시 특례로 의무·법무·군중분야의 자격을 가진 40세 이하의 사람에 대하여는 예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사 례

#### 병역법

제2조(정의 등)

-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소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 중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하여 현역복무외의 군복무 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 사용례

- 병력동원소집대상은 예비역,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이다.

### ■ 우발계획

예측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으로 본 계획의 시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한 예비계획을 말한다.

Ⅶ. 병력동원(총력)  
장 소

사 례

**사용례**

- 지방병무(지)청장은 총원미달, 병력손실 등 긴급추가동원에 대비하여 우발계획을 수립하고, 가용자원을 읍·면·동별, 연차별, 신분별로 파악 관리함.

■ 유사특기

비슷한 기술 분야의 특기로서 소요특기 부족 시 대체지정할 수 있는 유사분야의 특기를 말한다.

사 례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17조(일반하사 및 병 동원지정)

④ 특기별 확산지정 후에도 자원부족 시 유사특기로 동원지정하며, 유사특기별 동원지정범위는 병력동원소집계획에 의한다.

**사용례**

- 준사관 및 부사관 특기별 자원부족 시 유사특기로 동원지정한다.

■ 을지연습

을지연습의 ‘을지(乙支)’는 ‘을지문덕(乙支文德)’에서 유래하였으며, 군관민이 모두 참여하는 국가비상 사태를 준비하는 도상훈련을 말한다.

■ 읍·면·동대

읍·면·동(동등 출장소) 행정구역 단위로 편성하는 예비군부대를 말한다.

사 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5조(편성)

① 지역예비군은 거주지를 단위로 하여 연대·대대·지역대·중대·소대·분대(이하 “부대”라 한다)로 편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예비군 자원과 작전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대를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사용례**

- 지역예비군중대장(읍·면·동대장과 기동대장을 포함함. 이하 같다)의 신분은 별정군무원 5급 상당으로 함.

## ■ 응소

소집대상자가 소집통지서를 받고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도착하여 소집에 응하는 것으로, 병역법상 “입영”이란 용어로 통일하였다.

### 사 례

####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별지 35호 : 상기 인원을 병력동원소집(전시근로소집) 응소자로 정히 인도·인접함.

#### 사용례

- 동원지정자 중 미 응소자는 색출 즉시 입영조치하고 합동통제소 및 검문소에서 색출된 미 응소자는 합동통제소요원 등이 소집통지서를 작성하여 현장에서 교부 후 보충부대에 인계함.

## ■ 의명

『상사(상급부대)의 명령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 사 례

####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3조(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권자)

- ②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및 제54조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을 의명 실시한다.

#### 사용례

-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을 의명 실시함.

## ■ 인도인접지

“보충선”이라고도 하며 병무청과 소집부대가 예비군을 인도인접하기 위하여 선정된 부대 또는 장소를 말하며, 통상 동원업무대행부대가 되나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 사 례

#### 병역법 시행령

제97조(병력동원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 ① 입영부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인도·인접지를 선정하고 병력동원소집에 의하여 입영할 사람의 인도·인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입영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사용례

- 인도·인접지는 병역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해 소집부대장(동원업무 대행부대장)이 해당 지방병무(지)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함.

## ■ 인접 시·군·구 통제특기

시·도 통제특기보다 비중이 낮은 특기로서 배정지역 내 자원 부족 시 수입군부대 관할 지역에 인접 시·군·구까지 확산하여 개별 충원하는 특기를 말한다.

### 사 례

####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17조(일반하사 및 병 동원지정)

- ② 육군은 배정지역 내 자원으로 최대한 지정하고 자원 부족 시 통제특기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산 지정한다.
3. 인접 시·군·구 통제특기 : 배정지역 내 해당특기자로 최대한 지정하고, 자원 부족 시 동일 수입군부대 지역의 인접 시·군·구까지 확산 지정

### 사용례

- 인접 시·군·구 범위는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며, 인접 시·군·구 통제특기 소요에 지정된 유사특기 지정자는 인접 시·군·구 관내에서 주소를 추적 관리한다.

## ■ 일반하사

본인의 바람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로 병사와 복무기간이 동일하다. 병력동원 소집(지정)과 연차적용도 병사와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다.

### 사 례

### 사용례

- 일반하사 자원 부족 시 동일특기 병장으로 동원지정할 수 있으며, 병 소요에는 병의 전(前) 계급으로 동원지정함.

## ■ 임무고지

자원관리 주무부장관이 필요한 인력, 물자 등의 자원 중 중점관리 하여야 할 인력, 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하였거나 변경하였을 때, 지정받은 인력대상자,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임무를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1조(중점관리대상 자원의 지정)

-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 인력·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된 자와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정된 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사용례

- 예비군집행관에 대하여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소집점검 시간 등을 활용하여 임무고지 및 집행요령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 ■ 작전동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현역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한 동원에 대비하거나, 무장공비가 침투하였거나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의 경비 또는 작전임무수행을 위하여 예비군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이 상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동원을 명할 수 있으며, 병역법에 의한 병력동원소집과 구별된다.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10조(동원의 방법)

- ③ 국방부장관은 작전임무수행에 대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군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명령서를 미리 예비군대원에게 송달하게 하고,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동원을 명하게 할 수 있다.

#### 사용례

- 국가동원령 선포 시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작전동원 중인 사람은 즉시 병력동원소집으로 전환 조치함.

## ■ 장교

군인의 신분 구분상 위관급(尉官級) 이상의 계급에 속하는 간부의 총칭으로 계급에 따라 장관급장교(준장, 소장, 중장, 대장) 영관급장교(소령, 중령, 대령) 위관급장교(소위, 중위, 대위)로 나뉘며 보통 소대장은 소위/중위, 중대장은 대위, 대대장은 중령, 연대장은 대령, 사단장은 소장, 군단장은 중장, 군사령관은 대장으로 보직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 사 례

## 군인사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적용한다.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

## 사용례

- 동원지정자를 대상으로 육·해·공군 순서에 의거하여 장교, 부사관으로 구분하여 동원지정 부대별, 계급별로 편성함.

## ■ 적소특기

각 군(소집부대)에서 요구하는 병력동원소집에 대한 소요특기와 동일한 특기를 말한다.

## 사 례

##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10조(동원지정의 우선순위)

- ③ 연차, 특기, 역종별 동원지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동일연차 내(동원예비군, 향방예비군으로 구분)에서는 적소특기자를 유사특기자보다 우선 지정함.

## 사용례

- 동일연차 내에서는 적소특기자를 유사특기자보다 우선지정함.

## ■ 전국통제특기

해당 특기소지자만 동원지정할 수 있으며, 자원부족 시 영관장교, 정보사요원, 공군조종사는 전 지방병무청까지 확산지정하고 이 외의 자는 인접지방병무청 권역별까지 지정하되, 잉여자원은 차기 대체지정 시까지 미지정 자원으로 관리한다.

## 사 례

##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17조(일반하사 및 병 동원지정)

- ② 육군은 배정지역 내 자원으로 최대한 지정하고 자원부족 시 통제특기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산 지정한다.
1. 전국통제특기 : 배정지역 내 해당특기자로 최대한 지정하고, 자원부족 시 전국으로 확산 지정하되, 제18조에 의한다.

### 사용례

- 전국단위 동원지정대상은 영관장교(육·해·공군), 육군의 전국통제특기 자원과 해·공군 해당복부부대 특기 자원에 한함.

## ■ 전시근로소집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소집을 말하며, 병력동원소집에서 제외된 보충역과 20~40세까지의 제2국민역이 대상자이다.

### 사 례

### 병역법

제53조(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 ① 전시근로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사용례

- 지방병무청장은 각 군 전시근로소집 운영계획에 의하여 소집부대별 전시근로소집 소요를 확인함.

## ■ 전투근무지원부대

전투부대와 전투지원부대를 인사, 민사, 군수 및 기타의 행정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부대로 보급, 탄약, 수사, 교육훈련부대 등이 해당된다.

### 사 례

###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10조(동원지정의 우선순위)

- ① 동원지정은 사단특성별로 동원사단, 야포단, 향토사단, 상비사단, 기타부대의 순으로 지정하고, 동일사단 내에서는 전투근무지원부대, 전투지원부대, 전투부대 순으로 지정한다.

### 사용례

- 동원지정은 동일사단 내에서는 전투근무지원부대, 전투지원부대, 전투부대 순으로 지정함.

## ■ 전투부대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작전부대로, 사격과 기동으로 적에게 접근하여 격멸 포획하고 지형을 탈취· 확보한다. 육군의 보병/기갑부대 및 공군의 전투비행단 등이 해당된다.

## 사 례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10조(동원지정의 우선순위)

- ① 동원지정은 사단특성별로 동원사단, 야포단, 향토사단, 상비사단, 기타부대의 순으로 지정하고, 동일사단 내에서는 전투근무지원부대, 전투지원부대, 전투부대 순으로 지정한다.

**사용례**

- 병력동원소집의 지정 우선순위는 긴급단계 증편 및 창설부대의 전투부대에 중점을 두고, 부대 형태별로는 동원사단, 정밀보충대대, 포병단, 향토사단, 상비사단, 기타부대 순으로 함.

**전투지원부대**

전투부대에 제공되는 화력지원과 작전지원을 하는 부대로 포병, 항공, 공병, 헌병, 통신, 정보, 화학부대 등이 해당된다.

## 사 례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10조(동원지정의 우선순위)

- ① 동원지정은 사단특성별로 동원사단, 야포단, 향토사단, 상비사단, 기타부대의 순으로 지정하고, 동일사단 내에서는 전투근무지원부대, 전투지원부대, 전투부대 순으로 지정한다.

**정밀보충대대**

전방 전투부대의 전투역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병력, 물자, 탄약을 적시에 대대단위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대를 말한다.

## 사 례

**사용례**

- 2010년도 정밀보충대대 편성은 보병 30개 대대(32사 : 12개, 50사 : 18개) 지역배정을 위해 관할 지방병무청과 사전 협조한다.
- 정밀보충대대는 정밀 부대편성 충족을 위하여 부대단위로 지정
- 동원소요 대비 120%(동원사단 정밀보충대대 130%) 지정

**준사관**

준사관은 준위를 말한다. 계급 상으로는 원사 위 소위 아래에 속하며, 군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군인사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적용한다.

-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

**사용례**

- 준사관 및 부사관 특기별 자원부족 시 유사특기로 동원지정하며, 유사특기 동원지정범위는 병력동원소집계획에 의함.

**■ 중간집결지**

중간집결지는 개별입영자 및 지연도착자의 교통편의와 입영 보장을 위하여 교통 요충지에 지방병무청장이 선정하는 곳을 말한다.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59조(집결지 및 인도·인접지 선정)

- ①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집부대별 집결지를 선정하고, 집결지 시설의 장에게 집결지 선정사실을 통보한다. 다만, 소집부대가 집결지인 경우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집행계획서 송부로 같음한다.

**사용례**

- 중간집결지는 병력동원소집계획서의 집결지를 원칙으로 하되 교통 혼잡이나 장소협소 등 집결지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집부대와 협조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Ⅶ. 병력동원(병력)  
1. 소집

**■ 증편부대**

평시 존재하는 부대가 전시편제로 전환됨에 따라 확장되는 것을 말한다.

**사용례**

- 대규모 증편부대의 동원속도 단축 및 즉각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하여 부대단위 지정을 함.

**■ 지속단계 동원**

상비군부대의 증편, 창설 또는 손실보충을 위하여 긴급단계 이후 실시하는 동원을 말하며, 4단계부터 12단계까지 총9단계로 구분된다.

**사 례**

**사용례**

- 우발사태 및 지속단계 동원에 대비한 병력동원소집통지서는 지속단계 소요의 160% 이상을 지방병무청에서 백지로 보관함.

**■ 지역대**

예비군관리대대와 읍·면·동대의 중간 제대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예하 예비군 중대를 지휘 통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구·시·군 단위로 단일부대 편성을 원칙으로 향방대대 편성 전까지 운영되는 부대를 말한다.

**사 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5조(편성)

① 지역예비군은 거주지를 단위로 하여 연대·대대·지역대·중대·소대·분대(이하 “부대”라 한다)로 편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예비군자원과 작전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대를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사용례**

- 지역대는 구·시·군 단위 단일부대 편성을 원칙으로 향방대대 편성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하되, 당해년도 편성지침에 의거해 운영함.

**■ 지역배정**

소집부대별 전시동원소요를 충원하기 위하여 동원자원의 분포 및 거리, 수송로 등을 감안하여 동원자원 활용(동원지정)지역을 시·군·구, 읍·면·동 단위로 소집부대에 배 분하는 것이다. 수임군부대의장이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배정한다.

**사 례**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6조(동원자원의 파악)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파악한 동원자원 현황을 지역배정서 작성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수임군부대장 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사용례**

- 지역 내 배정부대가 부대이동, 해체 등으로 자원 잉여지역 발생 시 해당지역 타 소집부대에 대체지정 시 활용하고 지역배정 시 조정함.

## ■ 지역 확산

배정지역(시·군·구)내 자원 부족 시 신분(장교, 부사관), 통제구분(육군 병), 군별(해·공군) 등 특성에 따라 배정지역 외의 자원을 지정하고 신상이동 시 추적관리하기 위하여 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 사 례

#### 사용례

- 수임군부대 관할구역 단위로 배정 시·군·구를 설정하고 지역 확산은 최소한으로 함.

## ■ 지휘서신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들에게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소 시 교통편 및 준비물 등 안내를 위하여 소집부대장이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들에게 발송하는 안내문을 말한다.

### 사 례

####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9조(지휘서신 송부 협조 등)

- ① 지방병무청장은 소집부대장과 협조하여 소집일자, 준비물, 교통편,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지휘서신을 훈련대상자에게 연간 3회 송부하도록 하고, 2차 지휘서신은 지방병무청장이 보낸 훈련소집 통지자 명단이나 국방동원정보체계에서 확인한 통지자 명단에 따라 송부하도록 하여 훈련 비대상자에게 지휘서신이 송부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사용례

- 소집부대장은 동원훈련 비대상자에게 발송 방지를 위해 지방병무청에서 통보하는 “동원훈련 소집통지자 명부”를 확인, 2차 지휘서신을 발송해야 함.

## ■ 직장예비군부대

직장을 단위로 그 소속 예비군자원이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여단·연대·대대·중대·소대 또는 분대로 편성하되, 중대급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모든 직장과 분대 또는 소대급의 예비군자원을 보유한 국가보안목표시설이나 기관은 직장예비군을 편성하여야 하는 의무를 띠는 부대이다.

## 사 례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의2(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

- ① 예비군은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나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을 편성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 사용례

- 연대급 이상 직장예비군부대는 수임군부대장이 직접 지휘·관리하되 수임군부대의 여건에 따라 예하 연대에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 ■ 집결일시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집결지에 집결하여야 하는 일시이다. 소집일시에서 인도·인접 소요시간 및 수송 시간을 공제한 시간이 된다.

## 사 례

## 사용례

- 4년차 이내 지원 중 동원지정자를 집결일시가 빠른 순으로 동원지정 부대별로 편성함.

## ■ 집결지

동원병력이 집결하는 곳 또는 인도·인접지로 수송하기 위하여 교통요지 등에 설치한 장소로서 병력이 이동을 준비하는 장소이다.

## 사 례

## 사용례

- 지방병무청장은 당해년도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집행계획에 의하여 동원인원, 집결지, 인도·인접지 및 소집부대 등을 감안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병력동원집행반을 편성하여야 함.

## ■ 집단지정

소규모 증편부대의 동원시간 단축 목적으로 평시 편제 병력의 75% 이상이 유지되는 부대를 대상으로 지정하며, 배정지역 내 읍·면·동대 자원으로 특기 고려 없이 지정한다.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12조(집단지정)

- ① 집단지정은 평시 편제병력의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부대(상비사단) 및 손실보충부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부대관리요원 부대 및 기계화 보병사단은 제외한다.

**사용례**

- 동원 지정은 육군은 집단지정, 부대단위지정 및 개별지정방법에 의하고 해 · 공군은 개별지정 방법에 의함.

**■ 창설부대**

평상시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전시에 군의 작전소요를 위하여 부대확장 계획에 의하여 새로이 창설되는 부대를 말한다.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9조(동원지정의 범위)

- ① 긴급단계 소집부대는 평상시에 지정 관리하고 정상단계 소집부대는 소집일 4일 전에 지정한다. 다만, 정상단계 증 · 창설부대와 M+20일의 손실보충부대는 평상시에 지정 관리한다.

**사용례**

- 지속단계 증 · 창설부대와 M+20일의 손실보충부대는 평상시에 지정 관리함.

Ⅶ. 병력동원(동원) 편성

**■ 추적관리**

동원지정된 사람이 신상이동(주소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대체지정을 하지 않고 계속 지정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18조(전국단위 동원지정)

- ⑤ 전국단위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4. 동원지정자가 소요청 관할지역 외로 전출시 소요청 내 대체할 적소 및 유사특기자가 없는 경우 연차 이내 예비역 적소특기지정자는 추적관리하며, 연차초과자 및 비적소특기자(유사특기 포함)는 대체지정

## ■ 충무계획(忠武計劃, Chung-Mu Plan)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국가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평상시에 준비하는법국가적인 비상대비 계획으로 동원계획의 기초가 되며 정부 자원관리 주관부처별로 소관자원의 운영과 기능수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러한 충무계획을 시행하는 목적은 국가비상시 군사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시 정부기능을 유지하며 국가자원의 신속한 동원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 ■ 충무훈련

충무공에서 유래되었으며 전시 군 작전 지원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인력과 물자를 실제 동원하는 훈련을 말한다.

## ■ 타격대

신속한 향방작전을 위하여 읍·면·동대 단위로 1개 소대급(46명)으로 편성하는 부대를 말한다.

### 사 례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5조(편성)

- ⑥ 지역예비군 및 직장예비군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군대원이 예비군조직대상자로 된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예비군대원중에서 선발하여 지역예비군인 시·군·자치구 단위의 기동대 또는 읍·면·동 단위의 타격대를 편성할 수 있다.

#### 사용례

- 타격대용 무기가 대대 훈련소요보다 많을 경우 훈련소요를 초과하는 무기는 진공포장하여 보관함.

## ■ 타격소대

읍·면·동대 단위로 1개의 소대를 편성하는 것이다. 부산의 동지역 및 전방군단 지역, 2개 이상의 도서로 된 면지역과 기동대가 편성되어 있는 읍·면·동은 타격소대를 편성하지 않는다.

### 사 례

#### 예비군 실무편람

3-3-나-나)

- (1) 읍·면·동대 단위로 1개 타격소대를 편성

**사용례**

- 읍·면·동대는 본부, 타격소대, 간부(동원미지정자), 동원지정, 항방, 보류자, 기타 소대로 구분하여 편성함.

**■ 퇴역**

현역 또는 예비역의 장교가 병역의무 기간을 마치고 현역 또는 예비역에서 물러나는 것으로서, 군인사법에 의한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사람, 연령정년에 달한 사람, 전·공상으로 인하여 군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 여군으로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이 퇴역의 대상이 된다.

**사 례**

**병역법**

제72조(병역의무의 종료)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기간을 마치면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는 퇴역이 되고, 병의 경우는 면역이 된다.

**사용례**

- 장교·준사관·부사관이 군인사법에 따른 계급별 연령 정년 기간이 경과하면 퇴역이 된다.

**■ 해당복무부대특기**

현역복무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역 당시와 동일한 현역군부대의 대공포 운영 등 운용기종, 복무 군사특기 등에만 제한적으로 동원지정되는 특기를 말한다.

**사 례**

**사용례**

- 해·공군 해당복부부대 특기 자원은 전국단위 동원지정 대상이다.

**■ 핵확산금지조약(核擴散禁止條約, Non-Proliferation Treaty ; NPT)**

1970년 3월 3일 발효된 핵무기 확산 방지에 관한 조약이다.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 기폭장치 및 그 관리를 제3자에게 이양할 수 없고, 비핵보유국은 이러한 무기를 수정하거나 개발할 수 없으며 원자력시설에 대한 국제 사찰을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약을 말한다.

## ■ 항방기본훈련

항방작전대비 개인 전투전술 구비훈련으로 훈련대상은 5~6년차 예비군이며 훈련시간은 8시간이다.

사 례

###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항방훈련”이란 개인 전투기술 연마를 위한 항방기본훈련과 지역단위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항방작계훈련 등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 사용례

- 부대별 임무 및 특성, 훈련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항방기본훈련 과제를 선정, 훈련을 실시함.

## ■ 항방동원

전·평시 적이 침투했거나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이들을 소탕하고 중요시설 방호, 병참선 경비 등 향토방위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 장관이 예비군 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예비군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사 례

### 사용례

- 예비군 개인별 항방동원 기간은 연간 교육훈련방침 시간과 관계없이 항방 동원령 발령 시부터 그 동원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동원할 수 있다.

## ■ 항방작계훈련

지역단위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으로 전·후반기 2회 실시하는 훈련이다. 훈련대상은 1~4년차 동원미지정 예비군과 5~6년차 예비군이며 훈련시간은 12시간이다.(5~6년차 예비군 중 동원 지정자는 6시간, 미지정자는 12시간)

사 례

###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항방훈련”이란 개인 전투기술 연마를 위한 항방기본훈련과 지역단위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향방작계훈련 등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사용례**

- 지원예비군 중 소대장은 반기 1회 선 소집교육(4H)과 향방작계훈련(6H)을 실시함.

**■ 향토사단**

유사시 주어진 지역방위의 책임을 맡은 부대를 말하며, 통상 계엄이 선포되면 지역계엄 사령부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제2작전사령부(충청, 경상, 전라, 부산)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향토사단이 수임군부대가 된다.

**사 례**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10조(동원지정의 우선순위)

- ① 동원지정은 사단특성별로 동원사단, 야포단, 향토사단, 상비사단, 기타부대의 순으로 지정하고, 동일사단 내에서는 전투근무지원부대, 전투지원부대, 전투부대 순으로 지정한다.

**■ 향토예비군 설치법**

향토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향토예비군 설치·조직·편성·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1961년에 제정되었다.

**사 례**

**사용례**

- 여성예비군 소(분)대장 및 여성예비군 대원은 공직선거법과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2조를 준수하여야 함.

**■ 현무대대**

미사일부대(대대)를 말한다.

**사 례**

**사용례**

- 특전사, 현무대대, 러시아 장비부대(3기갑여단, 제80전차대대 등) 등의 육직부대를 동원 지정함.

## ■ 호송

수송계획에 따라 인원이나 장비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시키는 것이다. 호송은 통산 군부대 호송과 군 외의 수송 기관에 의뢰하는 위탁호송으로 구분된다.

사 례

###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65조(병력수송 및 호송)

- ① 동원병력의 수송책임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있다. 다만, 수도권·2작전사 지역에서 1·3군 전방 군단지역으로 동원되는 병력수송에 한하여 병무청장 책임 하에군(호송단)이 대행한다.

### 사용례

- 해·공군(동원업무 대행 부대장 등)은 타 시·도 병력 호송을 위하여 호송반을 편성하여 집결지에 파견하고 그 호송계획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함.

## ■ 화랑훈련

신라의 화랑에서 유래되었으며 북한 특수부대의 후방침투에 대비한 훈련으로 군, 경찰, 국가기관, 예비군이 참가하는 훈련을 말한다.

## ■ KATUSA(카투사)

카투사는 Korean Augmentation(Augmenter) to the U. S. Army의 약자로서 주한 미군에 배속되어 있는 한국육군 사병을 말한다.

사 례

### 사용례

- 부대관리요원, 민사부대, 심리전부대, 카투사 요원은 개별지정 관리함.

## ■ M 일

국가동원령 선포일을 말하며, M이란 Mobilization의 약자이다.

사 례

### 사용례

- 지속 4단계 M+20일까지의 손실보충부대 요원은「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제17조 제3항에따른 교육훈련 방침보류 대상예비군을 지정함.

## ■ TMO(Transportation Movement Office)

국군수송사령부 예하 철도수송 업무를 담당하는 부대이다. 서울, 부산, 동대구, 대전역 등 주요 역에 배치하여 평상시에는 여행 장병 안내소 역할을 하고, 전시에는 (동원)병력 수송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 사 례

#### 사용례

- 의무자 입영여비는 소요청에서 일반자원과 같이 산정하며, 철도 TMO로 인계 시에는 거주지에서 TMO까지의 여비만 산정하여 지급함.



• 병무행정 용어 해설집 •

## VII. 병무민원(국외여행·생계곤란)

인천공항병무신고사무소  
Incheon Airport Military Manpower Management Report Office  
병무청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 ■ 거주여권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대한 거주목적의 여권이다. 최초 신규발급은 외교통상부에서만 가능하나, 재발급 또는 기재사항변경의 경우에는 광역시·도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도 처리가능하다.

## ■ 고객의 소리(VOC)통합관리 시스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기존 12개 민원 채널을 통합하여 DB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통해 병무행정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측정함과 동시에 채널별 서비스 건수, 만족도, 설문응답 인원 등 각종 현황을 표출하여 체계적인 민원 서비스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 병무청 민원 총괄 관리시스템이다. 이곳에 축적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병무행정 전반에 대한 고객의 불편·불만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함으로써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고객의 소리(VOC)통합관리 시스템은 먼저 2008.3.17.에 7개 채널(청장에게 바란다, 법정민원, 병역설계, BS/AS, 전화상담, 인터넷상담, 방문상담)을 통합하여 운영을 시작하였고, 최종적으로 2008.12.29.에 5개 채널(지방청장에게 바란다, 국민신문고, FAQ, ARS, 칭찬합시다)을 추가로 통합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다.

## ■ 관용여권

국가의 공적인 일로 해외에 출장가거나 여행할 때에 발급되는 여권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및 직원과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미혼인 직계비속 등이 발급대상이 된다.

## ■ 국외여행

병역의무자가 국외 출국하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인 관광여행뿐 아니라 유학·국외이주 등 모든 형태의 출국이 이에 해당한다. 국외여행의 구체적인 허가 범위는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병무청장이 정한다.

### 사 례

#### 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제1항 :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사용례

-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취소,
- 국외여행목적, 국외여행허가기간,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

#### ※ 유 래

- 병역법(법률 제1163호, 1962.10.1.) 제93조에서 처음으로 국외여행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 그 전에는 병역의무자 국외유학허가 취급 요령(국방병 제44호, 1956.1.9.)에 따라 유학자에 한하여 허가해주는 제도가 있었다.

##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가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사 례

####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제1항 : 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 국외여행허가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발급되는 증명서이며, 이는 여권발급을 위한 구비서류로서 여권발급(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 례

####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여권의 발급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제2항 제2호 :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발행하는 국외여행허가서 1부.

## ■ 국외여행허가추천서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소속기관(업체)장이 발행하는 서류이며, 지방병무청장은 본 추천서에 따라 국외여행을 허가한다.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병무청 훈령)**

별지 제11호 서식 : 국외여행허가추천서

■ **금융자산 조회**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 중 하나인 재산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원을 신청한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 유가증권 등의 금융정보를 해당 금융기관에 요청하는 것으로, 조회 결과는 토지, 건물 등 그 외의 재산과 합산하여 재산액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고 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 ① 병역감면대상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경우 예금 등 금융자산은 관련 금융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

**사용례**

- 예금 등 금융자산은 가사상황신고서에 신고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조회한다.

※ 유래

-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718호, 2002.8.21.) 제13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 금융자산 조회 최초 시행(신설)
-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처리규정(병무청 훈령 제488호, 2002.12.4.) 제6조(재산 및 소득 등 확인) : 병역법시행령 개정사항을 훈령에 반영

■ **단수여권**

여권유효기간이 1년 이내로 1회만 사용 가능하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등에 발급된다.

■ **병무민원 BS/AS**

고객의 요구에 수동적·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던 종전의 방식을 탈피하여 고객이 요구하기 전에 불편·불만 사항을 파악하고 안내하는 상담 서비스이다. 민원 접수·검토 후 요구사항 등을 확인하는 사전 서비스(BS)와 민원처리 결과 및 향후 병역이행 과정 등을

안내 해주는 사후 서비스(AS)로 이루어진다. 2003.11.3. 법정민원, 홈페이지 진정민원 등 민원 출원자를 대상으로 AS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민원AS 과정에서 고객들이 민원 처리 종료 후에 이루어지는 AS 보다는 고객의 의견 등을 사전에 개선할 수 있는 절차를 원하는 것에 착안하여 2004.9.1.에 BS 제도가 추가로 도입되었으며, 2008년부터 고객의 소리(VOC) 통합관리 시스템과 연계되어 각종 현황 관리 및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민원처리결과 자동 안내 등 총 47종의 BS/AS가 CRM과 연계된 자동서비스 시스템에 의해 서비스 되고 있으며, 병행하여 지방청에서 자체적으로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 BS/AS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 ■ 병무민원상담소

병무민원 상담 업무를 관장하는 병무청의 소속 기관(2002.7.2. 개소)으로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되는 인터넷 민원, 서한문 및 팩스 민원과 1588-9090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 접수되는 전화민원 등에 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음성자동응답시스템(ARS)과 FAQ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 ■ 병역설계

징병검사부터 입영 시까지 병역의무자 개인의 특성과 요구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필요한 최적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병무 민원 서비스를 말한다. 2004년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최초 시범 운영된 제도로 2005.9.1.에 전 지방병무청으로 확대 시행(현역입영 대상)되었으며, 2006년에 홈페이지 접수 실시와 함께 서비스 대상자를 모든 병역의무자로 확대하고, 2008년 고객의 소리(VOC) 통합관리 시스템과 연계되어 각종 현황 관리 및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병역설계 접수 신청은 징병검사장 및 각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방문 또는 인터넷 병무청 홈페이지(민원마당 > 민원신청 · 조회 > 병역설계 희망자 접수 · 취소)를 통해 가능하다. 병역설계 희망자가 인터넷 접수를 하면 관할 지방청의 직원(병역설계사)에게 자동 배분되어 병무행정 화면 '오늘의 할 일'에 공지가 되고, 신청자에게는 병역설계사 지정 결과가 자동으로 SMS 및 e-mail로 발송이 된다. 지정된 병역설계사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속하고 상세한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서비스 종료 후 다음 예약일을 지정한다. 서비스 방법은 전화, e-mail, SMS 모두 가능하며 신청자의 설계희망분야, 설계희망내용, 설계예약일 등을 확인하여 맞춤형 정보를 적기에 제공한다.

## ■ 복수여권

여권유효기간이 보통 10년 이하로 사용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현역 또는 보충역에 복무 중에 있는 경우에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하고, 여권유효기간은 국외여행허가기간 및 병역자원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 ■ 부양비

부양의무자 1인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를 말하며, 부양비가 충족되려면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을 초과하여야 한다.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기준은 남자 부양의무자 1인당 피부양자의 수가 3인 이상, 여자 부양의무자 1인당 피부양자의 수가 2인 이상이어야 한다.

### 사 례

####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처리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8. “부양비”란 부양의무자 1인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를 말한다.

#### 사용례

- 병역감면서류 제출자중 6월 이내에 가족의 연령변동으로 부양비가 해당되어 병역감면대상자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우선 병역의무기일을 연기
- 가족 중 자활가능자는 부양비 계산에서 제외

#### ※ 유래

- 방위소집면제처리기준(병무청 훈령 제152호, 1986.12.16.) 제5조(사실상 생계곤란자 가족의 범위) : 부양비 용어 최초 사용(6월 이상 임신부의 태아는 피부양자로 인정하여 부양비 계산)

## ■ 부양의무자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법령상 20세 이상 54세까지의 남자와 20세 이상 44세까지의 여자가 해당된다.

### 사 례

####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 등)

- ① 가족의 범위를 부양의무자·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

### 사용례

- 20세 이상 54세까지의 남자와 20세 이상 44세까지의 여자는 부양의무자

※ 유래

-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52호, 1959.2.18.) 제16조(생계유지 곤란한 자의 범위) : 생계유지곤란이란 만 18세 이상 59세 이하의 사람이 없을 때로 함
-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5548호, 1971.3.10.) 제37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징병검사 등의 연기) : 부양능력을 가진 자(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자,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여자)
-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511호, 1984.9.22.) 제9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 : '부양의무자' 용어 최초 사용

### ■ 생계곤란심의위원회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분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 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생계곤란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가족의 범위, 재산액 및 수입액 산정, 병역감면처리의 특례 등 사실상 생계유지곤란 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처리하고 있다.

사 례

####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의2(생계곤란심의위원회)

- ①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생계곤란심의위원회를 둔다.

#### 사용례

- 생계곤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 유래

-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처리규정(병무청 훈령 제461호, 2001.6.26.) 제23조(생계곤란심의위원회 구성 등) : 생계곤란심의위원회 최초 신설
-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273호, 2004.2.9.) 제130조의2(생계곤란심의위원회) : 훈령사항을 시행령에 반영(신설)

### ■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저소득층 병역의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군 사병관리 및 지휘 부담을 줄여 군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병역감면 대상은 가족구성원의

부양비, 재산액,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사 례

**병역법**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

①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사용례**

-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의 제출

※ 유래

- 병역법 제정(법률 제41호, 1949.8.6.)시 제19조, 제39조, 제43조, 제68조에서 최초 사용(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는 면제)

내 용	시행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역입영대상자 : 2년 연기 후 계속 시 ⇒ 제1보충병역, 제2국민병역</li> <li>• 현역복무자 : 현역면제(제1보충병역 전환), 소집된 자 : 소집면제</li> </ul>	1949.8.6 ~ 1957.8.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역복무자 : 복무기간 6월로 단축 ⇒ 제1 또는 제2예비역</li> <li>• 동시재영 생계곤란자 : 복무기간 6월로 단축(제1,2예비역)</li> </ul>	1957.8.15 ~ 1962.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역입영대상자 : 징집연기(23세까지) 후 계속 시 ⇒ 제1보충역 편입</li> <li>• 현역복무자 : 복무기간 6월로 단축(제1,2예비역), 소집된 자 : 소집면제</li> </ul>	1962.10.1 ~ 1970.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역입영대상자 : 징집연기(23세까지), ⇒ 계속 시 보충역 편입</li> <li>• 현역복무자 : 복무기간 6월로 단축(제1,2예비역), 방위소집자 : 소집면제</li> </ul>	1970.12.31 ~ 1979.1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징·소집 대상 및 복무자 : 보충역 편입(방위소집면제)</li> <li>• 징집연기 제도 폐지</li> </ul>	1979.12.28 ~ 1993.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국민역 편입</li> </ul>	1994.1.1 ~ 현재

**■ 영리활동**

국외이주자가 국내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 처리 규정 제28조) ①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0일 이상 고용관계에 의한 봉급·임금 등 급여를 받거나, 농업·공업·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②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연예인·예술가·체육선수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거나, 기타 인적용역의 대가로 1천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 사 례

###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① 법 제70조 제6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마. 국내 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사용례

- 영리활동의 범위, 영리활동 실태조사

※ 유래

- 의무부과제도 신설(1984.9.22.) : 전(全) 가족의 영주권 취득으로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거나,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취업할 경우 병역면제처분과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음(영 제96조 제7항)
- 의무부과 대상 국내취업기간 연장(1988.6.30.) : “6월 이상 국내취업”을 “1년 이상 국내취업”으로 연장하였음
- 영리활동 하는 경우 의무부과 별도 조항 신설(2001.3.27.) :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 처리규정 제28조)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의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였음(영 제134조 제8항 제4호)

## ■ 영사(領事)

외국에 있으면서 본국의 무역 통상의 이익을 도모하며 아울러 자국민의 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대상자에 대하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원서 접수 등 재외공관에 배치된 병무담당 영사가 이를 수행한다.

##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출원제도

영주권(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의 5년 이상 장기체재자격 포함)을 취득한 병역의무자가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제도로써 군복무기간 중에는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으며, 연1회 출·귀국 보장 및 왕복항공료 등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 사 례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 처리규정(병무청훈령)

제29조의2(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출원제도 운영)

- ① 국외이주자 중 자진하여 입영을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거주국의 체류자격 상실 등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출원제도를 운영한다.

### 사용례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출원제도,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취소) 신청서

#### ※ 유래

- 뉴욕지역 병무행정 설명회시 교민 건의(2003.11.3.) : “영주권자가 군복무 희망 시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음”
- 국외영주권자 군복무 시 휴가여비 지급지침 시행(2004.4.1.) : 정기 휴가기간 중 영주권 유지를 위하여 해당국 방문 시 왕복항공료(GTR 이코노믹 클래스) 및 국내 여비지급이 국방부 지침으로 시달되었으며, 지침 시달시점을 제도운영 최초시작일자로 보고 있음
- 출원대상자 확대(2006.1.1.) : “영주권 취득으로 병역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을 “영주권을 얻은 사람”으로 병역의무를 연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징병검사 및 현역병으로 입영하고자 하는 영주권자를 출원대상에서 배제하여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건의에 따라 병역연기처분에 상관없이 영주권을 취득한 병역의무자는 누구나 출원할 수 있도록 출원대상을 확대하였음
- 영주권병사를 위한 입영초기 군 적응 프로그램 운영(2007.1.1.)
- 전역 시 영주권국가로의 귀가 편도항공료 지급(2008.1.1.)
- 재외공관 입영원 접수 실시(2009.7.1.)
- 인터넷 입영원 접수 실시(2009.9.1.) : 입영원 출원 시 징병검사 및 현역병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
- 복무 중 영주권 공익근무요원의 국외여행 시 왕복항공료 지급(2010.1.1.) : 현역으로 복무하는 영주권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도 영주권 유지를 위한 국외여행 시 1년의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왕복항공료 지급

## ■ 일본거주

일본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중에서 영주자 또는 특별영주자의 경우에는 35세까지, 정주자 또는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의 배우자 등은 등록원표 기재사항 증명서의 체류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에서 국외여행을 허가한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 처리규정 별표2의 연번9, 별표3의 연번1) ① 영주자 : 소행이 선량하고, 독립생계를 영위하기 위한 충분한 자산과 기능을 보유하고, 일본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부여(영주권에 해당)

② 특별영주자 : 해방 이전부터 일본거주 한국인 및 그 자손, 해방 이후 국교정상화까지 일본에 입국 합법적 체류자 및 그 자손, 1951년 평화조약 체결로 인한 국적이탈자 및 그 자손 등에 부여(영주권에 해당) ③ 정주자 : 일본에 입국하여 향후 영주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부여하는 장기체재허가(보통 3년, 갱신가능) ④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의 배우자 : 일본인 또는 영주자(특별영주자 포함)와 혼인한 일본 체재자에게 허가(보통 2~3년, 갱신 가능)

**사 례**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 ①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35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2. 일본의 특별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은 경우

**사용례**

- 일본의 특별영주자, 영주자

※ 유래

- 일본에서 출생하여 계속 거주한 사람은 국외징병검사연기를 받은 것으로 보았음(1971.11.3.)
- 한·일 협정에 따른 협정영주권 미신청 재일교포 자제로서 특별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1963.11.30. 이전에 일본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특별체류자격을 얻은 사람의 경우 본인 또는 부모가 영주귀국 시까지 국외여행허가(1981.7.31.)
- 일본인의 배우자, 정주자 등과 같이 영주권을 취득하지는 못하였으나 일본의 거주가 사실상 허용되는 사람의 경우 영주귀국 시까지 국외여행허가(1988.2.20.)

**■ 자활가능자**

가족을 부양할 능력은 없으나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법령상 55세 이상 59세 까지의 남자, 45세 이상 49세 까지의 여자, 장애등급 5급 또는 6급인 사람,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등을 말한다.

**사 례**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 등)

- ① 가족의 범위를 부양의무자·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

## 사용례

- 55세 이상 59세까지의 남자 및 45세 이상 49세까지의 여자는 부양의무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자활가능자로 본다.

### ※ 유래

-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511호, 1984.9.22.) 제9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 : '자활가능자' 용어 최초 사용(18세 이상 19세까지의 남녀와 55세 이상 59세까지의 남자 및 45세 이상 49세까지의 여자)
-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474호, 1988.6.30.)제9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 : 18세 이상 19세까지의 남녀는 자활가능자에서 피부양자로 변경

## ■ 재외공관

외교통상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두며, 대사관·공사관·대표부·총영사관과 영사관이 이에 해당한다.

### 사 례

####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국외여행허가 등 <개정 2006.12.29.>)

- ① 법 제7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재외국민2세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을 포함)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 경우 18세 이전에 국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통틀어 3년 이내 수학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① 외국 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조건부 영주권 제외)을 얻은 사람 ②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체재자격 포함한다)을 얻은 사람

③ 5년 미만의 단기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거주여권을 가지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사 례

###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① 법 제70조 제6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 하는 사람이 제128조 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유래

- 의무부와 유보대상자 명단 별도관리(1988.12.28.) : 예규 제2-9호에 따라 병역의무자인 교포 2-3세로 재외공관장이 확인한 사람은 영주귀국자를 제외하고는 의무부과를 유보하고 명단을 별도로 관리 하도록 하였다.(국외출생 등의 사유로 청소년기에 장기간 해외거주한 사람들은 우리문화의 이해가 부족하고 언어소통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에 대하여만 병역의무를 부과)
- 재외국민 2세의 개념을 도입(1994.10.6.) : 일반 국외이주자와 구별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시행령에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조건부영주권 제외)을 얻은 사람 또는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으로서 국외에서 출생·성장한 사람을 재외국민 2세로 정의 하였다.
- “6세 이전에 출국하여 계속 거주한 사람”도 재외국민 2세에 포함(1999.3.3.) : 1998년 재외동포단 체로부터 국내에서 출생하였으나 어려서 출국하여 국외에서 성장한 사람을 1년 이상 국내 체재한 사유로 의무부와 시 언어·문화 등의 차이로 병역의무 이행이 곤란하다는 개선 건의를 반영한다.
- 17세 이전 초·중등학교 수학(3년의 범위 내)도 재외국민 2세로 인정(2004.2.9.) : 재외국민 2세의 정의 중 “계속 국외거주”에 대한 해석 혼란으로 국내입국 기간을 얼마간 허용하는지에 대한 법령 규정이 없고, 해석상 17세 이전에 국내 1년 이상 초·중·고등학교를 수학한 사람은 계속 국외거주로 인정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는 등 재외국민 2세의 자격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건의에 따라 병역 회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기 모국수학 허용을 포함한 단독 국내체재를 허용 하였다.
- 해외이주법에 따른 영주귀국신고자, 국외출생자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을 신고하고 거주하는 사람 에게만 병역의무 부과(2005.6.30.) : 재외국민 2세 중에서는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에게만 의무부과를 하였으나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였는지는 객관적 징표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외이주법」에 따른 영주귀국신고자와 국외출생자로서 주민등록을 신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의무부과 하도록 하였다.

## ■ 출입국관리사무소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소속 행정기관으로 공항 및 항만 등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 피부양자

근로능력이 없어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법령상 19세 이하 60세 이상의 남자와 19세 이하 50세 이상의 여자, 부양의무자 또는 자활가능자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공익근무요원 또는 상근 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등을 말한다.

### 사 례

####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 등)

① 가족의 범위를 부양의무자·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

#### 사용례

- 19세 이하의 남녀와 60세 이상의 남자 및 50세 이상의 여자는 피부양자로 본다

※ 유래

-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5548호, 1971.3.10.) 제37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징병검사 등의 연기) : '피부양자' 용어 최초 사용(19세 이하 60세 이상의 남자, 19세 이하 50세 이상의 여자, 노동능력 상실자)



• 병무행정 용어 해설집 •

## VIII. 병역사항 공개(병적증명)





## ■ 군경력증명

병적증명서 발급대상의 요구에 의거 병적기록표상의 주특기와 복무기록을 토대로 군복무(보충역 복무를 포함)당시 경력을 병적증명서의 군경력란에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사 례

### 병적증명서 발급규정

제7조(군경력증명 등)

-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2조의 병적증명서 발급대상이 군복무(보충역을 포함한다)에 관한 경력증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병적증명서 경력사항란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사용례

- 군경력증명 요구, 군경력증명 발급

※ 유래

- 병역법시행규칙(국방부령 제457호, 1995.6.30. 개정) 제8조(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및 별지 4호 서식에 군경력기술란 신설

## ■ 군운전경력 및 무사고확인서

차량보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군경력증명(전역예정자 포함) 중 운전경력 및 무사고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로, 병적증명서상 군경력란에 모두 표기할 수 없는 군 운전경력 세부사항, 상벌사항, 교통사고 이력 등을 명기한 증명서를 말한다.

사 례

### 병적증명서 발급규정

제7조(군경력증명 등)

- ③ 전역 예정자가 군 운전경력 및 무사고 확인서(별지 1호 서식)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역명령 사본 : 소속지휘관 및 인사장교 확인서 1부
2. 복무자력표 사본 : 소속지휘관 및 인사장교 확인서 1부
3. 운전자력표 1부(장교에 한함)

### 사용례

- 군운전경력 및 무사고확인서 요구, 군운전경력 및 무사고확인서 발급

※ 유래

- 병적증명서 발급규정(제4-29호, 2007.9.14. 개정) 군운전경력 및 무사고확인서 발급규정 신설

## ■ 병역 변동사항

병역사항 신고대상자(본인 및 직계비속)의 공개된 병역사항과 비교하여 병역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를 ‘병역 변동’이라 하고 이런 변동사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다음 각 호의 ‘병역 변동사항’이다. 1999년 처음 제정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5989호, 1999.5.24. 제정)에는 이러한 ‘병역 변동사항’을 매년 1월 중 신고토록 하였으나, 2007.5.17 동 법률을 개정(제8445호)하여 병무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병역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병무청장이 분기별로 확인하여 공개토록 하였다.

1. 신고대상자가 제1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2. 신고대상자가 징병검사를 받은 경우
3. 신고대상자의 병역 역종이 변동된 경우
4.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역사·징병전담역사·국제협력역사·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경우
5. 병역을 기피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
6. 유학 등 국외체재 사유로 징병검사 또는 입영이 연기된 경우
7. 국외에 불법체재하게 된 경우

### 사 례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변동사항의 신고 등)

- ② 병무청장은 병역사항이 공개된 신고대상자의 병역 변동사항을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병역사항 변동신고서의 제출 등)

- ① 법 제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병역 변동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병역 사항을 말한다.

#### 사용례

- 병역 변동사항을 분기별로 확인, 공개보류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 변동사항을 변동신고

※ 유래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5989호, 1999.5.24. 제정) 제5조에서 병역 변동사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 ■ 병역사항

병적증명서의 병역사항은 군 복무를 마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차이를 보인다. 먼저 군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징병검사 사항과 입영예정일 및 부대, 최종 병역사항을 포함한 병무청에서 처분한 입영(기일)연기, 역종처분 등 병역처분사항 일체를 말하며,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은 군별, 계급, 군번, 역종, 병과(주특기), 입영(입관)연월일, 전역연월일, 전역구분(사유) 및 군경력의 9개 항목을 의미한다.

### 사 례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병역사항과 차이점

병역사항 공개법 상 병역사항은 군필자의 경우 역종, 병과(주특기), 군경력의 3개 사항은 공개되지 않음

#### 사용례

- 병역사항의 기재, 병역사항 정정

## ■ 병역사항 공개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자진 이행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5989호, 1999. 5.24. 제정)에 따라 공직자 등이 신고한 병역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는데 이를 ‘병역사항 공개’라 한다. 공개방법으로는 공직자, 공직선거당선자, 국회임명 동의(선출)된 공직자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과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 공개하고 공직선거후보자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에 공고, 국회의 임명동의 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는 국회공보에 게재한다.

### 사 례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 ① 병무청장은 신고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조 제3항에 따라 병역사항을 통보받으면 그 병역사항을 1개월 이내에 관보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사용례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병역사항 공개서,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 유래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5989호, 1999.5.24. 제정) 제8조에서 병역사항 공개 사용

### ■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병역사항 공개대상자 중에는 국가 원수의 경호업무 및 국가보안 업무분야 등에 근무하여 그 임무나 조직의 정보들이 일반인에게 노출될 경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국가안보를 해할 우려가 있는 직위가 있어,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7268호, 2004.12.31. 개정) 개정 시에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어 이런 특수 직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병역사항을 신고는 하되 공개하지 않도록 하였는데 이를 ‘병역사항 공개보류’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들을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라고 한다.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는 해당기관에서 보안을 유지하면서 자체관리하고 그 관리현황을 연 2회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병무청장은 이들 기관에 대하여 그 관리의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국가정보원의 1급부터 4급까지의 직원
  2. 현역 준장 및 대령
  3. 대통령실의 1급부터 4급까지의 경호공무원
- ☞ 대상기관 : 대통령실 경호처, 국가정보원, 국방부, 방위사업청

### 사 례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병역사항의 공개의 보류)

① 병무청장은 국가안전보장 분야 및 국방 분야 등에 종사하여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병역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정보원의 1급부터 4급까지의 직원
2. 현역 준장 및 대령
3. 대통령실의 1급부터 4급까지의 경호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병역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고기관의 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 공개보류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 변동사항을 변동신고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

※ 유례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7268호, 2004.12.31.개정) 제8조의2에서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사용

## ■ 병역사항비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의 병역사항은 모두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일부 질병명과 고아, 사생아, 혼혈인 등의 병역처분 내용은 신고의무자가 비공개를 요구할 경우 비공개하여야 한다.

사 례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질병명 등의 비공개)

- ① 법 제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거나 병무청장이 비공개하여야 하는 질병명·심신장애 내용 또는 처분사유는 별표와 같다

※ 유례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8684호, 2007.12.14. 개정) 신고의무자 본인도 직계비속과 동일하게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일부 질병명과 고아, 사생아, 혼혈인 등의 병역처분 내용 비공개토록 개정

## ■ 병역사항 신고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와 1998년 제2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과 장·차관 등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여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었고, 언론 등 국민적 여론이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병역사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고위공직자 등에 대하여 병역사항을 신고하게 하고 공개하기 위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5989호, 1999.5.24. 제정)을 제정하였다. 이에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본인과 18세 이상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소속 기관의 장(신고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병역사항신고서를 접수한 신고기관의 장은 착오기재 등을 확인한 후 1개월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5989호, 1999.5.24. 제정) 제정 시 1급 이상 공직자가 대상이었으나 2005년부터 4급 이상 공직자로 확대하여 시행 중이다.

**사 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신고의무자)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례**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병역사항 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시기, 병역사항 신고기관

※ 유래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5989호, 1999.5.24. 제정) 제2조에서 병역사항 신고 사용

**■ 병역사항 신고기관**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본인 및 직계비속에 대한 병역사항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양한 세부 기관들을 모두 신고서 접수기관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어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곤란하므로 신고서 접수 기관을 크게 분류하였는데, 이를 ‘병역사항 신고기관’이라 한다. 이러한 ‘병역사항 신고기관’은 『정부 조직법』에 따른 행정기관과 입법, 사법기관 및 헌법에 근거한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분하였고,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공사·지방공단 등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이를 관리·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신고기관으로 선정하였다. 공직자별 병역사항 신고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및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실
2. 국무총리 및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은 국무총리실
3.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은 국회사무처
4. 대법원장·대법관·판사 및 법원 소속 공무원은 법원행정처
5.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헌법재판소 사무처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7. 부·처·청 소속 공무원은 해당 부·처·청
8.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인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해당 위원회
9. 감사원 소속 공무원은 감사원사무처
10.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은 국가정보원
11.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12.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지방의회
13.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 및 시·군·구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
14. 특별시·광역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및 특별시·도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해당 교육위원회
15. 「공직자윤리법」제3조 제1항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해당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16. 한국은행의 임직원은 한국은행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 외의 신고의무자는 행정안전부

## 사 례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신고시기와 신고기관 등)

- ① 신고의무자는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적은 병역사항 신고서를 소속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용례

- 신고시기와 신고기관, 병역사항 신고기관

※ 유래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5989호, 1999.5.24. 제정) 제4조에서 신고기관 사용

## ■ 병역사항 신고대상자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자를 법률로 정하였는데 이를 ‘병역사항 신고대상자’

라고 한다. 그 대상은 공직자 본인과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범위에는 손자, 외손자도 포함)으로 하였다. 직계비속 중 여성은 병역의무가 없으므로 신고대상자에서 제외되지만, 공직자 본인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따라 당연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신고 대상자에 포함된다. 여성과 마찬가지로 외국 국적소유자로서 병역사항 신고대상 직위에 임용된 경우에도 신고대상자에 포함된다.

**사 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본인과 본인의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하 "신고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례**

- 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신고대상자의 가족관계 변동

※ 유래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5989호, 1999.5.24. 제정) 제3조에서 신고대상자 사용

**■ 병역사항 신고 시기**

4급 이상 공직자 등이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시기를 의미하는데, 4급 이상 직위에 임용되거나 공직유관단체의 감사급 이상 임원으로 채용되는 등 병역사항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 기관장(신고기관의 장)에게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후보자 등록 시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회의 임명동의 등이 필요한 공직후보자는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할 때 국회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 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신고 시기와 신고기관 등)

① 신고의무자는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적은 병역사항 신고서를 소속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례**

- 신고 시기와 신고기관, 병역사항 신고 시기

※ 유래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5989호, 1999.5.24. 제정) 제4조에서 신고 시기 사용

## ■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자를 법률로 정하였는데 이를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라고 한다. 그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의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 법관 및 검사, 대령 이상의 장교 및 2급 이상의 군무원, 교육공무원 중 대학의 장, 부총장, 대학원장 등,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공직자윤리법」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재산등록의무자 등이다.

### 사 례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 제2조(신고의무자)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신고 의무자”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사용례

-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명부,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신고

※ 유래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5989호, 1999.5.24. 제정) 제2조에서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사용

## ■ 병역사항 표준용어

처분 연도에 관계없이 동일 병역사항에 대한 동일용어 사용으로 용어 이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역법』상 용어, 중간 병역사항, 전역사유 등으로 나누어 병적증명서 발급 시 표준 용어를 정의한 것을 말한다.

### 사 례

#### 병적증명서 발급규정

##### 제6조(병역사항의 기재)

- ① 병적증명서의 병역사항은 별표 1에 의한 『병적증명서에 기재할 항목별 용어』, 별표 2에 의한 『병역사항 표준용어』 및 별표 3에 의한 『병역사항 용어별 외국어(영문)표기』의 용어로 기재한다.

##### 사용례

- 병역사항 표준용어에 의한 기재

※ 유래

- 병적증명서 발급규정(소집34320-191호, 2001.3.28. 개정) 표준용어 지정 병적증명서 발급용어 통일

## ■ 병역증

병역의무자로서 징병검사를 받고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전신 기형자 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등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포함)에 대하여 지방병무청장이 교부하는 병역처분 확인문서로 징병검사일자, 신체등위, 병역처분사항 및 병역처분변경내역을 기재 발급한다. 2007.1.29. 이후 '나라사랑카드' 발급이 시행되면서 '나라사랑카드'가 종이형 병역증을 대신함에 따라 나라사랑카드 칩에 전자적으로 입력되고 있으며, 현재는 징병검사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로서 징병검사결과 통보서를 수검자에게 배부하고 있다.

### 사 례

#### 병역법

제7조(병역증·전역증)

- ① 거주지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로서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병역증을 교부하고, 소속 부대장은 전역하는 사람에게 전역증을 교부한다.

#### 병역법시행령

제5조(병역증 또는 전역증)

- ①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고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병역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사용례

- 병역증 교부, 병역증 재발급

※ 유래

- 1962.10.1 병역수첩 제도 시행(병역법 제98조)
- 1991.2.1 병역수첩 제도 폐지 및 병역증 제도 시행(병역법 제7조)

## ■ 병적기록표

병적을 기록 관리하는 기본 문서이다. 1964.4.1이전의 병적기록은 군에서 작성하였기 때문에 징병검사 등 입영 전 기록은 기재되지 않았으나 이후의 병적기록표에는 징병검사 사항, 신체검사사항 및 검사소견, 병역처분기록 등이 앞면에 기록되고 뒷면엔 군복무와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고 있다.

### 병역법시행령

#### 제2조(병적관리)

③ 제1항에 따른 병적관리기관의 장은 입영·전역·소집해제 또는 거주지이동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자의 병적관리기관이 변경되어 병적을 이관하여야 할 경우에는 병역의무자의 병적 기록표(병적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체 없이 해당 병적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역이나 소집해제로 인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 사용례

- 병적기록표 작성, 병적기록표 이관

※ 유래

- 1946.1.15 ~ 1948.12.15 Korea Army Service Card : 미군양식 도입 사용
- 1948.11.16 ~ 1957.7.31 거주표
- 1957.8.1 ~ 1964.3.31 사병인사기록표
- 1964.4.1 ~ 1966.3.31 장정명부 / 병적기록표 : 징병검사사항 기록 시작
- 1966.4.1 ~ 1968.12.31 병적기록표(편치카드)
- 1969.1.1 ~ 현재 병적기록표(전산관리는 1989년 이후 실시)

## ■ 병적증명서(Certificate of Military Service)

병적확인을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과 입영예정자, 병역면제자 등 군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군복무를 마친 사람은 군번, 계급, 입영 및 전역일자 등 9개 항목을 기재하며,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징병검사연월일, 신체등위 등 8개 항목을 기재하여 발급한다. 1975년부터 현역 또는 실역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으로 병적증명서를 갈음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5989호, 1999.5.24. 제정)이 시행되어 공직자(등) 신고용 병적증명서가 발급되었고, 『인사청문회법』(법률 제 6271호, 2000.6.23. 제정)에 따라 인사청문 시 기초자료로 병적증명서 제출이 의무화 되었다.

### 병역법시행규칙

#### 제8조(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적을 증명 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병적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병적증명서 접수 및 발급대장에 접수 및 발급 사실을 기재하고, 별지 제5호 서식(영문표기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 서식)의 병적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사용례**

- 병적증명서 발급, 병적증명서 제출

※ 유래

- 병역법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 1969.12.19(국방부령 제201호) : 병역의무자 채용 시 병적증명서 제출 의무화
  - 1975.2.14(국방부령 제264호) :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병적증명서 갈음
  - 2002.10.23(국방부령 제541호) : 영문병적증명서 발급 교부
- 병적증명서 발급관련 주요제도
  - 1971.11.2 : 병적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수입인지 첨부)
  - 1973.2.2 : 전사, 사망자 등의 병적확인(증명)서 발급 시행
  - 1977.6.15 : 역종에 따른 병적증명서 유효기간 설정
  - 1982.6.12 : 병적증명서의 민원우편제도
  - 2000.3.2 : 팩스 병적증명서 발급 시행
  - 2002.2.28 : 무인민원발급제도 시행
  - 2005.7.1 : 병적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 폐지
  - 2005.7.1 : G4C를 이용한 병적증명서 발급제도 시행

**■ 전역증**

전역자에 대하여 소속부대장이 지급하는 전역확인 문서로서, 전역 당시 계급, 군번, 병과, 전역(입관)일자 및 사유, 전역당시 부대, 전역근거를 기재하여 발급하며, 분실이나 훼손 시 재발급 업무는 지방병무청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단, 2002년 시행된 국방부 전역증 발급지침(인사33144-1908, 2002.6.28)에 의거하여 10년 이상 장기 복무 후 전역한 장교나 부사관에 대하여 발급된 카드형 전역증의 재발급은 국방부 지침에 따라 지방병무청에 재발급 신청 시 각 군본부로 이첩하여 군본부에서 재발급한다.

**사 례**

**병역법**

제7조(병역증·전역증)

- ① 거주지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로서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병역증을 교부하고,

소속부대장은 전역하는 사람에게 전역증을 교부한다.

### 병역법시행령

제5조(병역증 또는 전역증)

- ② 소속부대장은 전역하는 사람에게 전역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증이나 전역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면 병역증이나 전역증을 다시 교부할 수 있다.

### 사용례

- 전역증 교부, 전역증 재발급

※ 유래

- 1962.10.1 병역수첩 제도 시행(병역법 제98조)
- 1991.2.1 병역수첩 제도 폐지 및 전역증 제도 시행(병역법 제7조)



• 병무행정 용어 해설집 •

## Ⅸ. 병무행정 정보화





## ■ 감사관리시스템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위주의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으로 기획과 실시 및 결과, 조사 등 감사 전(全) 과정을 관리하며 현황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사 례

###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16조(정보기획과) 정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9. 감사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 ■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인정보파일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이다.

사 례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개인정보의 수집)

①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개인정보파일의 보유·변경 시 사전협의)

①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사용례

- 개인정보 보유,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의 위탁처리

## ■ 개인정보관리책임관(Chief Privacy Officer)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에 따라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방침의 수립시행과 개인정보관리실태의 점검 및 감독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 하도록 임명된 자를 말한다.

## 사 례

**병무청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규정**

제7조(개인정보의 관리책임)

③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처리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관리 책임관과 업무분야별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개인정보관리책임관에는 병역 자원국장이, 소속기관에는 다음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으로 하고 분야별 책임관은 해당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으로 한다.

1. 기관장이 고위공무원이고 3급 이상 공무원이 있는 기관 : 기관장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2. 그 밖의 기관 : 기관장

※ 유래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8448호, 2007.5.17.)의 일부개정 시 제20조의2(개인 정보관리책임관의 지정)가 신설되면서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이라는 용어를 사용

**개인정보보호 협의체**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책결정·지원 등을 협의하는 조직으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대외기관 간 자료 송·수신,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변경 시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는 협의체이다.

## 사 례

**해 설**

개인정보보호협의체 구성·운영 여부사항은 정부업무 평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분야의 진단지표 항목으로, 병무청 개인정보보호협의체는 위원장인 병역자원국장과 위원 11명(내부: 8, 외부: 3), 간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의체를 구성한 기능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소집하도록 한다.

**나라사랑카드시스템**

병역의무 이행자의 편익증진을 위해 병무청과 각 군이 연계하여 2006년에 도입한 다기능 스마트카드 운영시스템으로 나라사랑카드는 병역증과 전역증, 병무행정과 연계한 신분인식, 각종 여비와 급여 온라인 지급, 부대 내에서의 소액결제 등에 적용한다.

## 사 례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17조(정보관리과) 정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나라사랑카드시스템 운영·관리

## ■ 로그

정보화 장비 및 네트워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내용들이 발생시간 등과 함께 기록된 자료를 말하며, 시스템 운영 내용이 기록된 시스템 로그와 사용자의 활동내용이 선택적으로 기록되는 사용자 로그로 구별된다.

사 례

### 병무행정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12조(로그 관리)

- ① 병무청 및 소속기관 정보부서의 장은 로그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자료처리 등이 로그 파일에 기록·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용례

- 로그 점검, 로그 관리

## ■ 모집정보시스템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경력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 모집계획에서 선발, 통지, 입영까지 일련의 과정을 정보화한 육·해·공군 모집병 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사 례

###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17조(정보관리과) 정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모집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 병무민원상담시스템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상담과 고객 맞춤 서비스 제공을 전담하는 병무민원상담소 정보 지원시스템으로 전화 상담과 인터넷 상담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 례

###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17조(정보관리과) 정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병무민원상담시스템 관리·기술지원

## ■ 병무행정의사결정시스템

병무행정 주요 통계현황을 업무별, 사용목적별로 작성하여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지원하는 통계시스템을 말한다.

사 례

###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6조(동원자원의 파악)

- ① 다음 해의 동원지정을 위한 동원자원은 매년 3월 말일을 기준으로 병무행정의사결정 시스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파악한다.

## ■ 병역면탈예방시스템

질병정보, 병역처분이력정보, 진단서발급병원정보, 민원 등 접촉이력정보, 신체검사정보, 신상정보, 중점관리질환/중점관리자원여부 등 병역면탈가능요소를 점수화하여 징병검사 실시시간으로 병역면탈위험도를 표출하고, 병무행정통계시스템과 연계하여 병역면탈위험도 표출현황을 분석하여 이상유형 및 사위행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 병역사항 수록 전자파일

병무행정 DB에서 추출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해 병역관련 정보가 수록된 파일로 컴퓨터나 정보통신 매체에 의해 인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전자파일을 말한다.

사 례

### 병무행정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9조(전자파일의 관리 등)

- ② 전자파일을 시스템을 통해 유통할 경우 업무관계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범위를 제한하고 자료 업로드·다운로드 등의 기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자료보호 및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파일별 비밀번호 부여를 생략할 수 있다.

사용례

- 전자파일의 유통, 전자파일의 열람범위

## ■ 병역정보

병무행정 수행을 위해 병역 의무자의 병역 사항을 정보화한 데이터를 말한다.

## ■ 병적기록관리시스템

전역자의 병적기록을 영구 보존하기 위해 관련 이미지와 자료를 저장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병적확인의 기준 자료가 된다.

사 례

###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17조(정보관리과) 정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병적기록관리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 병적 데이터베이스

병역 의무자의 병역정보를 수록한 데이터의 집합체로 징병검사 대상자 조사 시 최초로 등록되며, 병무행정 데이터베이스의 등록을 병적이 설정되는 관점에서 정의한 명칭이다.

사 례

### 병역법

제10조(징병검사 대상자의 조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다음 해에 제11조에 따른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을 조사하고, 병적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여 징병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 사용례

- 병적 데이터베이스의 작성·관리

## ■ 보안USB관리시스템

디스켓,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CD 등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보조기억 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자 식별, 저장 데이터의 암호·복호화, 임의복제 방지, 분실 시 삭제 기능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 ■ 사이버재해대응시스템

각 업무별 사이버 사고 및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업무지원과 장애 관리 등을 위해 조치할 내용과 대응절차를 업무편람으로 구성하여 구축된 장애대응관리시스템을 말한다.

### ■ 소프트웨어관리시스템

병무청(소속기관 포함)에서 도입한 모든 소프트웨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본청 및 소속 기관 간의 중복 구입을 방지하고, 장기간 CD 관리에 따른 분실 등을 예방하여 병무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 ■ 암호자재

통신보안을 위하여 통신문의 내용을 보호할 목적으로 문자·숫자·기호 등의 암호로 만들어진 문서나 보조기억매체를 말한다.

사 례

####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128조(암호자재의 운용)

- ① 비밀을 정보통신 수단으로 수발할 경우에는 암호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비밀이 아니더라도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한 같다.

### ■ 암호장비

정보통신 수단으로 처리·저장 및 송·수신되는 정보자료를 보호할 목적으로 암호 프로그램을 내장하여 제작한 장비나 장치를 말한다.

사 례

####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116조(암호장비의 사용승인 요청)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암호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구비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암호프로그램

암호장비·암호자재에 적용되거나 자체적으로 자료를 암호화·복호화하기 위하여 작성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사 례

####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115조(암호취급인가 및 해제)

- ① 암호장비, 암호자재, 암호프로그램 등의 보안시스템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부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또한, 보안시스템을 복제·복사할 수 없으며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임의로 대여할 수 없다.

제124조(암호장비의 인계인수)

② 인계·인수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4. 메모리카드를 포함한 암호프로그램 주입 수록매체 및 운용법 등 관련자료 이상 유무

## ■ 업무포탈시스템

병무행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최초 접속하는 시스템으로 사용자 단일 로그인을 통하여 여러 시스템에 산재되어 있는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다모아포탈시스템’으로도 불린다.

사 례

###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16조(정보기획과) 정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 업무포탈시스템의 운영·관리

## ■ 자료관리책임자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분장된 업무의 부서장으로 소관업무에서 관리하는 자원에 대한 정보화자료의 관리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사 례

### 병무행정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자료관리책임자(이하 ‘업무부서의 장’ 이라한다)”란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분장된 업무의 부서장으로 소관업무에서 관리하는 자원에 대한 전산자료의 관리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7조(개인정보 취급업무의 정보화)

① 업무부서의 장은 개인정보가 취급되는 업무의 정보화를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 취급 최소화 방안을 검토하고, 정보보안과 개인정보의 보호수준을 사전 협의하는 등 안전한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용례

- 자료관리책임자의 지정

### ■ 전자우편센터시스템

병역의무부과통지서 및 안내문 등을 우편교부하기 위하여 출력, 봉합, 발송 등의 업무를 자동화한 시스템을 말한다.

사 례

####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16조(정보기획과) 정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0. 전자우편센터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 ■ 정보보호시스템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저장·검색 및 송·수신되는 정보의 훼손·변조·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이나 장치로서 침입차단·침입탐지시스템 등의 정보보안 시스템과 개인정보 암호화·모니터링시스템 등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포함한다.

사 례

####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133조(운용 및 보안관리)

- ① 보안책임자는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보안기능을 포함하여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정보보호시스템 운용에 요구되는 저장파일 및 전송 데이터의 무결성

### ■ 정보처리

주어진 정보로부터 달성해야 할 목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는 과정의 총칭이며, 정보화된 업무의 운영 및 활용 전반을 말한다.

사 례

#### 병무행정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Service Request 시스템(이하 ‘SR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의 신규 정보화와 유지보수 및 정보처리 등을 실시간으로 요청하고 이력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 정보통신망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2조(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 ① 정부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간 상호연동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사용례

- 구술이나 전화·전신·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 ■ 정보통신보안

정보통신 수단에 의하여 처리, 저장, 소통되는 정보를 보호하거나 도청 및 해킹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취약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각종 수단과 방법을 말한다.

## ■ 정보화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응용하는 전(全) 과정을 말하며 업무분석 및 설계, 프로그램 개발, 자료저장 및 처리 시스템 구축과 운영 환경 구축 등의 절차를 포함한다.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국가정보화”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화를 추진하거나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화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사용례

- 정보화 사업, 정보화 시책, 정보화 자료

※ 유래

- 정보화촉진 기본법(법을 제4969호, 1995.8.4.)이 제정되면서 제2조(정의) 제2호에서 “정보화”라는 용어를 정의하여 사용

## ■ 정보화책임관(Chief Information Officer)

「정보화촉진 기본법」제9조의2 및 「행정기관의 정보화책임관 지정·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병무청 정보화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사업의 조정 등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도록 임명된 자를 말하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관리책임관(CPO)을 겸한다.

사 례

### 국가정보화 기본법

#### 제11조(정보화책임관)

-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국가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국가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 사용례

- 정보화책임관의 지정, 정보화책임관의 사전승인

※ 유래

- 정보화촉진 기본법(법률 제5669호, 1999.7.1.)이 일부 개정되면서 제9조의 2(정보화책임관의 임명 등) 제1항에서 “정보화책임관”라는 용어를 사용

## ■ 지휘통신망 단말기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을 이용한 고정용, 차량용, 휴대용 등의 무선통신 기기로 소방방재청 중앙망관리센터에 등록되어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사 례

### 병무행정 정보업무 관리규정

#### 제26조(지휘통신망 단말기 사용 및 관리)

- ① 지휘통신망 단말기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사전승인 및 단말기 식별번호, 통화 그룹을 배정받고, 지휘통신망 단말기 인증 및 등록을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평시에는 각 기관 고유 업무용으로 활용하고 재난발생 시에는 현장지휘통신용으로 전환하여 공동 사용하는 주파수공용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병무행정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3.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이하 ‘지휘통신망’이라 한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평시에는 각 기관 고유 업무용으로 활용하고 재난발생 시에는 현장지휘통신용으로 전환하여 공동 사용하는 주파수공용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제26조(지휘통신망 단말기 사용 및 관리)

- ④ 지휘통신망 단말기 및 FM 무전기를 분실한 자 또는 기관의 장은 분실경위 및 조치사항을 24시간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용례**

-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의 공동 사용

**■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행정전자서명이 진정한 것임을 확인·증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20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급한 전자적 정보와 병무청장이 정하는 저장매체를 총칭하여 표현한 것을 말한다.

**병무행정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27조(사용자 신분확인) 병무행정 정보화업무는 개인별로 제공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신분확인 및 전자서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0조(인증서 신규발급)

- ① 신규임용 등의 사유로 인증서를 신규발급 받을 경우 소속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병무행정 인증서 관련 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와 보안서약서(「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별지 제24호 서식)를 작성하여 병무청은 정보기획부서의 장에게, 소속기관은 정보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사용례**

-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신청,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발급

※ 유래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6871호, 2003.5.15.)이 일부 개정되면서 제20조(행정전자서명의 인증) 제1항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이라는 용어를 사용

## ■ IT자산관리시스템

병무청(소속기관 포함)에서 운영하는 각종 소프트웨어(개발 소프트웨어 포함), 서버, 네트워크 장비 및 PC 등 정보화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IT자산의 도입부터 폐기까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보화 업무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 ■ SR(Service Request)시스템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의 신규 정보화와 유지보수 및 정보처리 등을 실시간으로 요청하고 처리 과정 및 과거 이력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사 례

#### 병무행정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13조(변경 관리)

- ① 병무청 및 소속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정보화 소요제기는 SR시스템을 통해 요청하여야 한다.
- ⑥ 병무청 정보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SR시스템 처리내역을 검토하여 시스템의 보완 또는 재구축 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 사용례

- SR 요청, SR 접수, SR 처리, SR 결재, SR 종료

• 병무행정 용어 해설집 •

## X. 공통·지원(기획·감사·홍보·운영)





## ■ 강등

징계의 한 종류로서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 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 ■ 강임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폐지·강등으로 과원이 되었거나 본인이 동의한 경우로서 동일한 직렬 내에서의 하위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직급으로 임명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을 달리 정한 공무원을 제외)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 ■ 경고 및 시정

감사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이의 축소 또는 철회조치로서 교정 및 원상 회복이 가능한 것일 때에는 시정을 명하고, 위법·부당하더라도 시정요구 당시의 법질서 및 공익에 비추어 시정요구가 적절치 아니한 경우, 위법·부당성이 치유되었거나 시정함이 오히려 공익에 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경고를 명할 수 있다.

사 례

### 공공감사기준

제29조(감사결과 처분 요구)

3. **시정**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 회수, 보전, 환급, 추급 또는 원상 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 ■ 계약 사전심사 시스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운영하고 예산절감과 집행의 효율성의 제고를 위하여 사전심사가 요청된 사업의 사양서, 제안요청서, 공법선정, 설계 등을 사전심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 계약직 공무원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공중보건역사, 징병전담역사 등과 같이 개별법령에 의해 직접 신분이 부여된 계약직 공무원도 있다.

### ■ 고위공무원단제도

정부의 주요정책 결정 및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실·국장급 공무원을 일반공무원과 구분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정부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전략적 인사시스템을 말한다.

### ■ 공모직위 운영

효율적인 정책수립 또는 관리를 위해 특정직위에 행정부 내 해당기관 내부 또는 외부 공무원 간 상호경쟁을 통해 최적격자를 선발·임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 ■ 공무원 제안

공무원이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등으로 구분된다. 아이디어제안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해 내는 개선아이디어를 의미하며, 실시제안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공모제안은 행정기관의 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이다.

### ■ 공무원 행동강령(Code of Conduct)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 내외에서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추구하고하여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규정이다. 이 행동강령에서는 구체적으로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역할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제시함으로써 무엇이 공무원에게 필요한 행동이며 어떠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말해준다.

#### 사 례

#### UN 부패방지협약

제8조

- 1) 부패척결을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특히 그 공무원에게 청렴성·정직성·책임감을 권장함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제도 및 법체계 내에서 정확하고 올바르게 적절한 공무수행을 위한 행동강령 또는 표준을 적용시키기 위하여 노력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을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제정”토록 명시

### 사용례

- 공무원 행동강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38호)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연혁

- 부패방지법(2001.7.24. 제정),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2003.2.18. 대통령령) 제정
- 강령(code)의 어원은 나무줄기(tree trunk)를 뜻하는 라틴어 codex에서 유래하였다. 강령이란 원래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기를 이르는 말로서 정치집단이나 사회단체의 기본이념이나 기본방침을 나타내는 데 주로 사용되다가 근래에는 그 쓰임새가 확대되어 특정한 조직이나 전문가 집단이 지향하는 가치를 명문화하여 공표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 즉 강령에 윤리 혹은 행동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그 구성원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가치, 기준, 열망 또는 행동방향 등을 천명하는 것이다.

## ■ 공직자 재산신고

공직자 재산신고 및 공개란 재산등록 의무자가 본인과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여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부정이 개입될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여 공직사회의 윤리성을 높이고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한다.

### 사 례

#### 공직자 윤리법(법률 제8098호, 2006.12.28)

제2장(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 4급 이상(일부 특정분야는 7급 이상) 재산등록 및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등록재산 심사

제2장의 2(주식백지신탁제도)

- 재산 공개대상자,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 보유한 주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계약 체결 후 등록기관에 신고 또는 주식백지 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

제3장(선물신고제도)

- 공직자가 외국 또는 직무와 관련된 외국인으로부터 10만원 또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이를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신고 선물은 국고에 귀속하고 개인이 보유할 수 없음

제4장(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 재산등록의무자인 공직자는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퇴직 후 2년 간 취업제한, 관련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공개, 선물신고 및 퇴직공무원의 취업 제한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장(법 제20조)**

- ※ 연혁
- 1981.12.31 공직자윤리법 제정(1983.1.1 시행)
  - 1982.12.31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시행규칙 제정·공포

### ■ 관용심사제도

감사결과 처리과정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발생한 잘못이나 적극적인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 등에 대하여는 처벌대상자의 직상급자 또는 차상급자가 신분상 조치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사 례

#### 병무감사규정

##### 제25조(관용심사제도)

- ① 감사결과 처리과정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발생한 선의의 실패·실책이나 적극적인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 등에 대하여는 관용 조치 할 수 있다

### ■ 교섭단체

교섭단체 또는 원내교섭단체는 국회에서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단체를 말한다.

**해설**

교섭단체 구성의 목적은, 국회에서 일정한 정당에 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종합·통합하여 사전에 각 교섭단체 간 상호 교류함으로써 국회의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데 있다. 하지만 소수 정당의 의사 개진을 막는다는 단점도 지적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법 제33조는 당적에 관계없이 20인 이상의 의원만 모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사용례**

-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한나라당, 민주당 순으로 한다.

- ※ 유래
- 국회법 제33조

**■ 국민신문고**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권리·이익의 침해, 불편·불만사항이 있을 때 속 시원히 털어 놓을 수 있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의 개선을 건의, 행정기관의 각종 정책이나 의사결정과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온라인상 민원창구를 말한다.

- ※ 연혁
- 참여정부의 전자로드맵 과제로 추진하여 2005.4.1. 인터넷 신문고와 국민참여마당을 통합하여 참여마당신문고로 전 기관에서 운영하였으나, 2008.2.15. 국민권익위원회에 통합관리

**■ 나라빌(온라인대금청구시스템)**

사업자가 물품을 납품한 후에 온라인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 내부공익신고(whistleblowing)**

내부공익신고란 흔히 양심선언 또는 내부고발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조직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이었던 사람이 조직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 부패, 불법, 비리, 예산낭비 등을 알게 되어 이를 시정하고자 내부책임자 및 감사부서에 보고하는 것을 이른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하다가 성공하지 못하자 결국 관련 감독기관 및 사정기관, 언론 또는 시민단체 등 조직 외부에 알림으로써 공동체의 안전과 권익을 도모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윤리적이며 공익적인 행위도 포함한다.

**사 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내부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에 관한 규정**

(병무청 훈령 제901호, 2009.10.22)

**사용례**

- 감사담당관실 내 '내부공익신고센터' 를 설치·운영
-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를 받은 경우에 이를 신고하는 것

※ 유래

- 내부공익신고를 영어로 'whistleblowing', 즉 '호루라기 불기' 라고 하는 것은 영국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의 위법행위와 동료의 비리를 경계하던 것에서 유래하였으며, 네덜란드에서는 공익보호의 감시인으로서 'bell-ringers', 즉 '벨을 울리는 사람' 이라고 부른다.

**■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igital Budgeting & Accounting System)**

예산 편성·집행·회계결산·성과관리 등 재정활동 전(全) 과정이 수행되고 그 결과 생성된 정보가 관리되는 재정 정보시스템이다. 공공부문에서 재정자금 마련, 각 분야로의 배분, 세입·세출예산의 편성 및 집행, 결산 및 성과관리 등 재정 활동 전(全)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재정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사 례**

**해설**

정부의 재정운영의 틀을 혁신하기 위하여 국가 재정관련 기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이 범정부적으로 디지털 예산회계기획단을 출범하여 구축한 예산회계시스템으로, 그 특징은 재정활동 전반을 지원과 재정혁신 뒷받침, 재정의 실시간 관리 그리고 재정 통계 분석정보 산출 등이다.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국가재정정보망을 완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시스템을 구축, 2007년부터 시스템을 가동 중에 있다.

**사용례**

-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교육,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운영센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 등

## ■ 모범병사 문화탐방

모범병사 문화탐방은 질병 치료 또는 영주권 취득 후 자진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병사에게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하고, 병역이행의 모범사례로 홍보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 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 사 례

#### 행사 개요

- 시기 : 매년 9~10월
- 대상 : 질병치료 및 영주권 병사 100명
- 기간/장소 : 3박4일/문화유적지 및 산업시설 등

#### 사용례

- 병역 자진이행 모범병사 문화탐방

#### ※ 질병치유 후 현역입영제도 연혁

- 1998년도 정부 국정과제 선정(공정한 병역제도 확립)
- 병역처분 변경원 출원범위 확대 검토(병역법령정비위원회)
- 병역법 개정(질병치유 후 처분변경, 법 제65조 제7항, 1999.2.5.)
- 질병치료 후 현역입영자 포함 문화탐방 실시(2008.9.29.~10.2.)

#### ※ 영주권자 입영희망제도 연혁

- 뉴욕지역 병무행정설명회시 교민 건의(2003.11.4.)
- 국방부, 영주권자로서 복무시 국외여행 보장(2004.1.12.)
- 국외체재자 등의 징병검사 신청규정 신설(2004.2.19. 영128조의 2)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자 처리지침 시행(2004.2.24.)
- 국방부, 국외영주권자 군 복무 휴가여비 지급지침 시행(2004.3.18.)
- 병역의무 자진이행풍토 조성 사업계획 수립(2006.5.26.)
- 외국 영주권 소지 현역입영자 문화탐방 실시(2007.5.1.~5.4.)

#### ※ 문화탐방 인원 현황

구 분	계	육군	해군·해병	공군	전경	경비교도	비고
2009년도	100	82	8	4	4	2	영주권30, 질병치유70
2008년도	100	84	7	3	4	2	영주권40, 질병치유60
2007년도	50	43	3	2	2		영주권50

### ■ 민원해결 상담관제

제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아 서류상으로는 구제방법이 없는 경우 소속기관장 및 부서장(과장)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의무자, 복무담당자 면담 등을 통하여 고충·불만사항을 해결하거나 해결이 곤란한 경우 부결사유를 상세히 설명, 이해를 촉구하고 관련 법규나 제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개선방안을 건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 사 례

##### 사용례

- 감사실 : 현장을 찾아가는 「민원해결 상담관제」(2010.2.20.)

### ■ 법률(law)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국법(國法)이다. 헌법의 다음 단계에 놓이며, 행정부의 명령이나 입법부와 사법부의 규칙 따위와 구별되어 명령·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면 법원에서 그 규칙이나 명령의 적용이 거부되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법원은 그 법률의 적용을 거부한다. 병역관계법률은 「병역법」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다.

### ■ 별정직 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 병무지

병무지는 병무청 기관지로서 병무행정 역사의 기록·유지, 주요 정책·제도개선 사항의 소개 및 직원 간 정보공유 등의 목적으로 연간 3~4회 발행(회당 5,000부)하며, 국회, 국방부, 각 급 대학 등 유관기관과 병역명문가 등 병무행정 이해관계자, 전·현직 병무 직원에게 배포하고 있다.

**주요 수록 내용**

- 외부 저명인사 칼럼
- 이슈 병무행정업무 소개
- 달라지는 병무행정 및 제도
- 수필, 산문 등 교양물 수록
- 삶의 이야기 등 자유 주제 직원 기고

※ 연혁

- 1986.11월 창간호 발행 후 2009.12월 75호 발행
- \*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사이버 홍보관' 에 웹진 게시

**■ 병무행정설명회**

사회지도층·병역의무자 등 병무행정 직·간접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의 수렴을 위해 실시하는 모임을 말한다. 설명회 종류로는 병무행정의 주된 고객인 대학생·고등학생 등을 직접 찾아가 병역이행과정을 안내하고 개선된 병무행정 등을 소개하는 이동병무상담과 사회지도층, 병무행정 참여자 등을 초청하여 주요정책 등의 설명과 징병 검사과정, 동원훈련 등 병무행정 현장을 견학함으로써 이해와 지지를 얻는 초청설명회가 있다.

**대학교 이동병무상담 : 2월**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대학축제 시 군 입영 절차 등 안내

**고등학교 이동병무상담 : 11~12월**

- 수능시험 이후 병역제도 등 안내

**지역축제, 해수욕장 등 다중집합장소 이동병무상담 : 연중**

- 찾아가는 병무행정 홍보로 친절·청렴 기관 이미지 확산

**사회지도층 등 초청 설명회, 정책설명회 : 연중**

- 언론인, 대학교수, 지역인사 등 사회 여론주도층 대상
- 주요 정책, 제도개선 사항 등 설명 및 의견 수렴

**■ 병무홍보대사**

병무홍보대사란 병무행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위촉된 유명인사이다. 병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현역에 복무 중인 연예인 출신 병사를 대상으로 선발하고, 1년 동안 병무홍보 모델, 병무청 주요행사 참석, 징병검사 일일명예징병관 및 후배와의 대화 등 홍보활동을 수행한다.

**사 례**

**주요 활동 내용**

- 병역명문가 시상식 행사 진행(사회), 공연
- 징병검사장 일일명예징병관 활동
- 대학생 대상 군 경험 강연
- 인쇄매체, 영상물, 옥내외 매체 등 병무홍보 모델로 활동

※ 연 혁

- 2004년도부터 유명 연예인 출신 병사 중 병무홍보대사 위촉

※ 병무홍보대사 위촉 현황

구분	2010년도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	2004년도
이름	조인성	이정	이권	김범수	지성	이민우	홍경민
비고	배우	가수,연기자	가수,연기자	가수	연기자	연기자	가수

**■ 병무홍보요원**

병무홍보요원이란 병역제도 및 병무행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병무청에서 대학생, 병역 의무자의 부모 및 연인을 대상으로 선발한 사람이다. 병역수행 현장 취재, 병무행정에 대한 대언론 홍보, 여론 모니터링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활동기간은 1년이다.

**사 례**

**병무홍보요원의 종류**

- 대학생기자 : 대학생으로 병무홍보활동을 하는 기자
- 어머니기자 : 아들을 군대 보낸 어머니 기자
- 꿈신기자 : 남자친구를 군대 보낸 여자 기자

**병무홍보요원의 지원 자격**

- 4년제 이상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병역의무자가 있는 부모
- 병역의무자를 연인으로 둔 사람

### 병무홍보요원의 선발

- 매년 12월 지원서 접수
- 신문기고 및 방송경력, 인터넷 및 컴퓨터 활용능력 등 고려 선발

### 병무홍보요원의 운영

- 선발된 사람에게 위촉장 수여
-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실시
- 매월 활동비 및 실적급 지급

#### ※ 연혁

- 2001년 5개청 시범운영 도입 : 서울, 부산, 경북, 경인, 전남
- 2002년 전 지방청 확대 운영
- 「병무홍보요원 운영규정」제정(병무청 훈령 제499호, 2002.12.30.)
- 병무홍보요원의 구성 및 임무 등 전부 개정(훈령 개정, 2010.1.21.)
- 홍보실적 우수자에 대한 실적급 지급규정 신설(2005.12.29.)

## ■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사촌형제)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뜻하며,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으로부터 존경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무청은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찾기 및 선양사업을 역점사업으로 매년 추진해오고 있다.

### 참 고

#### 시상식 행사

- 2004년도부터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가문 시상식 개최
- 병역명문가 선정 : 매년 3월 중 신청서 접수, 4월 중 선정
- 병역명문가 시상식 개최 : 호국보훈의 달인 6월 중 실시(2007년 이전 9월 중)
- 표창(20가문) : 대통령상1, 국무총리상2, 국방부장관상5, 병무청장상12

#### 명문가 우대 및 명예심 제고

- 병역명문가 증서 수여 및 명문가증 교부
- 병무청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 헌액
- 병적증명서 발급 시 '병역명문가' 표기
- 정책자문위원·병역판정명예옴부즈만 위촉, 징병검사 장비활용 건강검진 등
- 각종 행사시 초청·시민상 수여, 국·공립시설이용료 면제·할인 등

### 사용례

- 병역명문가 찾기 및 선양사업
- 병역명문가 증서·패
- 병역명문가증
- 병역명문가 표창심사위원회
-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 등

#### ※ 연혁

- 「병역이행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정(병무청 훈령 제583호, 2004.9.8.)
- 「병역이행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개정(병무청 훈령 제928호, 2010.5.4.), 「병역이행명문가 명칭을「병역명문가」로 변경

#### ※ 병역명문가 선정현황

구분	계	2010년도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	2004년도
접수	2,057	398	251	253	227	337	357	234
선정	760	192	147	132	73	92	84	40
포상	141	20	20	20	21	20	20	20

#### ※ 포상금 내역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2009 ~ 2010년도	500만원	300만원	150만원	100만원
2008년도	500만원	300만원	150만원	50만원
2004 ~ 2007년도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 ■ 비연고지칭

연고지칭 이외(수도권은 수도권 이외)의 소속기관을 말한다.

### ■ 상시학습제도

교육이 직무수행과정에서 항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체제로,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간 일정 교육시간을 의무이수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 ■ 상임위원회

국회의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 사항에 관한 입법 등의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설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 사 례

#### 해설

국방위·법제사법위·외교통상위 등 16개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그 소관 사무는 법에 의해 정해져 있다.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국방위원회는 국방부소관 및 회의사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안과 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다.

#### 사용례

- 국회는 임시국회를 열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시급한 법률안을 심의하기로 하였다

※ 유래

- 국회법 제36조~제41조

## ■ 성과관리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 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정부업무 성과관리 체계

#### 성과관리계획 수립

5년 단위의 성과관리전략계획과 당해년도 추진과제 및 성과지표를 제시하는 성과관리시행 계획 수립

**집행·점검**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

**평가** 각 기관이 매년 4월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다음해 1~3월 자체평가 실시

**환류** 정책개선 및 예산·조직, 개인의 인사·보수 등에 반영

## ■ 슬로건(Slogan)

조직이 추구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그 의미를 고객(국민)에게 전달하는 간결한 문구 및 조직의 비전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구호 형식으로 표현하며, 쉽고 단순한 표현으로 구성원의 행동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 병무청 슬로건 연혁

- 2008.7월 제정 : 더 맑은 병역, 더 밝은 나라

## ■ 시간제근무

‘시간제근무’란 주당 40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전일제근무와 달리 본인의 필요에 따라 주당 15~35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재직기간 및 보수 등을 지급 받는 제도를 말한다.

## ■ 시민감사청구제도

시민감사청구제도란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나 비리 사항, 사위행위에 의한 면탈 등을 시민감사청구를 통해 신고 받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과정에 외부 민간인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여 참관 및 감사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 사 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감사청구권)

-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사용례

- 시민감사 청구제도(감사실, 2006.1.1.) 위법 부당한 병역처분이나 비위행위 등을 신고 받아 감사과정 참관 및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 제시

## ■ 시행규칙(enforcement regulations)

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한 규칙으로,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총리령 또는 부령(部令) 등을 말한다. 「병역법 시행규칙」,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있다.

## ■ 시행령(enforcement ordinance)

어떤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명령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며, 「병역법 시행령」,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다.

## ■ 연대책임

행정감사 또는 비위조사 결과 비위행위가 직무와 관련이 있을 때 비위행위자의 직·차상급자에 대하여도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하며, 그 비위 정도에 따라 비위행위자 보다 한 단계 또는 동일 수준의 처분을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 사 례

#### 병무감사규정

제29조(연대책임) 비위행위자의 직·차상급자는 비위행위 당사자보다 한 단계 하위 또는 동일 수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 예규(established rule)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 ■ 예산

공공부문에서의 예산은 정부 등의 수입, 지출에 관한 예정계획이며, 그 실질적 내용은 예산연도에 있어서 정부 등의 정책이념과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협의의 개념에 있어 예산, 즉 정부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와 국고채무 부담행위 등 5개 요소를 그 내용으로 한다.

### 사 례

#### 해설

예산은 공공재의 공급, 최적성장, 고용 및 수요관리, 안정 및 소득분배 등 재정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며, 예산규모라 하면 세입·세출예산을 지칭하고, 실질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며, 예산의 본체를 이루고 있다

#### 사용례

- 예산편성, 예산과목, 예산회계법, 예산회계시스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유래

- 예산회계법(법률 제849호, 1961.12.19) 제19조(현재는 국가재정법으로 명칭변경)

## ■ 예산과목

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집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내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하게 되는데, 이를 예산과목이라 한다.

사 례

**해설**

우리나라의 경우 세입예산은 관·항·목으로, 세출예산은 장·관·항·세항·목으로 분류되며, 장·관·항을 입법과목, 세항·목을 행정과목이라고 한다. 項을 설정하는 데는 반드시 예산의 용도나 목적이 선명히 나타나도록 분류되어야 하며, 項은 다시 세부사업이나 활동단위로 細項으로 구분되고, 細項은 다시 필요시 위치, 성격, 사업단위, 조직별 등에 따라 細細項으로 분류되거나 관리의 필요에 의하여 세 사업으로 분류된다.

**사용례**

- 예산과목 해소

※ 유래

-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조(현재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으로 명칭 변경)

**■ 예산배정, 재배정**

예산배정은 예산집행의 과정 중 첫 단계로 중앙예산기관이 각 중앙관서에 자금(예산액)을 일정한 기간별로 나누어 정해주거나 필요시기에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 재배정은 중앙관서의 장이 중앙예산기관으로부터 배정받은 예산을 산하 각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분기별 또는 필요시기에 교부하는 절차 또는 그 행위를 말한다.

사 례

**해설**

승인된 예산은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는 있으나, 지출은 지출한도액, 즉 배정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통상 예산배정의 개념은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와 지출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동시에 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례**

- 예산의 배정, 예산배정계획, 예산의 재배정

※ 유래

- 예산회계법(법률 제849호, 1961.12.19) 제33조(예산의 배정)

- 현재는 국가재정법(법률 제9785호, 2009.7.31)으로 명칭 변경

**■ 온-나라 시스템**

온나라 시스템은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의 업무

처리 절차를 통합화·표준화하고 이를 체계화한 시스템으로, 정책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유지·관리하며, 단위과제별 추진실적을 관리한다. 또한 주요 정책의 추진상황을 분석, 피드백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업무 추진 과정에서 생성되는 각종 보고서, 활동실적 등은 축적되어 기록·관리된다.

## ■ 온비드시스템(인터넷전자자산처분시스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교육기관 등 이용기관과 일반고객에게 입찰물건 정보 검색, 입찰참가, 입찰집행, 계약체결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 유연근무제

일정한 시간과 장소 형태를 요구하는 정형화된 근무 제도에서 탈피한 개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근무 제도를 말한다.

사 례

### 유연근무제의 유형

- 선택적 근무시간제(Alternative work schedule)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율 조정(자유롭게 출·퇴근시간을 조정) : 연구직, 육아부담자 등
- 집약근무제(Compressed work)  
총 근무시간(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집약근무로 보다 짧은 기간 동안(5일 미만) 근무  
\* 예 : 1일 10시간 근무 시 4일만 출근 : 연구직
- 재량근무제(Discretionary work)  
실질적인 근무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관과 개인이 합의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  
\*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수행방법이나 시간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 : 연구직, 국방홍보영화, KTV 프로그램 제작 등
- 집중근무제(Core-time work)  
핵심근무시간(예 : 10:00~12:00)을 설정, 이 시간에는 회의·출장·전화 등을 지양하고 최대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함 : 정책·기획업무수행기관 등
- 유연복장제(Free-dress code)  
연중 자유롭게 편안한 복장을 착용토록 하여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진작(냉·난방 등 에너지 절약에도 기여) : 전 기관  
\* 대민업무담당기관 등은 제외

- 재택근무제(At-home work)  
부여받은 업무를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수행 : 소청심사, 징계검토,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개별적·독립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업무, 장애인, 육아부담자 등
- 원격근무제(Telework)  
주거지 인접지의 원격근무용 사무실(스마트오피스)에 출근하여 근무,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 : 소청심사, 징계검토,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개별적·독립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업무, 장애인, 육아부담자 등

## ■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행정일반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 ■ 일상감사

일상감사란 시행착오나 예산낭비 예방을 위해서·예산의 낭비요인 및 집행의 정당성 여부·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의 법적요건 구비여부·지출원인 행위를 재무관에게 요청하기 전의 구비요건 등·민원처리의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에 실시하는 상시감사를 말한다. 감사책임자가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을 때에는 감사담당관의 확인을 받아 그 문서 전면 여백에 '일상감사 필' 이란 고무인을 날인하여 의뢰부서에 회보하고 발견된 문제점은 소관 부서에서 즉시 시정하고 그 시정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 사 례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일상감사) 기관의 주요 업무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 병무감사규정

제2조 제7항(정의)

7. 일상감사 : 시행착오와 예산낭비 예방을 위하여 중요 업무와 예산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사전 또는 시행 중 실시하는 감사

## ■ 임용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설정)하여 근무하게 하는 모든 인사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복직, 면직, 해임, 파면을 말한다.

## ■ 입법예고(Advance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있어서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미리 이를 예고하여 그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 사 례

#### 해설

행정절차법은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이를 예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입법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행정청은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사용례

- 병무청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행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인이라도 징병검사장에 방문해 병역면제 처분을 받아야 했으나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징병검사장을 방문하지 않고 출원에 의해 병역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 자체평가

기관 스스로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주요정책,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의성과달성도, 행정관리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사 례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정의)

③ “자체평가”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사용례

- 각 기관은 2009.5월까지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 ■ 적극행정 면책제도

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 규정위반 또는 손실, 예산낭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고의·사적이의 도모 등 개인비리가 없고 현실적 타당성,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 책임 면책 및 감경처리 하는 것을 말한다.

사 례

**적극행정 면책제도 시행 지침(감사실 481호, 2009.2.13.)**

적극적인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사항 관용처리

### ■ 정무직 공무원

선거, 국회동의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 정부업무평가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를 점검, 평가하여 정책개선 등을 환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 ■ 정책연구용역

정책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 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 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사 례

**병무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제845호)**

사용례

-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

※ 유래

- 국무총리 훈령(총리령 제492호, 2007.7.30)

## ■ 주의

감사결과 행정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인하여 법령 또는 각종 지시사항 등을 위반하였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경각심을 촉구하기 위하여 피감사 기관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명하는 조치를 말한다.

### 사 례

#### 병무감사규정

제19조 제1항 제4호(행정감사 및 비위감찰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⑤ 주의 : 각종 지시사항 등을 위반하였거나 그 처리상태가 소홀한 경우

## ■ 직무분석(Job Analysis)

직무분석은 해당직위의 성과책임규명, 직무평가 및 직무수행요건 규명 등 각종 직무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즉, 직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직무의 내용을 파악한 다음 각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률, 숙련, 책임 등의 제 조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무에 바탕을 둔 과학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직무분석은 정원관리는 물론 선발 및 배치의 기준·직무의 이동경로·인사고과의 항목선정·교육훈련의 필요성 발견·보수(임금)설정 등의 관리 내용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 사 례

####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직무분석)

①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또는 소속 장관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 직무분석규정

제5조(직무분석 실시권자)

① 소속장관은 당해 기관과 그 소속기관 등의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 유래

- 1963 ~ 1966 : 직위분류제로 전환 시도 (전 부처 일반직 대상)
- 1996 ~ 1997 : 개방형직위 선정 (전 부처 5급 이상 일반직 대상)
- 2000 ~ 2002 : 성과주의 인사행정 구축 (\*헤이기법 도입)
- 2003 ~ 2005 :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기반 마련
- 2006.7.1 ~ :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제 도입·시행

## ■ 직무성과계약제

직무성과계약제는 장·차관 등 기관의 책임자와 실·국장, 과장 간에 성과목표 및 지표 등에 관하여 합의한 후 공식적으로 체결하는 성과계약(Performance Agreement)을 말한다. 당해년도의 “직무성과계약”에 의해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성과급, 승진 등에 반영하고자 도입한 제도를 말한다.

### 사 례

#### 해설

중앙부처 4급 이상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계약직 공무원이 직무성과계약의 대상으로서, 계약 체결일 현재의 보직을 기준으로 계약당사자를 확정한다. 기관장은 부기관장과, 부기관장은 실·국장과, 실·국장은 과장과, 과장은 복수직 서기관과 성과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연말(12.31)을 기준으로 익년도 초에 평가한다. 3~5년 단위의 전략 계획에 의해 조직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전략목표를 도출하고, 실·국장, 과장, 서기관 급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인별 성과목표를 수립하여 기관목표와 개인목표간 연계를 강화한다. 전략목표는 결과(Outcome)중심의 목적과 지표로 구성되고 성과목표는 결과 또는 산출(Output) 중심으로 목표와 지표로 구성되는데, 결과지표는 조직의 활동과 산출을 통해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게 되므로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바람직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결과 중심으로 관리(Managing for Result)”라는 철학을 정부에 도입하는 것이다

## ■ 징계

징계란 특별권력관계나 특별감독관계 또는 특별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과하는 일을 말하며, 넓게는 일정한 조직 안에서는 규율에 위반하여 그 내부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를 총칭한다. 좁게는 공법상의 근무관계 또는 특별감독관계에 있어서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행정상의 책임을 묻는 제재를 말한다. 징계처분으로 과하는 제재를 징계벌이라 하며 징계벌은 형사벌과는 목적·내용 및 권력의 기초 등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들은 병과 할 수 있으며, 징계의 종류로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이 있다.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며, 해임은 공무원의 신분은 박탈하되 연금은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는 것이다.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것이며,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 청렴계약제

청렴계약제란 국제투명성기구(TI :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부패방지를 위하여 개발한 제도로서 행정기관의 건설공사 발주, 기술용역 발주, 물품구매의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업체와 공무원 양 당사자가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제재를 받겠다고 서로 약속하고 이행함으로써 공공부문계약과 관련한 부패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 ■ 총사업비 관리제도

총사업비(개개의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의미)관리제도는 국고지원으로 시행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 추진단계별로 관리함으로써 단위사업이나 공정 간의 사업비를 임의로 증액하지 못하도록 하여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관리방식을 말한다.

### 사 례

#### 해설

총사업비관리는 국가 직접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국고보조사업 및 국고보조를 받는 민관기관의 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 총사업비가 토목사업은 500억 원 이상, 건축사업은 2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유래

- 예산회계법(현재는 국가재정법) 제50조(현재는 국가재정법으로 명칭 변경)

## ■ 총액인건비제도

예산당국은 각 부처별 인건비예산의 총액만을 관리하고, 각 부처는 동 인건비 한도 내에서 조직목표 및 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인력의 규모와 종류(직급, 직렬)의 결정, 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의 자율성을 보유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로서 정원관리방식 및 보수결정방식의 획기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와 비슷한 서구의 제도로는 총괄경상비제도가 있다. 미국에서는 'lump-sum budgeting', 영국·호주에서는 'running costs', 캐나다에서는 'operating budget'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사 례

**해설**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입·시행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도의 기본 취지는 예산뿐만 아니라 조직·인사 범위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예산운영 측면에서 재원의 탄력적 활용과 인건비 예산절감을 통해 형성된 여유 재원을 각종 수당이나 성과급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정원 관리는 행정안전부가 대통령령(직제)으로 총 정원을 규정하는데, 필요시 총 정원의 3%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다. 계급별 정원도 5급 이하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인건비 관리는 기획재정부가 총 정원을 기준으로 한 해 인건비 총액을 정하고 각 부처가 범위 안에서 총 정원, 직급별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절감되는 인건비는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유래

- 행정자치부(조직), 중앙인사위원회(인사), 기획예산처(예산)가 공동으로 주관 2005년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을 시작하여 2006년까지 8개 부처 44개 책임운영기관의 시범실시를 거쳐 2007년 1월부터 전(全) 행정기관으로 확대 실시하였다.

**추징**

법령적용의 착오, 자료조사의 미비 등으로 발생한 국고 손실, 세입결함 등이 발생한 때에 이를 정당하게 보전토록 명하는 조치를 말한다.

사 례

**공공감사 기준**

제29조(감사결과 처분(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할 경우 추징 또는 원상복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탄력근무제**

1일 법정 근무시간인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출근시간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 례

**사용례**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 및 제12조
- 정보공개법의 개정(2004.1.29공포, 7.30시행)

### - 탄력근무제 운영

07:00	10:00	12:00	13:00	16:00	18:00
탄력근무시간	핵심근무시간	중식시간	핵심근무시간	탄력시간	

## ■ 특정직 공무원

법관·검사 등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신분보장·복무 등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 ■ 행동강령책임관

행동강령책임관이란 공무원행동강령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의 교육, 상담과 준수여부 점검, 위반행위 신고, 접수, 조사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본청의 경우 감사담당관을 소속기관은 운영지원과장(민원 상담소는 인터넷상담과장)이 담당공무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 사 례

#### 병무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등) 본청과 소속기관에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 운영

## ■ 행정규칙(administration order)

행정 주체가 정한 일반적인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아니하는 규칙으로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범 중 행정조직 내부에서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하며, 유형은 훈령·예규·고시 등이 있다.

## ■ 행정소송(administrative litigation)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관할 법원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하며, 1998. 3. 1부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 ■ 행정심판(administrative adjudication)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행정기관(국민권의위원회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이 이를 심리하고 판결하는 절차를 말하며, 재결 결정권한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있다.

### ■ 행정절차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행정권 행사의 법적 절차로서 행정입법절차, 1차적 행정처분절차, 행정집행절차, 사후구제절차, 행정처벌절차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행정기관이 행정에 관한 일반적인 결정을 할 경우 거쳐야 하는 대외적 교섭과정을 뜻한다.

### ■ 현지시정(지방청장 조치위임)

감사처분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에서 조치하여도 감사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현지에서 지방병무청장 조치사항으로 위임한 처분요구 형식을 말한다.

#### 사 례

#### 병무청 감사규정

제19조(행정감사 및 비위감찰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감사반장은 지적된 경미한 행정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 ■ 확인서

공공기관 감사에서 확인서는 감사자가 인지한 '특정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자가 틀림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면을 말한다. 확인서는 일정한 규격 또는 서식이 없고 특정한 사실을 필요에 따라 기재하면 되나, 그 내용에 따라 수감자 또는 관련된 제3자(처리자, 감독자, 현임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확인하는 사실의 인지여부가 나타나야 한다.

**병무감사규정**

제17조(자료제출 요청 등) 감사반장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문답서, 확인서 또는 감사사항 확인서, 결함사항경위서를 받을 수 있다.

**■ 훈령(directive)**

상급기관이 하급기관(보조기관 포함)에 대하여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행정기관의 내부관계에서 하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발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한다.

**■ BSC(Balanced Score Card) : 균형성과기록표, 균형 성과관리**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성과목표와 측정지표를 통해 각각의 목표에 대한 성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 균형 있게 평가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 해주는 효과적인 전략관리시스템으로 성과 달성도를 평가하여 정책 및 인사 등에 환류함으로써 조직(개인)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BSC 시스템은 4대 관점(학습과 성장, 업무프로세스, 고객, 재무)에 따라 장·단기, 원인·결과, 내·외부 등을 균형 있게 조직의 성과를 관리 하도록 설계된 모델 및 정보시스템을 말하며, 미션·비전, 관점,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이니셔티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e-사람(전자인사관리시스템)**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행정 전반을 종합·정보화함으로써 인사정책 수립 및 부처 인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인사기관이 개발·배포한 표준화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말한다.



• 병무행정 용어 해설집 •

## 부 록

이 부록에 표기된 용어는 병적증명서 발급규정(병무청 훈령 제920호)에 의하여 병적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병적증명서에 기재할 용어를 정리하여 수록한 것임.

-  구 병역법 병역사항 등에 대한 용어 표기 기준
-  영문 병적증명 발급 시 병역용어 표기 기준







## 구 병역법 병역사항 등에 대한 용어 표기 기준

### ■ 구 병역법 관련사항

해당연도 관련조항	조항내용	표기
1949.8.6.		
구법 제39조	생계곤란자 현역병 징집연기 (2년간 연기후 재징병검사)	입영연기(생계곤란)
구법 제40조	재학생 징집연기 (26세한도 연기후 재징병검사)	입영연기(재학생)
구법 제41조	국외거주자의 징집연기	징병검사연기(국외거주)
구법 제47조	입영부대 신체검사결과 귀향	입영후 귀가
1957.8.15.		
구법 제27조 제1항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학생 징집연기, 입영연기</li> <li>학보(학적보유자) 연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징병검사연기(재학생)</li> <li>입영연기(재학생)</li> </ul>
“ 제2호	국외거주 징집 또는 입영연기	징병검사연기(국외거주)
“ 제3호	3인이상 동시재영으로 인한 징집 또는 입영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징병검사연기(동시재영)</li> <li>입영연기( “ )</li> </ul>
“ 제4호	2인이상 전사자가 있는 경우 징집 또는 입영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징병검사연기(가족전 · 공상)</li> <li>입영연기( “ )</li> </ul>
구법 제28조	재감사유 징집 또는 입영연기	징병검사 연기(재감)
1962.10.1.		
구법 제35조	징병검사의 순연	징병검사 연기
구법 제42조	징병처분 연기	재신체검사대상
구법 제44조1항 제1호 · 2호	생계유지곤란자 징집연기	징병검사 연기(생계곤란)
“ 제3호	전사자 가족의 징집연기	징병검사 연기(가족 전 · 공상)
“ 제4호	독자사유 징집연기	징병검사 연기(독 자)
구법 제45조	재학생 징집연기(26세한도)	징병검사 연기(재학생)
구법 제46조	선원의 징집연기(25세한도)	징병검사 연기(선 원)

해당연도 관련조항	조항내용	표기
구법 제47조	국외거주자의 징집연기	징병검사연기(국외거주)
구법 제48조	미수복지구 거주 징집연기	징병검사연기(미수복지구거주)
구법 제49조	재감자의 징병검사연기	징병검사연기(재감)
구법 제51조	질병, 심신장애 입영기일연기	입영기일연기(질병)
구법 제52조	입영후 즉일 귀향	입영후 귀가(질병)
구법 부칙 제13조	정교사 및 기술요원의 보충역 편입	보충역(정교사, 기술요원)
구법 부칙 제22조	징병처분 연기	재신체검사 대상
구법 부칙 제23조	재학생의 처분연기	징병검사 연기(재학생)
1970.12.31.		
구법 제21조 제1항제1.2호	가사사정으로 인한 징병검사 연기(생계곤란, 23세한도)	징병검사 연기(생계곤란)
“ 제3호	“ (독자, 23세한도)	“ (독 자)
“ 제4호	“ (독자, 21세한도)	“ (독 자)
“ 제5호	“ (가족 전 · 공상, 21세한도)	“ (가족 전 · 공상)
구법 제22조	재학생의 징병검사연기	“ (재학생)
구법 제23조	선원의 징병검사연기	“ (선 원)
구법 제24조	국외거주자의 징병검사연기	“ (국외거주)
구법 제25조	미수복지구 거주자 징병검사연기	“ (미수복지구거주)
구법 제26조	재감자의 징병검사연기	“ (재 감)
구법 제31조	입영기일의 연기(질병, 재난 등)	입영기일연기(사유가 기록 되어 있으면 사유 기재)
구법 제32조	입영부대 신체검사결과 귀향	입영후 귀가

해당연도 관련조항	조항내용	표기
1983.12.31.		
구법 제17조	현역병 입영신체검사 및 귀향	입영후 귀가
구법 제52조제1항 제1~5호	징병검사 또는 입영의 연기 (고교이상 재학생, 연수중인 자, 선원, 국외거주, 재감)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기록되어 있으면 사유 기재)
구법 제53조	입영기일등의 연기(질병, 재난 등)	입영기일연기
구법 제54조제1항 제1~4호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 (1호 : 생계곤란, 2호 : 가사사정, 3호 : 독자, 4호 : 가족 전 · 공상)	보충역(생계곤란, 가사사정, 독자, 가족 전 · 공상)
1993.12.31.		
구법 제60조제2항 제1,2호	입영연기 (제1항1호:선원, 2호:국외, 3호:재감) (제2항1호:재학생, 2호:연수)	입영연기 (재학생, 연수, 선원, 국외, 재감)
구법 제62조제1항 제1,2호	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 등 (1호 : 생계곤란, 2호 : 가족 전 · 공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국민역(생계곤란)</li> <li>• 보충역(가족 전 · 공상)</li> </ul>

## ■ 구 병역법시행령 관련사항

해당연도 관련조항	조항내용	표기
1959.2.18.		
구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제1~6호	입영기일 연기 1호 : 질병, 2호 : 군 지원, 3~5호 : 가족 위독 또는 사망, 6호 : 천재 지변	입영기일연기
구법 시행령 제74조	입영부대 신체검사결과 귀향	입영후 귀가
1963.1.28.		
구법 시행령 제116조 제1항제1~5호	징병검사 불참신고(불능신고) 1호 : 질병, 심신장애, 2호 : 행방불명(본인) 3호 : 군지원, 4호 : 재감, 5호:기타 사유	징병검사기일연기

해당연도 관련조항	조항내용	표기
1970.6.2.		
구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제1~5호	징병검사 불능신고 1호 : 질병(본인), 2호:행방불명(본인), 3호 : 군지원, 4호:재감, 5호:기타 사유	징병검사기일연기
구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제1~4호	징병검사 기일변경 1~3호 : 가족 위독, 사망 4호 : 천재 지변	징병검사기일연기
구법 시행령 제152조 제1항	위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해당자로 입영 기일연기	입영기일연기
1971.3.10.		
구법 시행령제53조 제1항제1~7호	입영기일의 연기 1호 : 질병 또는 심신장애 2호 : 가족 위독 · 사망 3호 : 천재지변, 4호 : 행방불명(본인) 5호 : 군 지원, 6호 : 재 감 7호 : 기타 사유	입영기일연기
1984.9.22.		
구법 시행령제97조 제1항제1~7호	병역의무이행기일의 연기 1호 : 질병(본인), 2호 : 가족 위독 · 사망, 3호 : 천재지변, 4호 : 행방불명(본인), 5호 : 군 지원, 6호 : 국외여행, 7호 : 기타 사유	입영기일연기
1994.10.6.		
구법 시행령제129조 제1항 제1~8호	병역의무이행기일의 연기 1호 : 질병(본인), 2호 : 가족 위독 · 사망, 3호 : 천재지변, 4호 : 행방불명(본인), 5호 : 군 지원, 6호 : 국외여행, 7호 : 시험 응시, 8호 : 기타 사유	입영기일연기

■ 병적기록표상의 이력 표기 관련사항

병적기록 용어	용어내용	표기
1보, 부칙 제6조 보충역	구병역법(1962.10.1) 부칙 제6조에서 193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서 종결처분을 받고 입영하지 아니한 자를 제1보충역에 편입	제1보충역
각령사면, 각령사면 보충역	사면받아 보충역 처분된 자	보충역(사면)
간, 간지, 간후생	간부후보생 지원	간부후보생
거미자, 거주지 미확인	거주지 미확인자	행방불명자
고령자	연령초과자	연령초과자
고령회수	입영통지취소	입영통지취소(연령초과)
고의불참	징병검사기피, 입영기피	징병검사(입영)기피
공군 선방위 신불	공군방위소집 신체검사 불합격	귀가
공군 선방위 응소	공군 방위소집복무	방위소집
공시완성	공소시효완성	공소시효완성
교부불능, 교불	징병검사연기, 입영기일연기	징병검사(입영기일)연기
교소	교육소집	방위소집
교육소집기피, 불응소	입영기피	입영기피
교육신불	교육소집 신체검사 불합격	귀가
교통 입대	교통기관 입대	입영
교통기관 연기	국가운영기간의 송수신 기술요원 등의 입영연기	입영연기(기술요원)
구두 진정	이의 제기	이의제기
구법 제33조 징집제한	구병역법(1970.12.31)제33조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자 징집제한	징집제한(수형)
구법 제55조 징집제한	구병역법(1962.10.1)제55조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은 자 징집 제외	징집제한(수형)

병적기록 용어	용어내용	표기
국교장기	초등학교 졸업자 장기대기	소집면제(장기대기)
국교정교사/중교정교사	초·중등교사	정교사
군기술위탁생 입영	군장학생	군장학생
극빈	생계곤란	생계곤란
기일변경	징병검사연기, 입영기일연기	징병검사(입영기일)연기
기입대, 입대	입영	입영
기피해제재하령	소재파악으로 재입영 통지	재입영 통지
단, 단현(短/短現)	구병역법(1957.8.15)제8조제1항에서 각급학교 정교사로 재직하는 자는 재영기간을 6개월로 단축	단기현역병
단독불명, 단불, 단독소재불명	단독행방불명	행방불명
동행입대	기피우려자 동행입대	입영
등무, 등재무, 등재미필	병적부 기록사실 없음	병적기록 없음
무고, 무고기피, 불응 무고불참, 무불	징병검사기피, 입영기피	징병검사(입영)기피
무단퇴거	신고하지 않은 퇴거	행방불명
무식자처분	한글 미해득자 처분	한글 미해득
무적미필, 무적	무호적으로 인한 병역미필	병적기록 없음
무종 처분연기, 처분연기	병역처분 연기	재신체검사대상
무종 3회	7급 3회(소집면제)	7급3회
무학인수거부	무학(한글미해득)	입영인수거부(무학)
무학입거, 전무식입거	글모르는 사람 입영부대 인수거부	귀가(무학)
문맹자	글을 모르는 사람	한글 미해득자
미검	미수검	징병검사 미수검
미령제	나이미달로 전역	연령미달

병적기록 용어	용어내용	표기
미수검자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자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자
미하령	입영통지 하지 않음	입영통지 하지 않음
반려, 반료, 반루자, 반료자	영장반려	통지 취소
반려확인입대, 반루입대	입영	입영
발누, 발채누락	병적부 등재누락	병적기록 없음
범법 입대	기피자 색출 입영	입영
법29조 귀향	구병역법(1957.8.15)제29조 관련 입영후 귀가	귀가
법34조 보충역	구병역법(1970.12.31)제34조 관 련 징병검사와 입영의무 면제 및 보충역 편입	보충역(연령 초과)
법35조(무고불응)	징병검사 기피	징병검사 기피
병적제외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 을 받은 자 병적 제외	병적 제적
보 권	현역병 결원시 공석 입영	현역 결원충원
보권입영대상자	현역병 입영통지 인원부족시 입영대상자	예비입영대상
보권하령	입영통지	입영 통지
보충역(문교)	구병역법(1957.8.15)부칙제6조제2항에서 징집연도가 1950년 내지 1954년도의 징병 적령자로서 1955년 3월 31일 이전 사범 학교를 졸업한 정교사와 국가가 경영 하는 기관의 송수신기술요원 등을 제2 예비역(현재의 보충역)에 편입	보충역
보충역(징집연령초과)	연령초과사유 보충역편입	보충역(연령 초과)
복역자, 복형중, 복형연기자	재감중인자	징병검사, (입영기일)연기(재감)
봉투에 의거 공군입대, 병편	입영	입영
부도, 전달부도	전달 불능	행방불명
부재복귀(不在復歸)	병적이 없어 본적지로 보냄	병적이 없어 본적지로 보냄

병적기록 용어	용어내용	표기
불구자	장애인	장애인
불응	징병검사기피, 입영기피	징병검사(입영)기피
불취	초등학교 입학사실 없음	무학
불취학귀향	불취학사유 귀향	귀가
불취학인수거부	불취학사유로 입영부대의 인수거부	입영부대 인수거부
불치	치료불가	치료 불가
불합격귀향	입영후 귀가	귀가
사면 보충역	사면받아 보충역처분된 자	보충역(사면)
생착	생년월일 착오 기재	생년월일 착오
서미	서류 미비	서류 미비
선소집	선방위소집	방위소집
성착	성별 착오자	성별 착오
소면(감호)	소집면제(수형)	소집면제(수형)
소불,소재불명	소재 불명	행방불명
소집면제(3차 무종)	3회 무종후 소집면제된 자	소집면제(3회 무종)
소집면제(감호)	소집면제(수형)	소집면제(수형)
소집면제(무학)	소집면제(무학)	소집면제(무학)
소집면제(장기)	장기대기사유 소집면제	소집면제(장기대기)
소집면제, 소면	소집면제	소집면제
소집명령	소집입영통지	입영통지
소집보류(국교사)	소집보류	입영연기(정교사)
수검기피	징병검사기피	징병검사기피
수검자	징병검사를 받은자	징병검사를 받은자

병적기록 용어	용어내용	표기
수검책정	징병검사대상	징병검사대상
수기	수검기피	징병검사기피
수송중도망, 현장도피	입영기피, 입영부대 현장도피	입영기피
수형입영보류	수형자로 입영보류	입영연기(재감)
순무식	학교 진학사실 없음	무학
신검교불	징병검사 연기	징병검사 연기
신불, 신불귀향	입영부대 또는 입영전 간이 신체검사결과 귀가	귀가
신소(身消)	이중 등재로 삭선	이중 등재로 삭선
실연령미달	연령미달	연령미달
양군모연기	입영기일연기(시국사범)	입영기일연기(수형)
여자(성착)	실제 여자이나 성별 착오기재	성별 착오
영장반루(기입대자)	영장 반려	통지취소
유고 불참	징병검사 또는 입영기일연기	징병검사(입영기일)연기
육군기행병 입영	육군 기술행정병 입영	입영
육군 선소집	교육소집 이전에 육군 방위소집	방위소집
을종위탁생,군기술위탁생	군장학생	군장학생
인거	인수거부	입영부대 인수거부
인명교불	징병검사기피	행방불명
인수거부, 인접불응, 입거	입영부대의 인수거부	귀가(입영부대 인수거부)
입거자	전입자	전입자
입단	1960년도 국토건설단 입단	국토건설단
입신병종	입영신체검사결과 병종	제2국민역
입연(원교)/입연(통교)	입영연기	입영연기

병적기록 용어	용어내용	표기
입영기일연기(장기출타)	입영기일연기(장기출타)	입영기일연기(행방불명)
입영보류(저자질)	수형, 혼혈 등의 사유로 입영보류	입영연기(사유)
입영보류자(수형)	입영보류	입영연기(재감)
입영불능신고	입영불능신고	입영기일연기
입영신검 불합격	입영신검 불합격	귀가
입전신불	입영부대 또는 입영전간이신체검사결과 귀가	귀가
자수 현역, 자수(자신)신고	입영기피자 자수신고	입영기피자 자수신고
자진 신고 (중간기피 보충역)	기피 자수자로서 입영방침 저촉으로 인한 보충역	보충역(자수신고)
자진 신고	입영기피자 자수신고	기피자(자진신고)
장기 정제, 정기정제자	장기대기	소집면제(장기대기)
재감징검순연	재감 징병검사연기	징병검사연기(재감)
재하령 원신분 복귀	재입영 통지	재입영 통지
저자질 귀향	수형, 혼혈 등의 사유로 귀가	귀가
적출 누락	호적 발체 누락자	병적기록 없음
전달 불충, 전달 불능	통지서 미교부	행방불명
전무식	무학(한글 미해득)	무학
전방부귀향	전방부대 귀가	귀가
전불	전가족 행방불명	행방불명
전불 기피	전가족 행방불명 기피	입영기피(행방불명)
전행불, 전호행불	전가족 행방불명	행방불명
전호불명, 전호소불, 전호	전가족 행방불명	행방불명
정교사 연기	입영연기(정교사)	입영연기(정교사)
준예비역	실역필보충역	실역필보충역

병적기록 용어	용어내용	표기
즉일귀향, 즉귀, 현귀, 귀향	입영부대 또는 입영진간이신체검사결과 귀가	귀가
지연도착	지연도착으로 입영기일 조정	입영기일연기(지연도착)
지입영, 지입대	지원입영	입영
직권말소, 직말	직권말소	직권말소
질병입거	아픈 사람 입영부대 인수거부	귀가(질병)
징검연기	징병검사연기	징병검사연기
징병검사미필	징병검사기피	징병검사기피
징병처분 미필(법35조)	구병역법(1962.10.1)제35조 관련 징병검사 미필	징병검사연기
징병처분변경자	병역처분변경자	병역처분변경자
징병처분연기	재신체검사대상	재신체검사대상
징집연기	징병검사 또는 입영기일연기	징병검사(입영기일)연기
착하	착오통지	통지 취소
처분누락, 누락	등재무	병적기록 없음
처분취소(변경)	병역처분취소(변경)	병역처분취소(변경)
처분취소(불취)	불취학사유 병역처분취소	병역처분취소(무학)
처형자	형을 선고받은 자	귀가(수형)
추가적출	호적부에서 징병검사대상자의 추가 조사	호적 추가 확인
취약, 농어촌보충역	취약 및 농어촌지역 보충역	취약농어촌보충역
취적신고	호적 취적으로 병적부 등재	병적부 등재(취적)
카무	병적기록표 없음	병적기록표 없음
카발	병적기록표 발취	병적기록표 발취

병적기록 용어	용어내용	표기
통보입대	입영	입영
특례, 특례보충역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보충역(특례)
특수전역	병역처분변경	병역처분변경
특전, 특수전, 특수전면역	병역처분변경	병역처분변경
하령	입영통지	입영통지
하령기피	입영기피	입영기피
하령누락	입영통지 누락	입영통지 누락
하령연기	입영연기	입영연기
하령취하	입영통지취소	입영통지취소
하령기일 조정	입영통지일자 조정	입영기일연기
하령취하(독신자)	소집명령취소(독신)	통지취소(고아)
하취	입영통지취소	통지취소
하취(주무)	입영통지취소 (주민등록 미설정)	통지취소 (주민등록미설정)
하취, 하령취소	징집(소집)명령 취소	통지취소
학간	간부후보생 지원	간부후보생
학력미달귀향(국졸미만)	입영당시 학력확인되어 귀가	귀가
학보병(學保兵)	구병역법(1957.8.15) 제7조제1항에서 대학을 휴학하고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는 재영기간을 1년으로 단축	학적보유현역병
한글미해득 인수거부	문맹자	귀가(한글미해득)
해군선소집	교육소집 이전에 해군 방위복무	방위소집
행방관리대상	행방불명	행방불명
행방수검기피	행방불명으로 징병검사기피	징병검사기피
행착 여자	실제 여자이나 행정착오 기재	성별 착오

병적기록 용어	용어내용	표기
행차, 행차불참	행정착오	행정착오
현불귀향, 현장불합격, 현불	입영부대 또는 입영전 간이신체검사결과 귀가	귀가
현역 인수거부(고령)	현역병의 입영부대 인수거부(연령초과)	귀가(연령초과 인수거부)
현역병증서 하령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
현장귀향, 현불귀향	입영부대 또는 입영전 간이신체검사결과 귀가	귀가
현장신불, 현장신검불, 현즉귀, 현귀	입영부대 또는 입영전 간이신체검사결과 귀가	귀가
호(戶)전입자	단독 전입자	전입자
확인 불능	등재 누락	병적기록없음
회수	통지 취소	통지취소

### ■ 전역 사유 구분 용어

병적기록 용어	용어내용	표기
가 제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가사 사정
국토건설단, 국건단 복무, 국건단 필	국토건설단	국토건설단
공 상	공상으로 인한 전역	의병 또는 본인 전·공상 (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귀제, 귀전, 귀휴, 귀휴전역	귀휴 전역	귀 휴
교련단축, 단축, 교해단축	교련시간 복무단축	만 기
면 관	전 역	만 기
명 제	명예 전역	명예 전역
만 제	만기 전역	만 기
방해, 방소해제	방위소집 소집해제	복무 만료(소집해제)
병 제	질병으로 인한 전역	의 병
예 편	전 역	만 기
의 제	질병으로 인한 전역	의 병
RNTC, ROTC 해제	전 역	만 기
장 해	장기복무해제	만 기
전 경	전투경찰전역	만 기
전임 해제	전임복무해제	만 기
탈사, 탈영	복무이탈	복무이탈(군 병적말소)
특례복무, 특례자원	특례보충역 복무만료	복무 만료
특수전문요원		특수전문요원
학보, 학적보유자	재학생 복무단축	만 기
학도의용군, 학도군 수료	학도의용군	학도의용군
희망, 희망전역	원에 의한 전역	원에 의한 전역



## 영문 병적증명 발급 시 병역용어 표기 기준

분야	병역사항 용어																																																																																																																							
	우리글	외국어 표기(영문)																																																																																																																						
성명 (①란)	홍길동	Hong, Gil-Dong																																																																																																																						
	김한국	Kim, Han-Kuk																																																																																																																						
	신청서에 영어성명이 기재된 경우에는 해당 영어로 표기																																																																																																																							
주민등록 번호 (②란)	790312-1234567	790312-1234567																																																																																																																						
	'79.3.12 또는 790312-1000000	1979.03.12.																																																																																																																						
주소 (③란)	서울시 용산구 이천동 386 민주(아) 201-111	Seoul, Yongsan-Gu Ichon-dong 386 Minju Apt. 201-111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삼가리 21	Chungcheongbukdo, Boeun-Gun Naesokri-Myeon Samga-Ri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마자표기일람표(문화관광부고시 제2000-8호 &lt;2000.7.7.&gt;)</li> </ul>																																																																																																																							
	<table border="1"> <tr> <td>모음</td> <td>ㅏ</td><td>ㅑ</td><td>ㅓ</td><td>ㅕ</td><td>ㅗ</td><td>ㅛ</td><td>ㅜ</td><td>ㅠ</td><td>ㅡ</td><td>ㅣ</td><td>ㅐ</td><td>ㅑ</td><td>ㅓ</td><td>ㅕ</td><td>ㅗ</td><td>ㅛ</td> </tr> <tr> <td></td> <td>a</td><td>eo</td><td>o</td><td>u</td><td>eu</td><td>i</td><td>ae</td><td>e</td><td>oe</td><td>wi</td><td>ya</td><td>yeo</td><td>yo</td><td></td><td></td><td></td> </tr> <tr> <td>ㅕ</td><td>ㅑ</td><td>ㅓ</td><td>ㅕ</td><td>ㅗ</td><td>ㅛ</td><td>ㅜ</td><td>ㅠ</td><td>ㅕ</td><td>ㅑ</td><td>ㅓ</td><td>ㅕ</td><td>ㅗ</td><td>ㅛ</td><td>ㅕ</td><td>ㅗ</td><td>ㅛ</td> </tr> <tr> <td>yu</td><td>yae</td><td>ye</td><td>wa</td><td>wae</td><td>wo</td><td>we</td><td>ui</td><td>자음</td><td>ㄱ</td><td>ㅋ</td><td>ㆁ</td><td>ㄷ</td><td>ㅌ</td><td></td><td></td><td></td> </t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g, k</td><td>kk</td><td>k</td><td>d, t</td><td>tt</td><td></td><td></td><td></td> </tr> <tr> <td>ㅌ</td><td>ㅍ</td><td>ㅑ</td><td>ㅓ</td><td>ㅕ</td><td>ㅗ</td><td>ㅛ</td><td>ㅜ</td><td>ㅠ</td><td>ㅕ</td><td>ㅑ</td><td>ㅓ</td><td>ㅕ</td><td>ㅗ</td><td>ㅛ</td><td>ㅕ</td><td>ㅗ</td> </tr> <tr> <td>t</td><td>b, p</td><td>pp</td><td>p</td><td>j</td><td>jj</td><td>ch</td><td>s</td><td>ss</td><td>h</td><td>n</td><td>m</td><td>ng</td><td>r, l</td><td></td><td></td><td></td> </tr> </table>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ㅐ	ㅑ	ㅓ	ㅕ	ㅗ	ㅛ		a	eo	o	u	eu	i	ae	e	oe	wi	ya	yeo	yo				ㅕ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ㅕ	ㅑ	ㅓ	ㅕ	ㅗ	ㅛ	ㅕ	ㅗ	ㅛ	yu	yae	ye	wa	wae	wo	we	ui	자음	ㄱ	ㅋ	ㆁ	ㄷ	ㅌ													g, k	kk	k	d, t	tt				ㅌ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ㅕ	ㅑ	ㅓ	ㅕ	ㅗ	ㅛ	ㅕ	ㅗ	t	b, p	pp	p	j	jj	ch	s	ss	h	n	m	ng	r, l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ㅐ	ㅑ	ㅓ	ㅕ	ㅗ	ㅛ																																																																																																								
	a	eo	o	u	eu	i	ae	e	oe	wi	ya	yeo	yo																																																																																																											
ㅕ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ㅕ	ㅑ	ㅓ	ㅕ	ㅗ	ㅛ	ㅕ	ㅗ	ㅛ																																																																																																								
yu	yae	ye	wa	wae	wo	we	ui	자음	ㄱ	ㅋ	ㆁ	ㄷ	ㅌ																																																																																																											
									g, k	kk	k	d, t	tt																																																																																																											
ㅌ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ㅕ	ㅑ	ㅓ	ㅕ	ㅗ	ㅛ	ㅕ	ㅗ																																																																																																								
t	b, p	pp	p	j	jj	ch	s	ss	h	n	m	ng	r, l																																																																																																											
연월일 (④, ⑧, ⑩, ⑫란)	2001. 3.28.	2001.03.28.																																																																																																																						

분야	병역사항 용어	
	우리글	외국어 표기(영문)
신체등위 (⑤란)	1, 2, 3, 4, 5, 6, 7급	Grade I, II, III, IV, V, VI, VII
	징병검사생략	Draft Physical omitted
병역처분 (⑥란)	제1국민역	First Militia Service
	징병검사대상	Subject to Draft Physical
	현역	Active Service
	현역병입영대상	Enlisted in Active Service
	상근예비역	Full-time Reserve Service
	상근예비역소집대상	Called for Full-time Reserve Service
	보충역	Recruit Service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Called for Public Interest Service
	예비역	Reserve Service
	재신체검사대상	Subject to Reexamination
	제2국민역	Second Militia Service
	병역면제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
	병적제적(6년이상수형)	Removal from Military Register
처분사유 (⑦란)	독자	An only son
	전·공상	War or official Wound
	생계유지곤란	Difficulties in Maintaining Household
	중학교 중퇴이하	Middle School Drop-out
	장기대기	Long-term Waiting
	국외이주(이민)	Emigration
	영주권취득	Acquisition of the Permanent Residence Right
	31세이상	Thirty-one years of age or older
	7급1년이상	Exceeded one-year in Physical Grade VII
	귀화	Naturalization
	제외	Excluded to the Public

분야	병역사항 용어	
	우리글	외국어 표기(영문)
입영부대 (⑨란)	육군 훈련소	Army Recruit Training Center
	○○ 보충대	○○ Replacement Center
	○○ 사단	○○ Division
징병검사 (⑩란)	징병검사연기(유학)	Postponement of Draft Physical (Overseas study)
	징병검사연기(선원)	Postponement of Draft Physical(Crew)
	징병검사연기 (국외거주)	Postponement of Draft Physical (Residence Overseas)
	징병검사연기 (국외이주)	Postponement of Draft Physical (Emigration)
	징병검사연기(재감)	Postponement of Draft Physical (In Prison)
	징병검사 기피	Evasion of Draft Physical
현역입영 (⑩란)	입영연기(재학생)	Postponement of Conscription(Student)
	입영연기(유학)	Postponement of Conscription (Overseas study)
	입영연기(국외거주)	Postponement of Conscription (Residence Overseas)
	입영연기(국외이주)	Postponement of Conscription (Emigration)
	입영연기(연수)	Postponement of Conscription (Research Institute)
	입영연기(우수선수)	Postponement of Conscription (Outstanding Athlete)
	입영기일연기	Postponement of Conscription Date
	입영후 귀가	Homecoming after Conscription
	재입영통지대상	Subject to Notice of Re-Conscription
	가사사정	Domestic Reason

분야	병역사항 용어	
	우리글	외국어 표기(영문)
현역입영 (㉔란)	국외취업	Employment Overseas
	미수복지구거주	Residence in a unreclaimed Area
	군 지원	Application for Military Service
	입영기피	Evasion of Conscription
	행방불명	Missing
	(의무/법무/군종) 장교/사관후보생	(Medical/Judicial/Religious) Officer /Cadet Officer
	기본병과장교	Basic Branch Officer
	부사관 후보생	Noncommissioned Cadet Officer
	○○ 편입	Enlistment in ○○
	○○ 제적	Removed from ○○○
보충역 소집 등 (㉔란)	소집연기(재학생)	Postponement of Call(Student)
	소집연기(유학)	Postponement of Call(Overseas study)
	소집연기(선원)	Postponement of Call(Crew)
	소집연기(국외거주)	Postponement of Call(Residence Overseas)
	소집연기(국외이주)	Postponement of Call(Emigration)
	소집연기(연수)	Postponement of Call(Research Institute)
	소집연기(우수선수)	Postponement of Call(Outstanding Athlete)
	소집기일연기	Postponement of Call Date
	지침 변경	Alteration of Guiding Principle
	소집 면제	Exemption from call
	소집 기피	Evasion of Call
	(산업요원등)편입	Enlistment in ○○
	○○ 편입취소	Cancellation of Enlistment in ○○

분야	병역사항 용어	
	우리글	외국어 표기(영문)
보충역등 복무 (⑩란) (복무만료자 는 ⑪란)	공익근무요원	Public interest service Personnel
	국제협력봉사요원	International cooperation Personnel
	예술·체육요원	Arts and Sports Personnel
	전문연구요원	Technical Research Personnel
	산업기능요원	Skilled industrial personnel
	국제협력의사	International cooperation Doctor
	공익법무관	Public-service Advocate
	공중보건 의사	Public Health Doctor
	징병전담 의사	Doctor in exclusive charge of Draft Physical
기타 (⑩란)	출국금지 (1년이상 국내체재)	ban on foreign travel(a person who has stayed in the country for one year or longer)
	출국금지해제 (기타)	removal the ban on foreign travel(the others)
군별 (⑪란)	육군	Army
	해군	Navy
	해병(요구시)	Marine
	공군	Air Force
유효기간	무기한	Indefinite
	6월	6 Months

분야	병역사항 용어		
	우리글		외국어 표기(영문)
계급 (⑫란)	대	장	(육)General, (해)Admiral, (공)General
	중	장	Lt. General, Vice Admiral, Lt. General
	소	장	Major General, Rear Admiral Upper Half, Major General
	준	장	Brigadier General, Rear Admiral Lower Half, Brigadier General
	대	령	Colonel, Captain, Colonel
	중	령	Lt. Colonel, Commander, Lt. Colonel
	소	령	Major, Lt. Commander, Major
	대	위	Captain, Lieutenant, Captain
	중	위	First Lt., Lt. Junior Grade, First Lt.
	소	위	Second Lt., Lt. Ensign, Second Lt.
	준	위	Warrant Officer(육·해·공 같음)
		원 사(주임상사)	Sergeant Major, Master Chief Petty Officer, Chief Master Sergeant
		상 사	Master Sergeant, Senior Chief Petty Officer, Senior Master Sergeant
		중 사	Sergeant First Class, Chief Petty Officer, Master Sergeant
		하 사	Staff Sergeant, Petty Officer First Class, Technical Sergeant
		병 장	Sergeant, Petty Officer Second Class, Staff Sergeant
		상 병	Corporal, Petty Officer Third Class, Senior Airman
		일 병	Private First Class, Seaman, Airman First Class
	이 병	Private, Seaman Apprentice, Airman	
역종 (⑭란)	예 비	역	Reserve Service
	보 충	역	Recruit Service
	면	역	Exemption from the Service
	퇴	역	Retirement from the Service
	병 적 제 적		Removal from Military Register

분야	군별/신분별	병역사항 용어	
		우리글	외국어 표기(영문)
병과 (15란)	육군 장교/ 준사관	보 병	infantry
		기 갑	armor
		포 병	artillery
		정 보	intelligence
		공 병	construction
		통 신	communication
		항 공	aviation
		화 학	chemistry
		병 기	ordnance
		병 참	logistics quartermaster
		군 악	martial music
		수 송	transportation
		부 관	adjutant
		헌 병	military police
		경 리	finance
		정 훈	troop information and education
		간 호	nurse
		법 무	judicial affairs
		군 종	chaplain
		군 의	surgeon
치 의	dental surgeon		
의 정	medical service		
수 의	veterinary service		

분야	군별/신분별	병역사항 용어	
		우리글	외국어 표기(영문)
병과 (주특기) (⑮란)	육군 부사관/병	일 반 보 병	general infantry
		전 차 승 무	crew on tank
		장 갑 차	armored vehicle
		로 켈 포 병	rocket artilleryman
		대 공 포 운 용	antiaircraft-gun operations
		인 간 정 보	human intelligence
		영 상 정 보	imagery intelligence
		전 투 공 병	combat engineer
		공 병 장 비 운 용	engineer equipment operations
		무 선 운 용	radio operations
		특 수 통 신 운 용	criti-comm operations
		헬 기 정 비	helicopter maintenance
		화 생 방 작 전	CBR operation
		장 비 수 리 부 속 보 급	equipment repair parts supply
		로 켈 무 기 수 리	rocket weapons repairs
		총 포 수 리	guns repairs
		K-1 전 차 수 리	K-1 tank repairs
		자 주 포 수 리	self-propelled artillery repairs
		유 선 수 리	wire repairs
		특 수 통 신 수 리	criti-comm repairs
		공 병 장 비 수 리	engineer equipment repairs
		차 량 운 용	vehicle operations
		항 만 운 용	harbor operations

분야	군별/신분별	병역사항 용어	
		우리글	외국어 표기(영문)
병과 (주특기) (15란)	육군 부사관/병	일 반 행 정	general administration
		헌 병	military police
		경 리	finance
		의 무	medical
		군 종	chaplain
		특 전 보 병	special warfare infantry
		전 차 정 비	tank maintenance
		야 전 포 병	field artillery
		포 병 표 적	artillery target
		대 공 유 도 무 기	anti-aircraft guided weapon
		신 호 정 보	sign intelligence
		기 무	armed forces security
		시 설 공 병	facility engineer
		유 선 운 용	wire operations
		다 중 장 비 운 용	multiple equipment operations
		항 공 운 항	aviation operation
		헬 기 수 리	helicopter repairs
		일 반 물 자 보 급	general material supply
		대 공 포 수 리	antiaircraft repairs
		유 도 무 기 수 리	guided weapon repairs
광 학 / 감 시 장 비 수 리	optical/guard equipment repairs		
M 계 열 전 차 수 리	M-series tank repairs		
장 갑 차 수 리	armored vehicle repairs		

분야	군별/신분별	병역사항 용어	
		우리글	외국어 표기(영문)
병과 (주특기) (15란)	육군 부사관/ 병	무선/다중장비수리	wireles /multiple equipment repairs
		일 반 차 량 수 리	general vehicle repairs
		일 반 장 비 수 리	general equipment repairs
		이 동 관 리	movement control
		탄 약	ammunition
		군 악	martial music
		수 사	investigation
		정 훈	troop information and education
		법 무	judicial affairs
병과 (15란)	해군 장교	항 해	navigation
		항 해 ( 특 수 전 )	navigation(special warfare)
		항 해 ( 잠 수 )	navigation(diving)
		기 관	engine
		보 병	infantry
		포 병	artillery
		기 갑	armor
		항 공	aviation
		정 보	intelligence
		해 상 정 보 통 신	nav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해 병 정 보 통 신	marine intelligence communication

분야	군별/신분별	병역사항 용어	
		우리글	외국어 표기(영문)
병과 (15란)	해군 장교	해 상 병 기	naval weapon
		해 병 병 기	marine weapon
		해 상 보 급	naval supply
		해 병 보 급	marine supply
		시 설	facilities
		공 병	construction
		수 송	transportation
		조 합	ship handling
		경 리	finance
		정 훈	troop information and education
		해 상 헌 병	naval military police
		해 병 헌 병	marine military police
		군 의	surgeon
		치 의	dental surgeon
		의 정	medical service
		간 호	nurse
		법 무	judicial affairs
		목 사	clergy
		신 부	priest
		법 사	buddhist priest

분야	군별/신분별	병역사항 용어		
		우리글	외국어 표기(영문)	
병과 (주특기) (⑮란)	해군 준사관/ 부사관/병	갑	판	deck
		보	병	infantry
		포	병	artillery
		공	병	construction
		기	갑	armor
		병	기	ordnance
		항	공	aviation
		전	자	electronics
		통	신	communication
		해 병 통 신		communication of marine
		보	급	supply
		경	리	finance
		수	송	transportation
		통기(통신기술)		communication technology
		행	정	administration
		정	훈	troop information and education
		군	악	martial music
		기정(기밀정보)		secret intelligence
		통정(통신정보)		communication intelligence
		기	관	engine
		시	설	facilities
의	무	medical		
해 양 정 보		sea information		
헌	병	military police		

분야	군별/신분별	병역사항 용어	
		우리글	외국어 표기(영문)
병과 (주특기) (15란)	해군 준사관/ 부사관/병	특 전 ( 특 수 전 )	special warfare
		특정(특수정보)	special intelligence
		잠 수	diving
		해 병 헌 병	marine military police
		조 타	steering
		사통(사격통제)	control of fire
		전탐(전파탐지)	radio detection
		음탐(음파탐지)	sonic wave detection
		전 산	computer
		법 무	judicial affairs
		조 리	cooking
		운 전	driving
		전 기	electricity
		보 수	repair
		해양정보(기상)	sea information(weather)
		내 연	internal combustion

분야	군별/신분별	병역사항 용어	
		우리글	외국어 표기(영문)
병과 (⑮란)	공군 장교	조 종	piloting
		항 공 통 제	aviation control
		방 공 통 제	air defense control
		항 공 안 전	aviation security
		기 상	weather
		정 보 통 신	intelligence communication
		항공무기정비	air weapon maintenance
		보 급 수 송	supply transportation
		시 설	facilities
		관 리	management
		인 사 행 정	personnel administration
		정 훈	troop information and education
		교 육	instruction
		정 보	intelligence
		현 병	military police
		법 무	judicial affairs
		군 의	surgeon
		치 의	dental surgeon
		군 종	chaplain
		의 정	medical service
간 호	nurse		

분야	군별/신분별	병역사항 용어	
		우리글	외국어 표기(영문)
병과 (주특기) (15란)	공군 준사관/ 부사관/병	항공통제	aviation control
		항공관제	air traffic control
		단거리대공무기 운용	short range anti-aircraft weapon operations
		중거리대공무기 운용	intermediate range anti-aircraft weapon operations
		장거리대공무기 운용	long range anti-aircraft weapon operations
		항공구조	air rescue
		항공안전	aviation security
		항공기상분석	aviation weather analysis
		항공기상장비 정비	aviation weather equipment maintenance
		통신장비운용	communication equipment operations
		암호취급	cryptogram treat
		지상통제레이다 정비	ground controlled radar maintenance
		장거리통신정비	long-range communication maintenance
		전술항법정비	tactical navigation maintenance
		항로통신정비	airways communication maintenance
		전자교환기정비	electronic switchboard maintenance
		통신건설	communication construction
		전산장비정비	computerization equipment maintenance
		전자계산운용	computer operations
		항공통신전자 장비정비	aerial communication electronic equipment maintenance
항공전산장비 정비	aerial computer equipment maintenance		

분야	군별/신분별	병역사항 용어	
		우리글	외국어 표기(영문)
병과 (주특기) (15란)	공군 준사관/ 부사관/병	항공전자제어장비 정 비	aerial electronic equipment maintenance
		정밀측정장비 정 비	precision measurement equipment maintenance
		전자광학장비 정 비	electro-optical equipment maintenance
		항공기부속정비	aircraft component maintenance
		항공기지상장비 정 비	aircraft ground equipment maintenance
		항공기기체정비	airframe maintenance
		항공기기관정비	aircraft engine maintenance
		항공장구정비	air accouterments maintenance
		항공기무기정비	aircraft weapon maintenance
		항공탄약정비	air munitions maintenance
		항공기제작정비	aircraft manufacturing maintenance
		단거리대공무기 정 비	short range anti-aircraft weapon maintenance
		중거리유도무기 발사정비	intermediate range guided weapon firing maintenance
		중거리유도무기 사통정비	intermediate range guided weapon fire control maintenance
		장거리유도무기 발사정비	long-range guided weapon firing maintenance
		장거리유도무기 사통정비	long-range guided weapon fire control maintenance
		항공기재보급	air materials supply
		항공수송	air transport
항공시설운영	air installation operations		
항공소방	aviation fire control		

분야	군별/신분별	병역사항 용어	
		우리글	외국어 표기(영문)
병과 (주특기) (15란)	공군 준사관/ 부사관/병	화 학	chemistry
		군 악	martial music
		항공정보운영	air intelligence operation
		특 수 정 보	special intelligence
		헌 병	military police
		법 무 서 기	judge advocate clerk
		치 과	dental
		항 공 의 무	aeromedicine
		항 공 운 항	aviation operation
		비 파 괴 검 사	nondestructive inspection
		방 사 선	radioactive rays
		임 상 실 험	clinical testing
		의 장	honor guard
		약제 및 의료 장 비 정 비	pharmacy and medical equipment maintenance
		토 목	engineering works
		건 축	construction
		비행시설조명	flight facilities illumination
		발전 및 변전	generating and transforming
		총 무	general affairs
		회 계	accounting

분야	병역사항 용어	
	우리글	외국어 표기(영문)
전역구분 (사유) (18란)	전역	Discharge from Military Service
	원에 의한 전역	Discharge from Military Service by Application
	원에 의하지 아니한 전역	Forced Discharge from Military Service
	귀휴 전역	Home on Leave from Military Service
	여군 전역	Discharge from Military Service as Woman
	복무만료	Completion of Service
	복무만료(소집해제)	Completion of Service(Release from Call)
	만기	Completion of Military Service
	연령정년	Age Limit
	의병	Disease
	가사사정(의가사)	Domestic Reason
	생계곤란	Difficulties in Maintaining Household
	독자	An only son
	전·공상	War or official Wound
	국외이주	Emigration
	신분상실	Disqualification
	제외	Exclusion to the Public
	군복무이탈(삭제)	Secession from Military Service
	군제적	Removal from the Army Register
	자수신고	Self-Surrender
	국토건설단	National Land Construction Corps
	학도의용군	Volunteer Soldier as a Student
	병역법	Military Service Act
	병역법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Military Service Act
	병역법시행규칙	Detailed Enforcement Regulation of Military Service Act
	• 군 경력증명서	①9 민원인이 요구한 경력사항 기재 (운전, 교육, 해외연수, 6.25참전, 월남전 참전, 상훈기록, 주특기, 병과, 진급 등)

• 병무행정 용어 해설집 •

# 색인(가나다순)







# 색인 (가나다순)

ㄱ		
용 어 명	분 야	페이지
가용자원	병력동원(훈련)소집	135
간기능검사	징병검사	9
간염	징병검사	9
감사관리시스템	병무행정정보화	217
갑종사태	병력동원(훈련)소집	135
강등	공통지원	231
강임	공통지원	231
개별동원	병력동원(훈련)소집	135
개별모집특기병(개별모집병)	현역병모집	61
개별종사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117
개별지정	병력동원(훈련)소집	136
개인정보(파일)	병무행정정보화	217
개인정보관리책임관	병무행정정보화	217
개인정보보호협약체	병무행정정보화	218
거주여권	병무민원	185
겸직허가	공익근무요원	71
경고및시정	공통지원	231
경고처분	공익근무요원	71
계약사전심사시스템	공통지원	231
계약직공무원	공통지원	231
계엄령	병력동원(훈련)소집	136
계열	현역병모집	62
계획동원훈련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136
고객의소리(VOC)통합관리시스템	병무민원	185
고아	징병검사	10
고위공무원단체도	공통지원	232
공공단체	공익근무요원	73
공모직위운영	공통지원	232
공무원제안	공통지원	232
공무원행동강령	공통지원	232
공석일람표	병력동원(훈련)소집	137
공익근무요원	공익근무요원	73
공익근무요원교육센터	공익근무요원	74
공익근무요원복무지도관	공익근무요원	75
공익대표자	공익근무요원	76
공익법무관	공익근무요원	76
공익수이사	공익근무요원	77

용 어 명	분 야	페이지
공중보건의사	공익근무요원	77
공직자재산신고	공통지원	233
관용심사제도	공통지원	234
관용여권	병무민원	185
교섭단체	공통지원	234
교육소집	공익근무요원	78
교육소집제외보충역	공익근무요원	79
교육운영기관의장	공익근무요원	80
교육위탁기관의장	공익근무요원	80
교육훈련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117
교정시설경비교도	현역병입영	39
국가동원(동원령)	병력동원(훈련)소집	137
국민신문고	공통지원	235
국방	징병검사	10
국외여행	병무민원	185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병무민원	186
국외여행허가서	병무민원	186
국외여행허가추천서	병무민원	186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81
국제협력의사	공익근무요원	82
군경력증명	병역사항공개	201
군사분계선	징병검사	11
군사동원차량	병력동원(훈련)소집	137
군사특기	병력동원(훈련)소집	138
군사특기	현역병모집	62
군운전경력및무사고확인서	병역사항공개	201
군장학생	현역병입영	39
군전공의요원	현역병입영	40
군종사관후보생	현역병입영	41
군필요인원	징병검사	11
군귀가	현역병입영	41
귀화	징병검사	12
근무지	공익근무요원	82
금융자산조회	병무민원	187
기간산업체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118
기동대	병력동원(훈련)소집	138
기본병과장교	현역병입영	42
기술행정병	현역병모집	63
긴급단계동원	병력동원(훈련)소집	139

용 어 명	분 야	페이지
긴급단계동원지정보류	병력동원(훈련)소집	139
긴급동원	병력동원(훈련)소집	140

## L

용 어 명	분 야	페이지
나라별(온라인대금청구시스템)	공통지원	235
나라사카카드	징병검사	12
나라사카카드시스템	병무행정정보화	218
내부공익신고	공통지원	235

## C

용 어 명	분 야	페이지
단백뇨	징병검사	13
단수여권	병무민원	187
대량살상무기	병력동원(훈련)소집	140
대체지정	병력동원(훈련)소집	140
동반입대병	현역병모집	63
동시동원	병력동원(훈련)소집	141
동원미지정자	병력동원(훈련)소집	141
동원미참가자(동미참)훈련	병력동원(훈련)소집	142
동원보직	병력동원(훈련)소집	142
동원사단	병력동원(훈련)소집	142
동원소요표	병력동원(훈련)소집	143
동원업무대행부대	병력동원(훈련)소집	143
동원자원호송단	병력동원(훈련)소집	143
동원지정	병력동원(훈련)소집	144
동원지정업체	병력동원(훈련)소집	144
동원지정자	병력동원(훈련)소집	145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공통지원	236

## R

용 어 명	분 야	페이지
레지던트	현역병입영	42
로그	병무행정정보화	219

## Q

용 어 명	분 야	페이지
마약류중독검사	징병검사	14
만기전역	병력동원(훈련)소집	145
모범병사문화탐방	공통지원	237

용 어 명	분 야	페이지
모집정보시스템	병무행정정보화	219
모체부대	병력동원(훈련)소집	145
민원해결상담관제	공통지원	238

## B

용 어 명	분 야	페이지
방사선사	징병검사	14
방사선촬영	징병검사	15
방어준비태세	병력동원(훈련)소집	146
방위산업체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119
방침보류	병력동원(훈련)소집	146
배정	공익근무요원	83
배정인원조정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119
배정제한	공익근무요원	83
배정지역	병력동원(훈련)소집	146
배정취소	공익근무요원	84
법규보류	병력동원(훈련)소집	147
법률	공통지원	238
법무사관후보생	현역병입영	43
별도소집대상자	공익근무요원	84
별정직공무원	공통지원	238
병과관계표	병력동원(훈련)소집	147
병과일람표	병력동원(훈련)소집	147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148
병력동원소집자명부	병력동원(훈련)소집	148
병력동원소집전환	병력동원(훈련)소집	149
병력동원소집통지서	병력동원(훈련)소집	149
병력동원소집후순위조정자	병력동원(훈련)소집	150
병력동원지원부대	병력동원(훈련)소집	150
병력동원집행관	병력동원(훈련)소집	151
병력동원훈련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151
병무민원BS/AS	병무민원	187
병무민원상담소	병무민원	188
병무민원상담시스템	병무행정정보화	219
병무사범	현역병입영	43
병무지	공통지원	238
병무행정실명회	공통지원	239
병무행정의사결정시스템	병무행정정보화	220
병무홍보대사	공통지원	239
병무홍보요원	공통지원	240
병사용진단서	징병검사	15
병역	징병검사	16
병역면탈예방시스템	병무행정정보화	220

용 어 명	분 야	페이지
병역명문가	공통지원	241
병역변동사항	병역사항공개	202
병역사항	병역사항공개	203
병역사항공개	병역사항공개	203
병역사항공개보류자	병역사항공개	204
병역사항비공개	병역사항공개	205
병역사항수속전자파일	병무행정정보화	220
병역사항신고	병역사항공개	205
병역사항신고기관	병역사항공개	206
병역사항신고대상자	병역사항공개	207
병역사항신고시기	병역사항공개	208
병역사항신고의무자	병역사항공개	209
병역사항표준용어	병역사항공개	209
병역설계	병무민원	188
병역의무부과통지서송달	징병검사	17
병역자원수급판단	징병검사	17
병역정보	병무행정정보화	220
병역증	병역사항공개	210
병역처분	징병검사	17
병역처분변경	징병검사	21
병적	징병검사	21
병적기록관리시스템	병무행정정보화	221
병적기록표	병역사항공개	210
병적데이터베이스	병무행정정보화	221
병적증명서	병역사항공개	211
보상심의위원회	공익근무요원	85
보수교육	공익근무요원	86
보안USB관리시스템	병무행정정보화	221
보충역	공익근무요원	87
보충역복무기록표	공익근무요원	88
복무관리	공익근무요원	89
복무관리포털	공익근무요원	90
복무기관	공익근무요원	91
복무기관재지정	공익근무요원	91
복무기관평가	공익근무요원	92
복무부실사전예보	공익근무요원	93
복무분야	공익근무요원	94
복무이탈	공익근무요원	94
복무종단	공익근무요원	95
복무형태	공익근무요원	96
복수여권	병무민원	189
본인선택제도	현역병입영	44
부대고정	병력동원(훈련)소집	152
부대단위지정	병력동원(훈련)소집	152

용 어 명	분 야	페이지
부사관	병력동원(훈련)소집	152
부양비	병무민원	189
부양의무자	병무민원	189
분할복무	공익근무요원	96
불시동원훈련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153
불응자원	병력동원(훈련)소집	153
비상사태	병력동원(훈련)소집	154
비연고지청	공통지원	242

## 人

용 어 명	분 야	페이지
사용동원	병력동원(훈련)소집	154
사이버재해대응시스템	병무행정정보화	221
사전교부	병력동원(훈련)소집	154
삭제지명부	병력동원(훈련)소집	155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120
상근예비역	현역병입영	45
상비사단	병력동원(훈련)소집	155
상시근로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120
상시학습제도	공통지원	242
상임위원회	공통지원	243
생계곤란심의위원회	병무민원	190
생계유지곤란사유병역감면	병무민원	190
선박예비군	병력동원(훈련)소집	155
선소집	공익근무요원	97
성과관리	공통지원	243
소양교육	공익근무요원	97
소집	공익근무요원	98
소집결과서	공익근무요원	99
소집단위	공익근무요원	100
소집부대	병력동원(훈련)소집	156
소집부대사항입력	병력동원(훈련)소집	156
소집순서	공익근무요원	100
소집일시	병력동원(훈련)소집	157
소집점검	병력동원(훈련)소집	157
소집점검훈련	병력동원(훈련)소집	158
소집해제	공익근무요원	101
소프트웨어관리시스템	병무행정정보화	222
손실보충부대	병력동원(훈련)소집	158
수송동원	병력동원(훈련)소집	158
수의사관후보생	현역병입영	46
수입군부대	병력동원(훈련)소집	159
순환근무	공익근무요원	102

용 어 명	분 야	페이지
슬로건	공통지원	243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121
승인전직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122
시간제근무	공통지원	244
시·군·구 통제특기	병력동원(훈련)소집	159
시·도 통제특기	병력동원(훈련)소집	159
시민감사청구제도	공통지원	244
시행규칙	공통지원	244
시행령	공통지원	244
신상변동자	병력동원(훈련)소집	160
신상이동통보	공익근무요원	102
신체검사	징병검사	21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	징병검사	22
실태조사	공익근무요원	103
심리검사	징병검사	22
쌍용훈련	병력동원(훈련)소집	160

용 어 명	분 야	페이지
암호자재	병무행정정보화	222
암호장비	병무행정정보화	222
암호프로그램	병무행정정보화	222
어민예비군	병력동원(훈련)소집	161
어업정보통신국	공익근무요원	104
업무포탈시스템	병무행정정보화	223
여단	병력동원(훈련)소집	161
연고지	공익근무요원	104
연구기관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123
연구전담요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124
연대책임	공통지원	245
연장중사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124
연차이내지원	병력동원(훈련)소집	161
연차초과자	병력동원(훈련)소집	162
영리활동	병무민원	191
영사	병무민원	192
영상의학과	징병검사	23
영상전환장치	징병검사	23
영주권자등입영희망원출원제도	병무민원	192
예규	공통지원	245
예비군	병력동원(훈련)소집	162
예비소요(지정)	병력동원(훈련)소집	163
예비역	병력동원(훈련)소집	163

용 어 명	분 야	페이지
예산	공통지원	245
예산과목	공통지원	245
예산배정, 재배정	공통지원	246
예술·체육요원	공익근무요원	105
온-나라시스템	공통지원	246
온비드시스템(인터넷전자자산처분시스템)	공통지원	247
우발계획	병력동원(훈련)소집	163
위장전입자	공익근무요원	106
위탁검사	징병검사	24
유급	공익근무요원	107
유급지원병(전문병)	현역병모집	64
유사특기	병력동원(훈련)소집	164
유연근무제	공통지원	247
을지연습	병력동원(훈련)소집	164
읍·면·동대	병력동원(훈련)소집	164
응소	병력동원(훈련)소집	165
의명	병력동원(훈련)소집	165
의무사관후보생	현역병입영	47
의무소방원	현역병입영	47
의무자여비	징병검사	24
의무전직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125
인도·인접	현역병입영	48
인도인접지	병력동원(훈련)소집	165
인접시·군·구통제특기	병력동원(훈련)소집	166
인턴	현역병입영	48
일반병·기술병	현역병모집	65
일반직공무원	공통지원	248
일반하사	병력동원(훈련)소집	166
일본거주	병무민원	193
일상감사	공통지원	248
일일복무상황부	공익근무요원	107
임무고지	병력동원(훈련)소집	166
임상병리사	징병검사	25
임상심리사	징병검사	26
임용	공통지원	248
입법예고	공통지원	249
입영	현역병입영	49
입영기일연기	현역병입영	49
입영사무소	현역병입영	50
입영신체검사	현역병입영	50

ㄷ		
용 어 명	분 야	페이지
자료관리책임자	병무행정정보화	223
자체평가	공통지원	249
자활가능자	병무민원	194
작전동원	병력동원(훈련)소집	167
장교	병력동원(훈련)소집	167
장애인	징병검사	26
재외공관	병무민원	195
재외국민2세	병무민원	195
재학생입영연기	현역병입영	51
재학생입영연기보류신청제도	현역병입영	51
재학생입영원서	현역병입영	52
적극행정면책제도	공통지원	250
적성	징병검사	27
적소특기	병력동원(훈련)소집	168
전국통제특기	병력동원(훈련)소집	168
전문연구요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126
전문의	현역병입영	53
전문화관리병	현역병모집	66
전시근로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169
전역증	병역사항공개	212
전자우편센터시스템	병무행정정보화	224
전투경찰순경	현역병입영	53
전투근무지원부대	병력동원(훈련)소집	169
전투부대	병력동원(훈련)소집	169
전투지원부대	병력동원(훈련)소집	170
전환복무	현역병입영	54
정무직공무원	공통지원	250
정밀보충대대	병력동원(훈련)소집	170
정보보호시스템	병무행정정보화	224
정보처리	병무행정정보화	224
정보처리직무분야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127
정보통신망	병무행정정보화	224
정보통신보안	병무행정정보화	225
정보화	병무행정정보화	225
정보화책임관	병무행정정보화	226
정부업무평가	공통지원	250
정책연구운영	공통지원	250
제1국민역	징병검사	27
제2국민역	징병검사	28
주의	공통지원	251
준사관	병력동원(훈련)소집	170
중간집결지	병력동원(훈련)소집	171

용 어 명	분 야	페이지
중점관리대상질환	징병검사	28
증편부대	병력동원(훈련)소집	171
지속단계동원	병력동원(훈련)소집	171
지역대	병력동원(훈련)소집	172
지역배정	병력동원(훈련)소집	172
지역확산	병력동원(훈련)소집	173
지연응소	공익근무요원	108
지연입영	현역병입영	55
지정교육기관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127
지정업체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128
지정업체선정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129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129
지정업체승계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130
지휘서신	병력동원(훈련)소집	173
지휘통신망단말기	병무행정정보화	226
직계가족복무부대지원병(직계가족병)		
	현역병모집	66
직무교육	공익근무요원	109
직무분석	공통지원	251
직무성과계약제	공통지원	252
직장예비군부대	병력동원(훈련)소집	173
직종	현역병모집	67
질병또는심신장애치유(학력변동)입영희망		
	현역병입영	56
집결일시	병력동원(훈련)소집	174
집결지	병력동원(훈련)소집	174
집단지정	병력동원(훈련)소집	174
징계	공통지원	252
징병검사	징병검사	29
징병검사를받은해입영희망	현역병입영	56
징병검사본인선택	징병검사	29
징병검사전담의사	공익근무요원	110
징병검사전문의사	징병검사	30
징병검사종결처리	징병검사	30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징병검사	31
징집	현역병입영	56
징집순서	현역병입영	57

ㄷ		
용 어 명	분 야	페이지
창설부대	병력동원(훈련)소집	175
청렴계약제	공통지원	253
초음파검사	징병검사	31

용 어 명	분 야	페이지
총사업비관리제도	공통지원	253
총액인건비제도	공통지원	253
추적관리	병력동원(훈련)소집	175
추징	공통지원	254
출입국관리사무소	병무민원	196
총무계획	병력동원(훈련)소집	176
총무훈련	병력동원(훈련)소집	176

E		
용 어 명	분 야	페이지
타격대	병력동원(훈련)소집	176
타격소대	병력동원(훈련)소집	176
탄력근무제	공통지원	254
통합지휘무선통신망	병무행정정보화	226
퇴교	공익근무요원	111
퇴역	병력동원(훈련)소집	177
퇴영	공익근무요원	111
특정직공무원	공통지원	255

F		
용 어 명	분 야	페이지
파견근무	공익근무요원	112
판독	징병검사	32
편집취소유보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130
피부양자	병무민원	197

H		
용 어 명	분 야	페이지
학군무관후보생	현역병입영	57
한국국제협력단	공익근무요원	113
해당복무부대특기	병력동원(훈련)소집	177
해당분야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131
해운업체등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132
핵확산금지조약	병력동원(훈련)소집	177
행동강령책임관	공통지원	255
행정규칙	공통지원	255
행정소송	공통지원	255
행정심판	공통지원	256
행정전자서명인증서	병무행정정보화	227
행정절차	공통지원	256
향방기본훈련	병력동원(훈련)소집	178

용 어 명	분 야	페이지
향방동원	병력동원(훈련)소집	178
향방작계훈련	병력동원(훈련)소집	178
향토사단	병력동원(훈련)소집	179
향토예비군설치법	병력동원(훈련)소집	179
현무대대	병력동원(훈련)소집	179
현역가용자원	징병검사	32
현역병	현역병입영	58
현역병복무중보충역편입자	공익근무요원	113
현지시정(지방청장조치위임)	공통지원	256
혈구검사	징병검사	32
혈뇨	징병검사	33
호송	병력동원(훈련)소집	180
화랑훈련	병력동원(훈련)소집	180
확인서	공통지원	256
훈령	공통지원	257
홍부방사선촬영	징병검사	33

영문		
용 어 명	분 야	페이지
B형간염	징병검사	34
BSC(균형성과기록표)	공통지원	257
C형간염	징병검사	35
e-사람(전자인사관리시스템)	공통지원	257
IT자산관리시스템	병무행정정보화	228
KATUSA(카투사)	병력동원(훈련)소집	180
M일	병력동원(훈련)소집	180
RNTC(교대출신예비역하사관병역특례)	현역병입영	58
SR시스템	병무행정정보화	228
TMO(Transporation Movement Office)	병력동원(훈련)소집	181

### 도움주신 분

차기 사회복지 운영지원과	장 조정관 박경강	정 정박강	중 환경상	훈 식규현	병역자원국 대변인	문 홍승	병 승미	민 미	입원동원국 감사담당관	김 임	노 중	윤 혁
---------------------	-----------------	----------	----------	----------	--------------	---------	---------	--------	----------------	--------	--------	--------

### 감수하여 주신 분

이화여자대학교 연구실	국어문화원	문학박사 연구위원	박창원 이금진	원교수
----------------	-------	--------------	------------	-----

### 만든 사람들

#### 【 총괄 · 지원반 】

반장	행정관리담당관	부이사관 행정주사보	임재하 이계정	하 용연	행정주사보	김은열	순열
----	---------	---------------	------------	---------	-------	-----	----

#### 【 병원자원국 소관 】

(전) 병무청 병역자원과 징병검사과 정보기획과 총부청	서기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기술서기관 행정주사	노원철 김종길 김익진	철관수 이규호	광주전남청 부산경기청 인천부울청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행정주사 행정주사	신인강 신기소 탁경아	인용기 관석아	균하찬 이석아
---	--	-------------------	------------	-------------------------	--------------------------------	-------------------	------------	------------

#### 【 입원동원국 소관 】

(전) 병무청 현역입영과 인천경기청 인천경기청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행정주사	손석영 권승철 신승용	중규철 이용자	동원관리과 총인천경기청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행정주사	김용한	옹학상	두경일
------------------------------------	---------------------------------	-------------------	------------	-----------------	------------------------	-----	-----	-----

#### 【 사회복지국 소관 】

(전) 병무청 사회복지정책과 대전충남청 전북청 인천경기청	서기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행정주사	나미수 이황김진	수기환 태천	고객지원과 산업지원과 인천경기청	서기관 행정사무관 행정주사 행정주사	최은강	은재용	순진순 용
---	--	-------------	-----------	-------------------------	------------------------------	-----	-----	----------

#### 【 공통 · 지원 소관 】

기획재정과 규제법무과 대전충남청 경남청 대변인실 강원청 전부청	서기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행정주사 행정주사 행정주사	차명주 송태원 정제홍 정희재 정안원	의원섭 열숙영	운영지원과 감사관 전원동 강원상 민원총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행정주사 행정주사 행정주사	정이임 박김이	정우영 도선상	훈중선 원삼용
--	--	---------------------------------	------------	-----------------------------------	--	------------	------------	------------

